2022년

부산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 제작진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복지나눔팀

박 영 규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

이 진 우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실장

김 현호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팀장

손 승 연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대리

신 미 경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주임

박 준 혁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주임

김 태 인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주임

책자 활용 전 유의사항

본 책자는 발간 시점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변경사항은 부산지역사회서비스 홈페이지 (www.ssbn.or.kr)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 및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주요 알림사항들을 부산지역사회서비스 홈페이지로 알려 드리고 있으니 수시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은 『2022년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사업별 기준정보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된 『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의 내용을 참조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기준정보(내용·주기·가격·장소 등) 및 서비스 운영·제공절차·관리서류는 부산시 지침을 준수하시고, 이 외에 모든 운영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714-2008∼12/14	
전자바우처 시스템 관련 문의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상담센터 (예탁금, 본인부담금, 이용자 카드 배송 및 수령여부, 단말기, 전자바우처시스템, 바우처결제관련 등) ☎1566-3232(단축4번)	
행복e음 관련 문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콜센터 (대상자 신청·선정·판정, 이용자 카드 신청·재발급, 제공기관 정보입력 등) ☎1566-3232(단축2번)	
	☎ 1599−3813	
결제단말기(LG)	☎ 1899-0656	
보건복지콜센터	☎ 129	

Contents

제1장 부산지역사회사비스투자사업 운영

	1.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사업추진체계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개요	03 03 03 04 05
제2장 부산지	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 안내	
	Ⅰ . 시도 개발 사업	09
	-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주요 변경사항	10
	상담 1. (011003)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2. (290503)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3. (170203)가족마음이음서비스 (구)자녀의 성공을 돕는 부모코칭	13 17 20
	4. (250203)뇌에 기가 팍팍	24
	재활 5. (050903)노인건강관리서비스 (구)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6. (080603)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7. (070101)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8. (160203)아동건강관리서비스('22년 폐지사업)	26 30 32 34
	역량강화 9. (120103)동화야 놀~자(스토리 텔링) 10. (130103)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	36 38

II. 구군 개발 사업	41
- 구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주요 변경사항	42
상담 4. (430000) H.B. 국내 나를 되어 조됩니다. (113. 나를 보고 성향을 사용되어	
1. (170303)부모-자녀 상호작용증진서비스(서구, 남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	43
2. (090203)1인가구 중장년층의 신체정신건강통합서비스(부산진구, 연제구)('22년 폐지사업)	45
3. (991603)청년심리지원서비스(동래구) ('22년 폐지사업)	47
돌봄	
4. (991503)식사영양지원서비스(부산진구)	49
5. (991403)일상생활지원서비스(부산진구, 북구)	51
재활	
6. (280303)행복한 중년 건강관리서비스(영도구)	53
역량강화	
7. (130803)이바구놀이터(동구)	55
8. (130703)아동놀이활동 지원서비스(남구)	57
Ⅲ. 서비스별 가구 특성 확인 자료	59
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60
2. 적용 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67
3. 사회서비스 이용 추천서(서식)	68
4. 사회서비스별 가구 특성 예시본	69
1)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발달관련 (K-DST, K-CDR II , DEP, K-ASQ)	69
2)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와 아동정서 발달지원서비스 (K-CYP, CBCL, KPRC,	
기타(SELSI, PRES, REVT, U-TAP, 텐버발달검사, Sensory profile))	73
3) 노인건강관리서비스 체성분 분석결과 절단점	77
4) 노인건강관리서비스 노인기초체력검사 절단점	81
Ⅳ. 사업별 효과성 검증도구 예시본	83
1. 사업별 효과성 검증도구	84
1. 사업을 요과경 심용도구 2. 해양역사 문화체험 아카데미-자아존중감 척도	86
2. 해당력시 문화체험 아카데미-자이론당점 적모 3. 해양역사 문화체험 아카데미-자기효능감척도	88
4. 해양역사 문화체험 아카데미-진로성숙도 척도	90
5. 아동건강관리서비스-아동건강증진행위 척도	92

7. 가족마음이음서비스 (구)자녀의 성공을 돕는 부모코칭-결혼만족도 척도 8. 가족마음이음서비스 (구)자녀의 성공을 돕는 부모코칭-부모효능감검사 9. 노인건강관리서비스, 뇌에기가 팍팍 - Beck 우울 척도(BDI) 10. 노인건강관리서비스, 뇌에기가 팍팍 - 자살생각척도(SSI)	95 98 100 104
제3장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및 선정기준	
l .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기준	111
II.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선정기준	113
데4장 데공기관 등록·변경·휴업·폐업	
l . 제공기관 등록	121
1. 등록제개요	122
2. 제공자 등록기준	122
3. 제공기관 등록 절차	126
4. 제공기관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27
5. 제공기관 등록 접수 및 심사	128
6. 등록제한 및 조건 부가(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 제3항)	130
II. 제공기관 등록사항 변경	132
1.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및 제출 서류	132
2. 제공기관 변경 및 처리 절차	133
3. 사회서비스 등록사항 변경기준	133
Ⅲ. 제공기관 휴업·폐업	136
1. 제공자 폐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36
2. 휴업·폐업시 처리 절차	137
	107

6. 뇌에 기(氣)가 팍팍-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K)

94

제5장 제공기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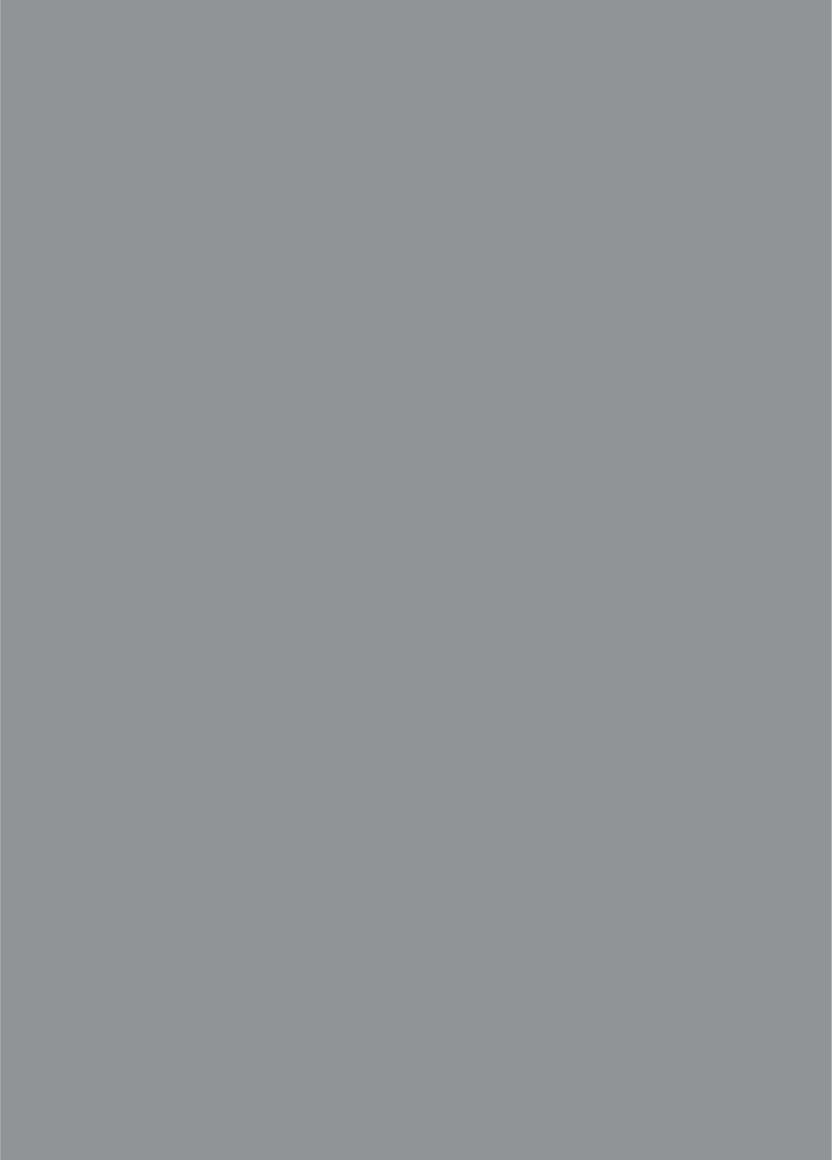
l . 제공기관 운영 관리	141
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절차	141
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절차 2. 바우처 시스템 운영절차 3. 서비스 제공 절차 4. 제공기관 운영시 작성 및 관리 제출 서류 안내 5. 제공자 보수교육 6. 제공인력 근태관리 플랫폼 7. 현장점검 주요내용	142
	146
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절차 2. 바우처 시스템 운영절차 3. 서비스 제공 절차 4. 제공기관 운영시 작성 및 관리 제출 서류 안내 5. 제공자 보수교육 6. 제공인력 근태관리 플랫폼 7. 현장점검 주요내용 부록 관련 서식 I. 목록별 관련 서식 I. 발지 서식] 옥구판정표 2. [제1호 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3. [제2호 서식] 사회보장급여(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 4. [제3호 서식] 이의신청서 5. [제4호 서식] 국민행복카드 소개 및 발급 안내(서비스 이용자용) 6. [제5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신청서 7. [제5-1 서식]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8. [제5-2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9. [제6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10. [제7호 서식] 사회서비스 인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11. [제8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 안내문(예시1) 12. [제9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 안내문(예시1) 13. [제10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 안내문 14. [제11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 안내문	148
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절차 2. 바우처 시스템 운영절차 3. 서비스 제공 절차 4. 제공기관 운영시 작성 및 관리 제출 서류 안내 5. 제공자 보수교육 6. 제공인력 근대관리 플랫폼 7. 현장점검 주요내용 부록 관련서식 1. [별지 서식] 옥구판정표 2. [제1호 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3. [제2호 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4. [제3호 서식] 사회보장급여(결정, 변경, 정지.중지.상실)통지서 4. [제3호 서식] 라의신청서 5. [제4호 서식] 국민행복카드 소개 및 발급 안내(서비스 이용자용) 6. [제5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신청서 7. [제5-1 서식]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8. [제5-2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9. [제6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10. [제7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11. [제8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 안내문(예시1) 12. [제9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 안내문(예시1) 13. [제10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증로(예정) 안내문(예시1) 13. [제10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 안내문	150
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절차 2. 바우처 시스템 운영절차 3. 서비스 제공 절차 4. 제공기관 운영시 작성 및 관리 제출 서류 안내 5. 제공자 보수교육 6. 제공인력 근태관리 플랫폼 7. 현장점검 주요내용 부록 관련났식 I. 목록별 관련서식 II. 관련서식 1. [별지 서식] 옥구판정표 2. [제1호 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3. [제2호 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4. [제3호 서식] 이의신청서 5. [제4호 서식] 국민행복카드 소개 및 발급 안내(서비스 이용자용) 6. [제5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신청서 7. [제5-1 서식]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8. [제5-2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9. [제6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10. [제7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11. [제8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 안내문(예시1) 12. [제9호 서식] 자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 안내문(예시2) 13. [제10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 안내문	152
7. 현장점검 주요내용	153
부록	
관련 너식	
1. 목록별 관련서식	159
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절차 2. 바우처 시스템 운영절차 3. 서비스 제공 절차 4. 제공기관 운영시 작성 및 관리 제출 서류 안내 5. 제공자 보수교육 6. 제공인력 근태관리 플랫폼 7. 현장점검 주요내용 부록 관련 서식 1. [별지 서식] 욕구판정표 2. [제1호 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3. [제2호 서식] 사회보장급여(계절정,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 4. [제3호 서식] 이의신청서 5. [제4호 서식] 국민행복카드 소개 및 발급 안내(서비스 이용자용) 6. [제5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신청서 7. [제5-1 서식] 국민행복가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 8. [제5-2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사 9. [제6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 10. [제7호 서식] 사회서비스 인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11. [제8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 안내문(예시1) 12. [제9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 안내문(예시2) 13. [제10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 안내문 14. [제11호 서식] 사회서비스 연장(종료)통보서 15. [제12호 서식] 사회서비스 연장(종료)통보서 15. [제12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지역사회서비스 7	159
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절차 2. 바우처 시스템 운영절차 3. 서비스 제공 절차 4. 제공기관 운영시 작성 및 관리 제출 서류 안내 5. 제공자 보수교육 6. 제공인력 근태관리 플랫폼 7. 현장점검 주요내용 부록 관련되시식 I. [별지 서식] 욕구판정표 2. [제1호 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3. [제2호 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4. [제3호 서식] 이의신청서 5. [제4호 서식] 국민행복카드 소개 및 발급 안내(서비스 이용자용) 6. [제5호 서식] 자회보장급여(결정,변경,전자,증자,상실)통지서 7. [제5-1 서식] 국민행복카드 소개 및 발급 안내(서비스 이용자용) 6. [제5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신청서 7. [제5-1 서식]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8. [제5-2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9. [제6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10. [제7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11. [제8호 서식] 자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12. [제9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 안내문(예시1) 12. [제9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 안내문 14. [제11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 안내문 14. [제11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 안내문 15. [제12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지역사회서비스 개요서 16. [제13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지역사회서비스 개요서 16. [제13호 서식] 시회서비스 제공가 등록내장(구·군 작성용)	163
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절차 2. 바우처 시스템 운영절차 3. 서비스 제공 절차 4. 제공기관 운영시 작성 및 관리 제출 서류 안내 5. 제공자 보수교육 6. 제공인력 근태관리 플랫폼 7. 현장점검 주요내용	164
2. 바우처 시스템 운영절차 3. 서비스 제공 절차 4. 제공기관 운영시 작성 및 관리 제출 서류 안내 5. 제공자 보수교육 6. 제공인력 근태관리 플랫폼 7. 현장점검 주요내용 부록 관련서식 I. 목록별 관련서식 II. 관련서식 1. [별지 서식] 욕구판정표 2. [제1호 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3. [제2호 서식] 사회보장급여(살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4. [제3호 서식] 아회보장급여(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 4. [제3호 서식] 이의신청서 5. [제4호 서식] 국민행복카드 소개 및 발급 안내(서비스 이용자용) 6. [제5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신청서 7. [제5-1 서식]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8. [제5-2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9. [제6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10. [제7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11. [제8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11. [제8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11. [제8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11. [제9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11. [제9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11. [제1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중로(예정) 안내문(예시1) 12. [제1호 서식] 사회서비스 지공자 등록신청서, 지역사회서비스 개요서 16. [제13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지역사회서비스 개요서 16. [제13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지역사회서비스 개요서	166
6. 제공인력 근태관리 플랫폼 7. 현장점검 주요내용 부록 관련서식 I. 목록별 관련서식 II. 관련서식 1. [별지 서식] 욕구판정표 2. [제1호 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3. [제2호 서식] 사회보장급여(경정, 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 4. [제3호 서식] 이의신청서 5. [제4호 서식] 국민행복카드 소개 및 발급 안내(서비스 이용자용) 6. [제5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신청서 7. [제5-1 서식]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8. [제5-2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9. [제6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10. [제7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11. [제8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 안내문(예시1) 12. [제9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 안내문(예시1)	171
5. [제4호 서식] 국민행복카드 소개 및 발급 안내(서비스 이용자용)	172
6. [제5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신청서	173
7. [제5-1 서식]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74
8. [제5-2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75
9. [제6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	의서 176
10. [제7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177
11. [제8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 안내문(예시1)	178
12. [제9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 안내문(예시2)	179
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절차 2. 바우처 시스템 운영절차 3. 서비스 제공 절차 4. 제공기관 운영시 작성 및 관리 제출 서류 안내 5. 제공자 보수교육 6. 제공인력 근태관리 플랫폼 7. 현장점검 주요내용 I. 목록별 관련서식 II. 관련서식 II. 관련서식 II. 발지 서식] 옥구판정표 2. [제1호 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3. [제2호 서식] 사회보장급여(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 4. [제3호 서식] 이의신청서 5. [제4호 서식] 국민행복카드 소개 및 발급 안내(서비스 이용자용) 6. [제5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신청서 7. [제5-1 서식]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8. [제5-2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9. [제6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10. [제7호 서식] 사회서비스 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11. [제8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 안내문(예시1) 12. [제9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 안내문(예시2) 13. [제10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 안내문 14. [제11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 안내문 14. [제11호 서식] 사회서비스 인용(종료)통보서 15. [제12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지역사회서비스 개요서 16. [제13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구·군 작성용)	180
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절차 2. 바우처 시스템 운영절차 3. 서비스 제공 절차 4. 제공기관 운영시 작성 및 관리 제출 서류 안내 5. 제공자 보수교육 6. 제공인력 근태관리 플랫폼 7. 현장점검 주요내용	182
15. [제12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지역사회서비스 개요서	183
16. [제13호 서식] 제공기관 운영 계획서	185
17. [제14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구·군 작성용)	189
18. [제15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구·군 발급용)	191

19.	[제16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92
20.	[제17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93
21.	[제18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 신고서	194
22.	[제19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이관·자체보관) 신청서	195
23.	[제20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이관 목록표	197
24.	[제21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198
25.	[제22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199
26.	[제2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제공인력용)	201
27.	[제24호 서식] 보안각서	202
28.	[제30호 서식] 본인부담금 영수증	203
29.	[제31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른 중지 신청서	204
30.	[제32호 서식] 초기상담기록지(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5
31.	[제33호 서식] 초기상담기록지(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208
32.	[별지 서식]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대상자 욕구 조사지	207
32.	[제34호 서식] 서비스 제공계획서	208
33.	[제35호 서식] 서비스 제공계획서(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209
34.	[제36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예시)	211
35.	[제37호 서식] 서비스 제공 기록지(예시)	213
36.	[제38호 서식] 서비스 제공 기록지(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215
37.	[제39호 서식]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초기상담 사진	216
38.	[제40호 서식]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점검사진	217
39.	[제42호 서식] 서비스 종료(상담) 보고서	218
40.	[제43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정부지원금 수납대장	221
41.	[제44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본인부담금 수납 및 환급대장	222
42.	[제45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출내역	223
43.	[제46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 집행현황	224
44.	[제4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이용자용)	225
45.	[제49호 서식] 안전관리 계획서	226
46.	[제50호 서식] 안전관리 교육 계획서	229
47.	[제51호 서식] 안전관리 교육 결과보고서	230
48.	[제52호 서식] 제공기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232
49.	[별지 1호 서식] 근로계약서(예시1)	234
50.	[별지 2호 서식] 근로계약서(예시2)	236
51.	[별지 2호 서식] 근로계약서(예시3)	238
52.	[별지 3호 서식] 서비스 이용자 조치 계획서(휴업·폐업 시 제출)	239
53.	[별지 제5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 추천서	240
54.	[별지 제6호 서식] 이용자 모니터링 설문지	241

55.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추진 실적(현황) 보고서	244
56. [별지 제10호 서식] 제공인력 안내문(스마트폰 등록 시)	246
57. [별지 제11호 서식] 부정행위 근절 이행 각서	247
58. [별지 제12호 서식] 제공인력 정보제공 양식	248
59. [공통양식 1호] 위임장	249
60. [별지 1 서식] 사실 확인서	250
61. [별지 2 서식]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	252
[기타] 구군담당자 연락처	253

제1장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2022년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1)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 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2)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2. 사업개요

- 1) 추진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2) 의의

-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 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3) 수행 방식

-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 사업 기획·운영 상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
 - 지역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심사, 관리, 점검 기능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 서비스 개발 촉진 및 재정 효율성 제고

4) 행정사항

사업기간: 2022. 1. 1. ~ 12. 31.사업방식: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보조율 : 서울 50%, 서울 이외 시·도 70%, 성장촉진지역 80%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71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3호, 성장촉진지역

사업추진 체계

추진 주체	기 능
보건복지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총괄 시·도 성과평가 추진 총괄 시·도 서비스 심사 및 승인·감독·평가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축 및 관리
사회보장정보원	 시·군·구 예탁금 관리 바우처 비용 지급 및 정산 사업 모니터링 실시 및 통계 관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관리(평가 등)
시·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총괄 관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별 예산 조정 및 집행관리 시·도 서비스 기획 및 발굴 시·도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지침 수립 시·군·구 서비스 심사 및 승인·감독·평가 시·도 사회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시·도 성과관리 시·군·구 자체 평가체계 구축 및 실시 시·도 내 서비스제공기관 현장점검 총괄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총괄·지원 사회서비스 관련 교육 및 전문 인재 양성 사회서비스 컨설팅 지원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지역 간 사회서비스사업 연계·협력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인식 개선 홍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교육 및 관리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 발굴·기획 지원 민·관 네트워크 구축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
시·군·구	 시·군·구 지역사회서비스 관리 및 시행 지역사회서비스 예산 집행 분석 및 예탁금 집행 서비스 이용자 선정 및 관리(중도포기자, 미이용자, 대기자 관리, 본인부담금 장기미납자 관리 등) 지역사회서비스제공기관 등록·관리 지역개발서비스 홍보 서비스제공기관 지도·감독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 ※ 2022년도 성과평가 추진계획(미확정)

2021년 시도 성괴평가 개요

1. 추진 배경

- '13년 재정지원 방식이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정책방향 설정과 성과 관리에 집중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기획과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 추진

2. 개요

- (평가 방식) 전문 평가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17개 시도별로 평가 진행
- (평가 방향) 시도의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기획·운영·관리 능력 평가. 계획(P)·집행(D)·성과(C)·환류(A)체계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 기획 및 관리운영 등 추진 과정 전반을 평가
- (평가 기간) 당해연도 사업 수행 기간
- (평가 내용) 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사회·가사간병·산모신생아) 공통 평가 ② 정책 목적 달성과 연동된 특화 영역 평가
- (평가 배점) 공통영역(70점), 지역특화(30점)
- (평가 결과의 활용) 익년도 시·도 예산 배분에 반영
- (평가 추진 체계)

	_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기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시스템 입력 자료 제출 및 지원		- 성과평가세부 운영 총괄 및 평기단 운영 - 시도별 사업운영 모니터링 - 사업 분석 및 연구

보건복지부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 총괄

시·도	시·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사업계획의 수립 - 시·군·구 자체평가 실시 - 시업계획서 및실적보고서제출총괄	- 시·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운영 지원 - 시·도 성과평가 지원

2021년도 시도 성과평가 지표 ※ 2022년도 성과평가 지표(미확정)

1. 공통 평가 지표

	평기영역	평자표	지표 유형	배점(안)
		사업 관리 계획의 적절성	정성	5
		제공인력 관리 계획의 적절성	정성	5
게회	및 집행(30점)	제공기관 관리 계획의 적절성	정성	5
계득	大 日で(JUロ)	사업 관리 집행의 충실성	정성	5
		제공인력 관리 집행의 충실성	정성	5
		제공기관 관리 집행의 충실성	정성	5
	사업관리	생성 대비 이용률	정량	23
		예산 집행률	정량	13
		제공인력 사업참여율	정량	4
시저	실적 (70점)제공인력 교육이수율 제공인력 정보등록율 현장점검 이행률	제공인력 교육이수율	정량	4
		제공인력 정보등록율	정량	4
(100)		현장점검 이행률	정량	6
	제공기관 관리	행정처분 사후조치 등록률	정량	6
	세6기단 단니	이상결제 처리율	정량	6
		부적정 청구비용 발생률	정량	4
총점			100	
			(가점 +5)	

2. 지역 특화 평가 지표

- ①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서비스 구조·조정, 지역문제 해결 전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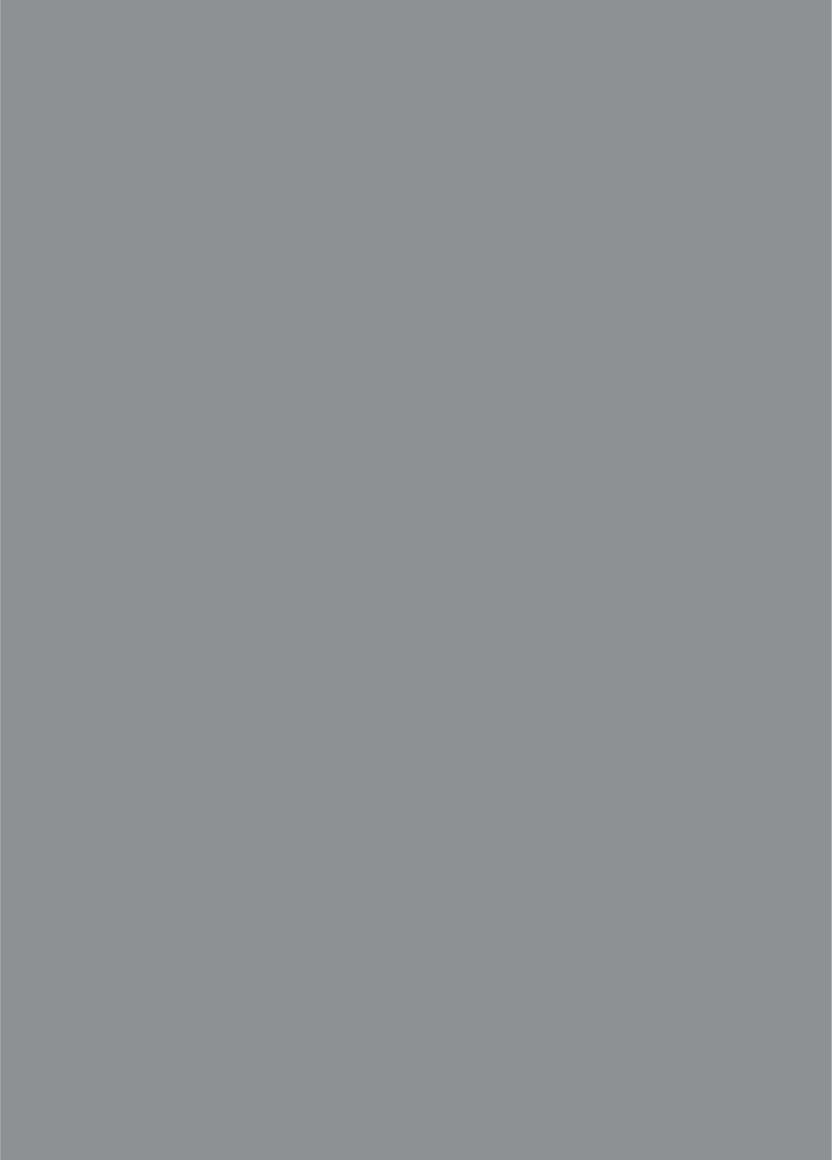
- ②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신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계획 등

- ③ 사회서비스 효과성 향상 : 효과성 측정 도구, 사업효과성 관리 등

평가영역	평가지표	지표 유형	배점(안)
1. 계획	1-1. 계획 수립의 지역적 특수성 및 독창성	정성	20
1. 계력	1-2. 계획 내용의 충실성	정성	15
 2. 집행	2-1. 추진계획의 이행도 및 이행 과정의 충실성	정성	15
2. 십%	2-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도	정성	15
0 24-51	3-1. 성과지표와 목표의 적정성	정성	20
3. 성과	3-2.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	정성	15
총점			100

제2장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 안내





Ⅰ. 시도 개발 사업

상담

- 01_ (011003)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 02_ (290503)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 03_ (170203) 가족마음이음서비스 구)자녀의 성공을 돕는 부모코칭

돌봄

04_ (250203) 뇌에 기가 팍팍

재활

- 05_ (050903) 노인건강관리서비스 (구)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 06_ (080603)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07_ (070101)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08_ (160203) 아동건강관리서비스('22년 폐지사업)

역량강화

- 09_ (120103) 동화야 놀~자(스토리 텔링)
- 10_ (130103)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주요 변경사항(시사업)

	변경	변경 내역		
사업명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 건강 관리 서비스	사업 폐지	_	- 단, '21년 선정된 이용자의 이용권은 종료 시까지 보장	
아동 청소년 시리 유 서비스	가구 특성	(발달지원 및 문제행동〉 ①-1. 발달 지연 관련 의사소견서 또는 관련 의료기록 ①-2.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10백분위(%)이내인 자 ②-1. 문제행동(ADHD) 관련 의사소견서 + 검사결과지 ②-2. 문제행동 관련 의료기록 + 검사결과지 ③-1. 드림스타트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종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아동 ③-2. 학교담임교사, 학교복지사, 학교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Wee클래스·센터·스쿨에서 추천하는 아동 ④ 공공기관·병원·일반기관에서 근로하는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언어재활사 소견서 + 검사결과지 ※ 용어의 해석 - 의사소견서: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아동청소년 관련 전문의소견 - 의료기록: 발달지연, 문제행동 관련 의료기록 - 검사결과지: 발달검사(K-CDR-R, K-ASQ, K-DS계·절단점 T, DEP) 또는 효과성(부산시 지침 참조) 검사 결과, 발달지연·경계·절단점 이상인 경우	(발달지원 및 문제행동〉 ①①-1). 발달 지연 관련 의사소견서 또는 관련 의료기록 ②①①-2).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10백분위(%)이내인 자 ③(②-1). 문제행동(ADHD) 관련 의사소견서 + 검사결과지 ④(②-2). 문제행동 관련 의료기록 + 검사결과지 ⑤.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6개월 이상인 자 ⑥(③-1). 드림스타트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보호종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협의중).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중).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협의중)에서 추천하는 아동 ②(③-2). 학교 담임교사,학교복지사,학교상담교사(특수교사,특수반교사 포함),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에서 추천하는 아동 ⑥(④). 공공기관·병원·일반기관에서 근로하는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언어재활사 소견서 + 검사결과지 ※ 용어의 해석 - 의사소견서: 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소이청소년과등아동청소년 관련 전문의 소견 - 의료기록: 발달지연,문제행동 관련 의료기록 - 검사결과지: 이래중에 하나인 경우(택1) ① 발달검사(K-CDR-R,K-ASQ, K-DST, DEP)발되지연·경계·절단점이상인 경우 ② 효과성 검증도구(부산시 지침 참조) 발달지연·경계·절단점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	① 공공전달체계(드림스타트센터·정신건강복 지센터) 연계자 ② 학교 담임교사, 학교복지사, 학교상담교사 (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① 공공전달체계(드림스타트센터·정신건강복지 센터· <u>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협의중),청소</u> 년상담복지센터(협의중),부산기초학력 지원센터(협의중) 연계자	

	변경	변경 내역			
사업명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③ Wee클래스·센터·스쿨 추천자 ④ 아동보호종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추천자 ⑤ 한부모, 아동시설 입소자, 대안학교 재학생 ⑥ 의사소견서, 의료기록(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등), 임상심리사 소견서 ⑦ 청소년상담사·언어재활사 소견서	②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6개월 이상인 자, 풀배터리(full-battery)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자 ③ 학교 담임교사, 학교복지사, 학교상담교사, 특수교사, 특수반교사 추천자 ④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 추천자 ⑤ 아동보호종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추천자 ⑥ 한부모, 아동시설 입소자, 대안학교 재학생 ① 의사소견서, 의료기록(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등), 임상심리사 소견서 ⑧ 청소년상담사·언어재활사 소견서		
	사업명	부모의 성공을 돕는 부모 코칭	가족마음이음서비스		
가족 마음 이음 서비스	가구 특성	① 미취학 및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 ② 예비부모(주민등록상 가족관계 확인가능 자, 혼인신고자) ③ 조부모(조손세대): 주민등록상 가족관계 확인가능자로 법적 조손가정과 주민등록상 조부모와 손자녀만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주 민등록상 손자녀의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 으면 이용 가능)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 ※ 중복 이용 불가사업(서비스지원 기간 내 동시 신청 이용 불가)	(예방) ① 예비부모 (주민등록상 가족관계 확인가능자, 혼인신고자) 《고위험》 ②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혐의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혐의중), 건강가정지원센터(협의중)에서 추천한 부모 ③ 정신질환(우울 등) 관련 약물치료 6개월 이상인 자 ④ 만18세 이하 자녀가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6개월 이상인 자 ⑤ 만18세 이하 자녀가 풀배터리(full-battery)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자의 부모 (경계》 ⑥ 정신질환 관련 의사소견서·의료기록·임상심리사 소견이 있는 자 ⑦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이후 부모+검사결과지 (잠재) ⑥ 조부모·한부모(주민등록 기준)+검사결과지 (잠재)		
	우선순위	① 한부모 ② 조손세대(가정위탁부모 포함) ③ 예비부모 ④ 미취학자녀 고연령 순 ⑤ 취학자녀 저연령 순	① 예비부모 (주민등록상 가족관계 확인가능 자, 혼인신고자) ②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협의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중), 건강가정지원센 터(협의중),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협의중)에		

	변경	변경 내역			
사업명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 추천한 부모 ③ 정신질환(우울 등) 관련 약물치료 6개월 이상인 자 ④ 만18세 이하 자녀가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6개월 이상인 자의 부모 ⑤ 만18세 이하 자녀가 풀배터리(full-battery)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자의 부모 ⑥ 정신질환 관련 의사소견서·의료기록·임상심리사 소견이 있는 자 ⑦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이혼 부모+검사결과지 ⑥ 조부모·한부모(주민등록기준)+검사 결과지 ⑨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자녀 고연령순)		
	서비스 내용	 ② 발달단계에 따른 자녀 이해하기 - 자녀행동 이해하기 - 자아존중감, 나와 타인 이해하기 등 배려와 존중이 있는 아이로 키우기 ⑤ 양육스트레스 이해 및 지원 - 효율적 감정처리 방법, 긍정적 부모역할 교육 ⑥ 화목한 가족관계 리더 되기 	대상자 욕구에 맞춤 심리상담 제공 ② 발달단계에 따른 자녀 이해 ⑤ 양육스트레스 이해 ⑥ 부부,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개입 및 예방 ③ 우울, 불안 등에 대한 심리상담 ※ 상담 및 서비스 제공 결과보고서 의무작성 ※ 제공인력 근태관리 플랫폼 의무사용 적용예정(시기 미정)		
	집단 규모	1:1 또는 1:2~1:15 (제공 기록지에 집단 규 모 작성)	1:1 또는 1:2~1:6 (제공 기록지에 집단 규모 작성)		
	서비스 시간	 집단상담(집단 규모 1:2~1:15): 주 1회 (월 4회 / @+ⓑ+ⓒ), 회당 120분 개인상담(집단 규모1:1): 주1회(월4회 / @+ⓑ+ⓒ), 회당 50분 	 · 집단상담(1:2~1:6): 주1회 월 4회 (②+⑤ +ⓒ+⑥) 회당 90분 · 개인상담(1:1): 주1회 월 4회(②+⑥+ⓒ+⑥) 회당 50분 ※부부상담 허용 		
	재판정	1회	<u>삭제</u>		
시각 장애인 안마 서비스	서비스 가격	서비스가격: 160,000원(수급자 152,000원) 정부지원금: 144,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 -수급자: 월 8,000원(회당 2,000원)	서비스가격:168,000원 (수급자159,600원) 정부지원금: 151,200원 본인부담금: 16,800원 -수급자: 월 8,400원(회당 2,100원)		



(011003) 이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항 목	내 용
목 적	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 상적 성장 지원
목 적 서비 상 (소득·연령 ·가구 특성 모두능)	
	① 학교담임교사, 학교복지사, 학교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Wee클래스· Wee센터· Wee 스쿨에서 발급한 추천서 ⑧ (공공기관·병원·일반기관)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언어재활사 소견서(+자격증 시본) + 검사결과지

항 목	내 용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추천서 또는 소견서 또는 검사결과지: 아동의 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발급처 직 인 포함) ※ 예외: 학교담임교사, 학교복지사, 학교상담교사 추천 시 직인이 포함되기 어려운 경우「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에 한하여 재직증명서(예외1) 또는 추천인의 도장(예외2)으로 직인을 갈음할수 있는 것으로 합의함. ※ 절단점 기준은 부산시 지침에서 별도제시(서비스별 가구 특성 확인자료 참고 p.69)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 ※ 중복 이용 불가사업(서비스자원 기간 내 동시 신청 이용 불가): 발달재활서비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우선순위	● 우선순위: ① 공공전달체계 (드림스타트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협의중)·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의중)·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협의중)) 연계자 ②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6개월 이상인 자, 풀배터리(full-battery)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자 ③ 학교 담임교사, 학교복지사, 학교상담교사, 특수교사, 특수반교사 추천자 ④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 추천자 ⑤ 아동보호종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추천자 ⑥ 한부모, 아동시설 입소자, 대안학교 재학생 ⑦ 의사소견서, 의료기록(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등), 임상심리사 소견서 ⑧ 청소년상담사·언어재활사 소견서 ※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 읍·면·동 확인 가능한 서류(없음)				
	서비스 ○ 지원상담서비스(기관방문형: 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유형 ○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 (시설기준) (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제공기관 등록	①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년상담사,「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시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한강전문요원,「국가기술자격법」제8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영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작업치료사 ② 심리·상담, 아동청소년학·사회복지학, 가족학, 교육학(상담·심리 석사학위자), 특수교수체육학, 재활학(언어·음악·미술·행동·놀이재활학, 작업치료학) 등 영유아·아동·청달·심리지원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1.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24월 이상 2.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12개월 이상 3.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4.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일무경력 300시간 이상				

항목			내 용			
1. 제공기관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슈퍼바이저 1인 이상을 반드시 두도록 하관의 장이 기준이 충족할 경우 이를 겸직할 수 있음 2. 슈퍼바이저는 제공기관의 인력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정함 - 심라·상담, 아동청소년화·사회복지학, 가족학, 교육화(상담·심리 석사학위 이상 육화·특수체육학, 재활화(언어·음악·미술·행동·놀이재활학, 작업치료화) 등 영유(년 발달·심리지원 관련 학위 취득자로서 · 전문화사화위 취득 후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취득 후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취득 후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취득 후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언어재활사, 청소년 상담사, 전문상담 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건강전문요원사, 직업치료사 자격 취득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슈퍼바이저는 4대 보험(월 60시간 근로) 의무 가입 ※ 슈퍼바이저 서비스 제공시 제공인력 등록 필수 ※ '20년 슈퍼바이저 자격기준 미충족 기관의 최종 유예방법 및 기간: 슈퍼바이저 갖춘 슈퍼바이저 자격기준 미충족 기관의 최종 유예방법 및 기간: 슈퍼바이저 갖춘 슈퍼바이저 자격기준 미충족 기관의 최종 유예방법 및 기간: 슈퍼바이저 갖춘 슈퍼바이저 자격기준 미충족 기관의 최종 유예방법 및 기간: 슈퍼바이저 갖춘 슈퍼바이저 자격기준 미충족 기관의 최종 유예방법 및 기간: 슈퍼바이저 갖춘 슈퍼바이저 자격기준 미충족 기관의 최종 유예방법 및 기간: 슈퍼바이저 갖춘 슈퍼바이저 자격기준 미충족 기관의 최종 유예방법 및 기간: 슈퍼바이저 첫초 도입 및 '22년 2월까지 총 5년 유예기간 연장 최종 적용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180,000 ~ 270,000원					
	2022년 기존·신규 이용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등급	정부지원금	(가격탄력제)	등급별 소득기준		
서비스 가격 및	1등급	월 162,000원 (회당 40,500원)	월 18,000~54,000원 (회당 4,500~13,500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한부모가족(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결제원칙	2등급	월 144,000원 (회당 36,000원)	월 36,000~96,000원 (회당 9,000~24,000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이 아닌 자		
	3등급	월 126,000원 (회당 31,500원)	월 54,000~126,000원 (회당 13,500~31,500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4등급	월 108,000원 (회당 27,000원)	월 72,000~162,000원 (회당 18,000~40,500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기간 및 재판정 여부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 지원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 가능 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구·군이 결정 					
서비스 내 용	제공주기 및 회당시간: 주 1회(월 4회), 회당 1인: 50분 (③·⑥·ⓒ 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항 목	내용				
	● 서비스 내용: ④ 발달지원 - 발달기초: 기본적 대근육,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 언어발달: 의사소통 기능·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 초기인지: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 정서, 사회성: 기본적인 정서표현, 가족 및 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⑤ 문제행동 - 개인 맞춤형 • 놀이프로그램: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발달 등 지원 • 언어프로그램: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 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 능력 향상 • 인지프로그램: 아동의 발달 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 미술프로그램: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 음악프로그램: 다양한 악기 또는 음악을 통한 표현력 향상, 정서발달 향상 ※ 피아노 등 단순 음악악기를 활용한 기능 프로그램 제공 불가 ⑥ 발달지원과 문제행동 관련 부모상담(필요시 회당 10분 내외) ④ 슈퍼비전: 월 1회 이상 사례회의 등 슈퍼비전 실시 ● 집단 규모: 1인 원칙				
효과성 검 증	 ● 대상 및 시점: 전수조사(이용자 전원) / 서비스 제공 전, 후 ● 도구: 본 지침 사업별 효과성 검증 도구 p84 참고 ● 측정 결과 제출: 시·군·구 요청 시 				
사업연혁	 ● 사업 개시: 2013년 2월 시행 (문제행동+영유아 통합) ● 연도별 사업 변경 연혁 구분 2012년 이전 2013년 2014~2021년 사업코드 구·군사업 4576 011003 ※ 2013년 이전 동일 사업: ①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Love Care 119) (구·군사업) ②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시사업) 구분 사업코드 사업 ① 4563(강서구), 4503(금정구), 4506(동구), 4522(동래구), 4530(북구), 4531(사상구), 4532(수영구), 4540(연제구), 4517(해운대구) 사업 ② 4011(광역) ※ 사업연혁에 명시되어 있는 코드는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 				

(290503) 이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항 목	내용				
목 적	음악·미술치료 및 심리상담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예방 및 완화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등급별 소득기준 상이(하단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참고) ● 연령: 만 4세 ~ 13세(2009년 ~ 2018년 출생자) 				
	● 가구 특성 [가구 특성 확인 자료 p.69 참고] ① 해당 기관에 근로하는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② 학교담임교사, 학교복지사, 학교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Wee클래스·Wee센터· Wee스쿨에서 추천하는 아동 ③ 유아교육기관장·어린이집원장이 추천하는 아동 ④ 효과성 검사(부산시 지침 참조)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				
서비스 대 상 (소득·연령 ·가구 특성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가구 특성 구비서류: 입증일(검사, 확인, 추천 등)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①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자격증 사본) ② 학교담임교사, 학교복지사, 학교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Wee클래스 · Wee센터 · Wee스쿨에서 발급한 추천서 ③ 유아교육기관장·어린이집원장 추천서 ④ 검사결과지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추천서 또는 소견서 또는 검사결과지: 아동의 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 (발급처 직인 원칙) ※ (예외1) 불가피하게 발급기관(학교장)의 직인이 포함되기 어려운 경우 작성자의 재직증명서 대체 가능. ※ 추천자는 학교(기관)에 속한 아동에 한해 추천 가능 ※ 절단점 기준은 부산시 지침에서 별도 제시(서비스별 가구 특성 확인자료 부록2 참고)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 ※ 중복 이용 불가사업(서비스지원 기간 내 동시 신청 이용 불가): 발달재활서비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우선순위	● 우선순위: ① 학교담임교사, 학교복지사, 학교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②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 추천자 ③ 한부모 ④ 아동시설 입소자, 대안학교 재학생 ⑤ 임 상심리사 소견서 ⑥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⑦ 유아교육기관장·어린이집원장 추천자 ⑧ 고연령 순(만 13세 ~ 만 4세) ※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 읍·면·동 확인 가능한 서류(③, ⑧ 미제출)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적용 권장기준: 제3장 신청 및 선정기준 p.111 확인				
제공기관 등록	● 지원상담서비스(기관방문형: 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원칙, 서비스 재가방문서비스(재가방문형) 일부 허용 유형 ※ 제공인력 가정에서 서비스 제공 불가 (시설 유형) ※ 재가방문은 기관의 서비스 운영 정책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에 기관의 운영 정책 준용(이용 자 선택 불가)				

항 목	내 용				
	●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				
		(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m² 추가 확보)			
	제공인력 자격기준	 ○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 ① 음악심리(재활), 미술심리(재활), (통합)예술심리(재활), 행동심리(재활), 놀이심리(재활), 특수교육학, 심리상담학 관련 학과 학사 이상 전공자로 임상경력 300시간(경력증명서 상 시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경력 6개월로 인정) 이상 보유자 ② 가족·사회 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학사학위 이상자로「자격기본법」제17조에 의한 음악, 미술재활, (통합)예술재활 등 심리상담 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 ③ 공예, 순수, 응용 미술, 음악, 음악 및 미술 교육학 전문학사 이상자로「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음악, 미술재활, (통합)예술재활 등 심리상담 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 			
	및 미술 교육학 분야 전문학사 이상자로 「자격기 합예술재활 등 심리상담 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법에 해당				
	◉ 세비스 가	격(정부지 원금 + 본인	<u>!부담금</u>): 월 180,000 ~ 2	10,000원	
			2022년 기존・신규 여	기용자	
	트그 6 범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가격탄력제)	등급별 소득기준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1등급	월 160,000원 (화당 20,000원)	월 20,000~50,000원 (희당 2,500~6,250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한부모가족(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2등급	월 140,000원 (회당 17,500원)	월 40,000~70,000원 (회당 5,000~8,750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이 아닌 자	
	3등급	월 120,000원 (회당 15,000원)	월 60,000~90,000원 (회당7,500~11,250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지원기간 및 재판정사업	 ● 지원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 사업 아님 				
서비스 내 용	 ● 제공주기 및 회당시간: 주 2회(월 8회 / ⓐ+ⓑ), 회당 60분 ⓐ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월 횟수: ⓐ 4회 + ⓑ 4회 진행 ※ 제공기록자에 [기능, 정세 영역 표기 ※ 보강을 포함한 1일 서비스 횟수 2회 초과 불가 				

항 목	내 용				
	 ● 서비스 내용: 학교부적응 등 정서행동적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아동 대상 클래식 악기 및 미술교육 등을 매개로한 예술심리치료서비스 제공 ③ 음악 및 미술 실기 악기 이론 및 실기(바이올린, 플롯, 클라리넷, 비올라, 첼로 등 선택), 악기 대여 미술지도: 기본 스케치 기술, 크레파스&물감 등 채색화 그리기, 조각 및 만들기 등 ⑤ 정서순화프로그램 미술치료, 음악놀이 치유,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 근태관리 플랫폼: '22년 의무도입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등록 제공기관 및 활동 제공인력 플랫폼 의무 사용 플랫폼 구성: ① 제공기관 사용 웹(관리자), ② 제공인력 사용 앱(어플) ① 웹: 제공인력 출퇴근 확인 및 관리, ② 앱: 서비스 시작·종료 시 출퇴근 인증 ※ 사용방법: 플랫폼 사용 영상 참조(부산지원단 홈페이지 게제) ※ 플랫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지침 p.152 참조 ※ 부산시 및 구·군, 지원단: 현장점검 시 플랫폼 사용 및 활용 내역 확인 				
효과성 검 증	 ● 대상 및 시점: 전수조사(이용자 전 ● 도구: 본 지침 사업별 효과성 검증 ● 측정 결과 제출: 시·군·구 요청 시 	증 도구 p84 참고			
사업 연혁	 ● 사업 개시: 2013년 2월 시행(Art Therapy+성장기 아동 통폐합) ● 연도별 사업 변경 연혁 고 분 2013년 2014~2021년 사업코드 4577 290503 ※ 2013년 이전 동일 사업: ① Art Therapy를 활용한 지역아동 EQ증진 서비스 (시사업) 고 성장기 아동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시사업) 구분 사업코드 사업 ① 4544(광역) 사업 ② 4545(광역) ※ 사업연혁에 명시되어 있는 코드는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 				



(170203)

가족마음이음서비스 (구)자녀의 성공을 돕는 부모 코칭

항 목	내 용			
목 적	정신 건강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상담서비스 체감도 증진 및 가족 관계 개선 지원			
서비스 대 상 (소득·연령 ·가구 특성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소득: 제한 없음 ※ 등급별 소득기준 상이 (하단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참고) ● 연령: 제한 없음 ● 가구 특성: 《메발》 ① 예비부모 (주민등록상 가족관계 확인가능자, 혼인신고자) 《고위험》 ②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혐의중)·청소년상담복지센터(현의중),건강가정지원센터 (협의중),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협의중)에서 추천한 부모 ③ 정신질환(우울 등) 관련 약물치료 6개월 이상인 자 ④ 만18세 이하 자녀가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6개월 이상인 자의 부모 ⑤ 만18세 이하 자녀가 플해터리(full-battery)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자의 부모 〈경계〉 ⑥ 점신질환 관련 의사소견서·의료기록·임상심리사 소견이 있는 자 ⑦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이혼 부모+검사결과지 ⑥ 조부모·한부모(주민등록 기준)+검사결과지 ② 조부모·한부모(주민등록 기준)+검사결과지 〈참재〉 ②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 ● 가구 특성 구비서류: 입중일(검사, 확인, 추천 등)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① 해당없음 ②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혐의중)·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혐의중),건강가정지원센터(혐의중),부산기초학리지원센터(혐의중) 추천서 ③ ④ 약물차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의료기록(진단서, 추천서 등) ⑤ 풀배터리(full-battery) 검사결과지 ⑤ 의료기록(정신질환 관련 의사소견서 등), 정신질환 관련 임상심리사 소견서 ② ③ 경사결과자: MMPI, 효과성 검증도구(부산시 지침 참조) 중 택1 ⑤ ⑩ 해당없음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익시항 - 추천서 또는 소건서 또는 검사결과자: 발급처 직인 원칙			
우선순위	 ● 우선순위: ① 예비부모 (주민등록상 가족관계 확인가능자, 혼인신고자) ②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혐의중)·청소년상담센터(협의중), 건강가정지원센터(협의중), 			

항 목	내용					
	부산 기초학력지원센터(협의중)에서 추천한 부모					
	③ 정신질	환(우	2울 등) 관련 약	물치료 6개월 이상인 자		
	④ 만18/	0	하 자녀가 문제한	l동 관련 약물치료 6개월 0	<u> 상인 자의 부모</u>	
	⑤ 만18시	O ō	하 자녀가 풀배터	믹(full-battery) 검사결과 이	<u>상소견이 있는 자의 부모</u>	
	<u>⑥ 정신</u> 질	환 곤	<u> 관련 의사소견서·</u>	<u> 의료기록·임상심리사 소견이</u>	있는 자	
	⑦ 만18/	0	하 자녀를 둔 이	<u>혼 부모+검사결과지</u>		
			모(주민등록기준			
		_	f를 둔 부모(자년			
			사녀를 둔 부모(지			
			_	건만 제출, 읍·면·동 확인 가능		
	● 대상자	선정 5	우선순위 적용 권장	J기준: 제3장 신청 및 선정기준	은 p.111확인	
		•	지원상담서비스(기	 관방문형: 이용자가 제공기관으	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서비스	•) 시설기준			
	유형	→	·'22년 이전 등록제	당기관: 시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	실 + 전용면적 49.5㎡(15평) 이상 시설	
	(시설기준)			※ 단, 시설 이전 시 ·	신규등록기관 기준 적용	
		→	·'22년 이후 신규동	등록기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	
		1	① 심리·상담, 이동청소년학·사회복지학, 기족학, (특수)교육학, 재활학 등 심리·상담 관련 학위			
			소지자로서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부모교육, 심리상담) 활동 경력 4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부모교육, 심리상담) 활동 경력 2년 이상인 자			
제공기관 등록			- 석사학위 취득 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의 관련 분야 강의경력 6개월(1학기)			
			이상인 자			
	제공인력	2	②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자격기본법」제17조에 심리·상담 분야(가족·교육·사회복자·이동·			
	자격기준		심리상담)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부모교육, 심리상담) 활동경력 3년 이상			
			인 자 → ('23년 2월까지 적용(유예기간 3년) 및 신규 등록 불가)			
			※ 겸임강사(특강 등 일시적 강사 인력) 경력 불인정			
			※ 부모교육 및 심리상담 활동 경력과 관련해서는 경력증명서상 부모교육과 심리상담과			
			관련한 경력이 증빙되어야 함 <i>(단순히 근무한 경력은 불인정)</i>			
		▶ 「자격기본법」 제17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	서 조회되는 자격증이 이 법에 해당		
	◉ 서비스	가격(장	정부지원금 + 본인	부담금): 월 140,000원 ~ 30	0,000원	
				2022년 기존·신규 이용자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가격탄력제)	등급별 소득기준	
				(/ T L T/II)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서비스 가격		1	월 126,000원	월 14,000원~40,000원	교육급여), 차상위(차상위본인부담경	
및			(회당 31,500원)	(회당 3,500원~10,000원)	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 위자격확인), 한부모가족(한부모 및	
결제원칙	규모				위사격확인), 안무모가족(안무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1:2~	2	월 120,000원	월 20,000원~80,000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회당 30,000원)	(회당 5,000원~20,000원)	이 아닌 자	
		3	월 100,000원	월 40,000원~120,000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등	급	(회당 25,000원)	(회당 10,000원~30,000원)	/1世6刊上号 120% 至4	

항 목	내 용						
	집단 규모	1 등급	월 126,000원 (회당 31,500원)	월 14,000원~ (회당 3,500원		급여), 차상위(차상위자활, 차성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상위장애인, 차상위자 가족(한부모 및 조손 부모가족)
	1:1	2 등급	월 120,000원 (회당 30,000원)	월 20,000원~ (회당 5,000원		기준중위소득 1 이 아닌 자	20% 이하 중 1등급
		3 등급	월 100,000원 (회당 25,000원)	월 40,000원~ (회당 10,000원		기준중위소	는득 120% 초과
	※ 기관별 가격 기준표 이용자에게 제시 권장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지원기간 및 재판정사업		처 포인	개월 트 생성주기: 1개월 여부: <mark>해당없음</mark>	마다			
서비스 내 용	 ● 제공주기 및 회당시간: 주 1회(월 4회 / ⑧+⑤+⑥), 회당 2~6인 그룹 90분 / 1인 50분 • 집단상담(집단 규모 1:2~1:6): 주 1회(월 4회 / ⑧+⑥+⑥+⑥), 회당 90분 • 개인상담(집단 규모 1:1): 주1회(월4회 / ⑧+⑥+⑥+⑥), 회당 50분 ※부부상담 허용 ● 제공방식: 1:1 상담일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서비스 허용. 단, 비대면서비스 제공 시 제공주기, 제공기록, 결제방법은 부산시 지침을 준용 ● 서비스 내용: 대상자 옥구에 맞춤 심리상담 제공 ③ 발달단계에 따른 자녀 이해 ⑤ 양육스트레스 이해 ⑥ 우울, 불안 등에 대한 심리상담 ※ 상담 및 서비스 제공 결과보고서 의무작성 (종료시 [제42호 서식] 또는 기관 자체 서식 사용) ※ 제공인력 근태관리 플랫폼 의무사용 적용예정(시기 미정) ⑥ 집단 규모: 1:1 또는 1:6(제공 기록지에 집단 규모 작성) 						
효과성 검 증	 ● 대상 및 시점: 전수조사(이용자 전원) / 서비스 제공 전, 후 ● 도구: 본 지침 사업별 효과성 검증 도구 p84 참고 ● 측정 결과 제출: 시·군·구 요청 시 						
사업 연혁	● 연도구사		2010년 1월 시행 변경 연혁 2013년 자녀의 성· 학부도 4561		부모	~2021년 성공을 돕는 고코칭 70203	2022년 가족마음 이음서비스
	※ 사업	법연혁에	명시되어 있는 코드	는 동일한 사업의	으로 간주		



비대면 기준 정보

(170203)

가족마음이음서비스 (구)자녀의 성공을 돕는 부모코칭

항 목	내 용
제공방식	 ● 1:1 비대면서비스 - 인터넷 결제방식이 미적용됨에 따라 최소 월 1회(4회차 또는 익월 1회차)는 기관 방문 - 추후 인터넷 결제방식이 적용될 경우, 월 4회 비대면서비스 제공 가능 ※ 적용시기: '21년 2월 적용
집단 규모	● 1:1
제공주기 및 회당시간	 ● 월 4회(주 1회, 회당 50분 → 총 200분) - 대면 및 비대면서비스 포함 월 200분 제공 - 회당 제공시간 최소 30분 이상 제공 시 결제 가능. 단, 월 200분 반드시 제공해야 함 - 회당 50분 미제공 시 다음 회기에 이월하여 제공 가능. 단, 해당 월에 한함
결제원칙	화당 결제방식[월 1회(4회차 또는 익월 1회차) 기관 방문 시 정상 결제 1회, 그 외 소급 결제 인터넷 결제방식 적용 가능 여부 협의 중이며, 인터넷 결제 가능 시 회당 결제 실시 제공기록지에 이용자 서명 필수
서비스 가격	◉ 1:1 집단 규모의 회당 결제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
활용도구	● 컴퓨터(웹캠·마이크 포함), 노트북(카메라·마이크 포함) 등의 기기 및 영상플랫폼(ZOOM 등)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상담 서비스 제공 ※ 화상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상)전화상담 가능
제공기록지와 상담기록지 작성	 ● 비대면서비스 제공 전 이용자에게 상담 일시·방법을 문자 등을 통해 사전 알림 ● 제공기록지에 상담 일시 작성, 서비스 내용은 비대면서비스(화상 또는 유선)로 작성 ● 제공기록지 외의 상담기록지에 비대면서비스 제공 증빙(사진)서류 포함하여 상담기록 작성(상담기록지 서식은 자유 형식이며, 제공기록지를 활용하여 상담기록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 단, 영상 및음성 파일 보관 불가 ● 비대면서비스 제공 증빙(사진)서류 - ①. 화상상담 접속화면 화면 캡처(이용자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 ②-1. 제공자 핸드폰으로 상담한 경우, (영상)통화 일·시간 화면 캡처 - ②-2. 제공자 유선전화로 상담한 경우, 통화 시작·종료 시간 기록 ● 초기상담 및 서비스 계약 체결은 대면으로 실시, 사전·사후검사·모니터링은 대면(권장)

항 목		내 용	
목 적	만 65세 이상 또는 치매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치매의 발병과 중증화를 사전에 예방		
서비스 대 상 (소득·연령 ·가구 특성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등급별 소득기준 상이 (하단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참고) ● 연령: 만 65세 이상(1957년(포함) 이전 출생자) ● 가구 특성: 해당 없음 ● 가구 특성 구비서류: 해당 없음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 ※ 중복 이용 불가사업(서비스지원 기간 내 동시 신청 이용 불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우선순위	 ● 우선순위: ① 1인가구 ② 의료기관 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추천 등 공공전달체계 추천 ③ 노부부(부부 중 1인이 만 80세 이상인 경우) ④ 임상심리사 추천 ⑤ 장애등록자 ⑥ 연령(고연령 순) ※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 읍 면·동 확인 가능한 서류(①, ③, ⑤, ⑥ 미제출)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적용 권장기준: 제3장 사회서비스 신청 및 선정기준 p.111 확인 		
제공기관 등록	서비스 유형 (시설기준)	 ● 재가방문서비스(재가방문형: 제공인력이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 원칙 ● 지원상담서비스(기관방문형: 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하용 ※ 단, 경로당, 주간보호센터 등 시설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불가 ● 시설기준: (신규·기존 공통) 〈재가방문〉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재가방문+기관방문〉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 (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제공인력 자격기준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또는 국가전문자격(「의료법」 제2조에 의한 간호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작업치료사,「국민건강증진 법」 제12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사) ②-1「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치매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심리상담 관련 자격소지자 ②-2「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예방 관련 자격소지자(취득과정 60시간 이상)로서「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심리상담 관련 자격소지자 ※(예시) 치매예방 2급(30시간) 취득 후 치매예방 1급(30시간): 인정 ▶「자격기본법」 제17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이 이 법에 해당	

항 목	내 용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160,000원 (수급자 월 156,000원)							
	2022년 기존·신규 이용자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 ÷	등급별 소득기준			
	 는 ; ;	월 152,000원	월 8,000원 (회당 1,000원)	차성	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상위(차상위본인부담경감, 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회당 19,000원)	수급자 : 월 4,000원 (회당 500원)		차상위자격확인), - 가족(한부모 및 조손가족,			
2 "2 1	2등급 (호	월 140,000원 화당 17,500원)	월 20,000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당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이 아닌 자			
	기능급	월 132,000원 회당 16,500원)	월 28,000원 (회당 3,500원)	/\·	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수급자여부 제공기관						
지원기간 및 재판정사업 여부	 ● 지원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 사업 아님 							
서비스 내 용	 ● 제공주기 및 회당시간: 주 2회(월 8회), 회당(②+⑥+⑥) ● 서비스 내용: ③ Alz 학습요법 - 치매예방 및 중증악화 예방을 위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두뇌 활성화 인지건강 프로그램으로 학습 요법 교재에 의한 1:1 맞춤식 읽기, 쓰기, 숫자 계산으로 두뇌활성화 교육 ⑤ 차문화 치료 - 차를 통한 정서기능 안정 및 상담 ⑥ 택틸케어, 색종이접기, 회상요법, 치매예방체조, 레크리에이션 ※ ③, ⑥, ⓒ는 이용자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시간 계획 수립 가능 ● 집단 규모: 1인 원칙, 이용자의 사정 또는 요청에 따라 3인 이하 소그룹으로 서비스 운영 가능 ※ 단, 전체 이용자의 30% 내에서 가능 							
효과성 검 증	 ● 대상 및 시점: 전수조사(이용자 전원) / 서비스 제공 전, 후 ● 도구: 본 지침 사업별 효과성 검증 도구 p84 참고 ● 측정 결과 제출: 시·군·구 요청 시 							
	● 사업 개시: 2010년 2월 시행● 연도별 사업 변경 연혁							
11년 연극	구 분	2013년	2014년	1	~2021년			
사업 연혁	사업명	찾아가는 !	맞춤형 치매예방교실]	뇌에 기(氣)가 팍팍!			
	사업코드 4547 250203							
	※ 사업연혁에 명시되어 있는 코드는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							



(050903) 노인건강관리서비스 (구)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항 목	내 용			
목 적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서비스 대 상 (소득·연령 ·가구 특성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 만 65세 이상 (1957년(포함) 이전 출생자) [의료급여 연계자: 만 55세 이상(1967년(포함) 이전 출생자)] ● 가구 특성 ① 보건소 노인체력측정 3개 부문(근지구력, 유연성, 평형성) 검사 결과 평균 4등급 이상인 자 또는 표준범위 외의 자 ② 신체건강 등에 의학적 이상소견이 있는 자(의사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③ 체성분 검사(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마을건강센터, 일반기관 모두 포함) 또는 기초체력검사 결과 표준범위 외의 자 ④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추천자 → 구·군담당자 ● 가구 특성 구비서류: 입증일(검사, 확인, 추천 등)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① 보건소 노인체력측정 검사결과지 ②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③ 체성분검사결과지 또는 기초체력 검사결과지 ④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추천자(이용자 제출 불필요)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 			
우선순위	 ● 우선순위: ① 1인가구 ②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연계자 ③ 신체질환자(의사 및 병원 진단·소견·진료확인) ④ 노인체력 측정 검사 결과 이상자 ⑤ 체성분 측정 검사 결과 이상자 ※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 읍·면·동 확인 가능한 서류(① 미제출)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적용 권장기준: 제3장 사회서비스 신청 및 선정기준 p.111 확인 ※ 단, ③순위 신체질환자는 관절, 비만,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우선 적용 			
제공기관 등록	● 지원상담서비스(기관방문형: 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 '19년 2월 이전 등록제공기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 (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발 ※ 단, 시설 이전 시 신규등록기관 기준 적용 → '19년 2월 이후 신규등록기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82.5㎡(25명 이상 시설			

항 목	내 용				
		① 「코 법 동 ② 채 등 ③ 새	시행령 제9조의5에 따른 노인스포츠지 일하거나, 또는 해당 운동 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운동자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중 지자체의 승인으로 인정받은 자	
	제공인력 자격기준	① (TE)	2. 수중 운동서비스 제공인력 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5에 따른 노인스포츠지도사,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 종목은 동일하거나, 또는 해당 운동 경력 2년 이상인 자 ② 체육학, 무용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자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중등 체육 정교사 ③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수중운동, 이쿠아로빅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수중운동자격 ①、②、③ 자격 요건에 충족되는 자는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수상안전 전문가 또는 인명구조전문가 또는 응급조치 등 자격증(수료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함		
		① [초 ② [국 ③ [국 ④ 법	· · · · - · · · - · · · · · · · · · · ·	등 정교사 교육사, 간호사 ·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같은 I도사 또는 중등 체육 정교사로서 관련 분야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① 1등급: 월 74,000원 (수급자 월 69,000원) ② 2등급: 월 120,000원 (수급자 월 114,000원) 				
	구년	2022년 기존·신규 이용자			
	⊤₺		1등급 (마 루운동 서비스)	2등급 (수중운동 서비스)	
서비스 가격 및	정투 지원·		월 64,000원 (회당 8,000원)	월 108,000원 (회당 13,500원)	
결제원칙			월 10,000원	월 12,000원	

-,,,	2022년 기존·신규 이용자			
구분	1등급	2등급		
	(마루운동서비스)	(수중운동서비스)		
정부	월 64,000원	월 108,000원		
지원금	(회당 8,000원)	(회당 13,500원)		
본인	월 10,000원 (회당 1,250원)	월 12,000원 (회당 1,500원)		
부담금	수급자 : 월 5,000원 (회당 625원)	수급자 : 월 6,000원 (회당 750원)		

※ 초기상담시 수급자여부 제공기관에서 확인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항 목	내용
지원기간 및 재판정사업	 ● 지원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 가능 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구군이 결정 ※ 동일 등급으로 재신청 불가, 즉, 1등급(마루) 이용자는 2등급(수중) 서비스 재신청 가능
선 용	 ● 제공주기 및 회당시간: 주 2회(월 8회), 회당 90분 1. 마루운동서비스 (※ 1회 90분은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시간 포함) - 제공주기 및 회당시간: 주 2회(월 8회 / @+⑥+ⓒ) @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주 2회(월 8회), 회당 90분 ⑥ 건강상태 상담 및 건강교육: 분기 1회(연 4회), 회당 90분 ⓒ 발표회 또는 경연: 연 1회, 회당 90분 ※ 분기별 1달은 @ 7회 + ⑥ 1회 진행 ⑥ 서비스 제공하는 달은 @ 7회 진행 ⑥, ⓒ 서비스 제공하는 달은 @ 6회 진행
	2. 수중운동서비스 (※ 1회 90분은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시간 포함) - 제공주기 및 회당시간: 주 2회(월 8회 / ⓐ+ⓑ)
	 ● 서비스 내용: 1. 마루운동서비스 ③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 기본: 유연성 및 근력 운동, 협동형 운동, 평형성 향상 운동 - 안전교육 실시, 제공기록지 기재, 교육자료 보관 ⑤ 건강상태 상담 및 건강교육 - 체성분 검사와 기초체력 측정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에 대한 상담 - 어르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관련한 교육 실시 ⓒ 발표회 또는 경연 - 실버로빅 등 제공 서비스에 대한 발표회 또는 경연 실시
	2. 수중운동서비스 ③ 수중운동 및 건강지원프로그램 - 기본: 수중건기, 아쿠아로빅 등 수중운동을 통해 근력 강화, 관절기동성 및 심폐기능 항상 지원 - 안전교육 실시, 제공기록지 기재, 교육자료 보관 ⑤ 건강 및 영양교육 - 체성분 검사와 기초체력 측정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건강상담(설문활용)을 실시하고 개인별특성에 맞는 식생활 및 생활패턴 개선 지도 ※ 제공기관에서는 마루운동과 수중운동 중 선택하여 운영 가능
	● 집단 규모: 1~25인

항 목	내용							
효과성 검 증	 ● 대상 및 시점: 전수조사(이용자 전원) / 서비스 제공 전, 후 ● 도구: 본 지침 사업별 효과성 검증 도구 p 84참고 ● 측정 결과 제출: 시·군·구 요청 시 							
	 ● 사업 개시: 2014년 2월 시행 ('14년 구군사업 통·폐합, '17년 유사사업 통합) ● 연도별 사업 변경 연혁 							
	구 분	201	4년~	2017년~	2021년			
	사업명		맞춤형 방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내나이가 어때서)	노인건강 관리서비스			
	사업코드			050903				
	사업내용	ੀ	` 중	수중,	마루			
사업 연혁				형 운동처방서비스 (구·군사업 서(어르신 건강지원서비스) (시				
	구분	사업내용	사업내용 사업코드(2013년)					
	수중 4515(중구), 4579·(영도구),4580(부산진구),457 사업 ① 4564(북구), 4570(사하구),4564(사상구), 4581(
		마루	마루 4565(금정구·서구)					
	사업 ②	마루	마루 280203(광역)					
	※ 사업연혁에	명시되어 있는	코드는 동일한	한 사업으로 간주				

(080603)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항 목	내 용				
목 적	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서비스 대 상 (소득·연령 ·가구 특성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 만 60세 이상 (1962년(포함) 이전 출생자) [장애인 경우 연령 무관, 의료급여 연계자: 만 55세 이상(1967년(포함) 이전 출생자)] ● 가구 특성 ①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등(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제출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연령무관)로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등(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제출자 ③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포함) 제출, 연령 무관) ④ 구·군 통합사례관리사 추천자,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추천자,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추천자 ● 가구 특성 구비서류: 입증일(검사, 확인, 추천 등)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① 의사진단서(한의원가능)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등 ②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와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③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포함) ④ 추천서(통합사례관리사 추천자, 케어안내창구 추천자, 의료급여사례관리사)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 				
우선순위	● 우선순위: ① 구·군 통합사례관리사 추천자,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추천자 ②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추천자 ③ 국가유공자 ④ M코드 ⑤ G,l코드 ⑥ R81, E10~15 ⑦ 장애인 ※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 읍·면·동 확인 가능한 서류(③, ⑦ 미제출)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적용 권장기준: 제3장 사회서비스 신청 및 선정기준 p.111확인				
제공기관 등록	● 지원상담서비스(기관방문형: 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 (회당 이용정당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 안마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의료법」 제82조제3합에 의한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				
	제공인력 「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안마사 자격기준 ※ 특례: 기관장(안마사) 포함 1명				

항 목	내 용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월 168,000원 (수급자 월 159,600원)					
서비스 가격	구분		2022년 신	규 이용자		
	정부 지원금	월 151,200원 (회당 37,800원)	본인 부담금	월 16,800원 (회당 4,200원) 수급자 : 월 8,400원 (회당 2,100원)		
및 경제이되	구분	2021년 기존	이용자 월 160,0	00원 (수급자 월 152,000원)		
결제원칙 -	정부 지원금	월 144,000원 (회당 36,000원)	본인 부담금	월 16,000원 (회당 4,000원) 수급자 : 월 8,000원 (회당 2,000원)		
	※ 초기상담● 결제원칙:	시 수급자여부 제공기관에서 회당 결제방식	학인			
지원기간 및 재판정사업	 ● 지원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 가능 (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 따라 구·군이 결정) 					
서비스 내 용	 ● 제공주기 및 회당시간: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서비스 내용: ③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 기타 자극요 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제공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체형교정 등 개인맞춤형 안마서비스 * 수기 안마 외 기타 기구 사용할 경우 시간은 회당 15분 내로 제한 * 안마원, 안마시술소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해당 ● 집단 규모: 1인 					
효과성 검 증	 ● 대상 및 시점: 전수조사(이용자 전원) / 서비스 제공 후 ● 도구: 본 지침 사업별 효과성 검증 도구 p84 참고 ● 측정 결과 제출: 시·군·구 요청 시 					
사업 연혁	 ● 사업 개시: 2013년 2월 시행 ('13년 구·군사업 통·폐합) ● 연도별 사업 변경 연혁 구 분 2013년 2014 ~ 2021년 사업코드 4578 080603 ※ 2013년 이전 동일 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구·군사업) 구분 사업코드 사업코드 4573(금정구), 4574(기장군), 4572(영도구), 4542(중구), 					
	사업코드 ※ 사업연혁0		배운대구·동래구	2·사상구·수영구·남구·연제구)		



(070101)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항 목	내용		
목 적	장애아동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지원		
서비스 대상 (소득·연령 ·가구 특성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소득: 제한 없음 ※ 등급별 소득기준 상이(하단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참고) ● 연령: 만 24세 이하(1998년(포함) 이후 출생자) ● 가구 특성: ①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② 착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 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 가구 특성 구비서류: 입증일(검사, 확인, 추천 등)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①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포함) ② 의사진단서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 		
우선순위	 ● 우선순위: ① 장애등급 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순) ② 소득기준(저소득 순) ※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 읍·면·동 확인 가능한 서류(①, ② 미제출)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적용 권장기준: 제3장 신청 및 선정기준 p.111 확인 		
	서비스 유형 ● 재가방문서비스(재가방문형: 제공인력이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 ● 시설기준(신규·기존 공통):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제공기관 등록	①「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장애인복지법」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② 장애인 재활공학, 보조공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2.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지원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3.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지원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항 목	내 용					
	◉ 서비스 기	· 구(정부지원금 + 본인부	남금): 월 120,000원(변	·기별 720,000원)		
			2022년 기존·신규 이-	용자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등급별	소득기준	
서비스 가격	1등급	월 108,000원 (반기 648,000원)	월 12,000원 (반기 72,000원)	기초생활수	급자, 차상위	
및 결제원칙	2등급	월 96,000원 (반기 576,000원)	월 24,000원 (반기 144,000원)		140% 이하 중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	월 84,000원 (반기 504,000원)	월 36,000원 (반기 216,000원)	기준 중위소	득 140% 초과	
		l 2명 이상이 있는 기구의 월 결제 방식	경우 본인부담금 한등급	씩 하향 조정(3등급→	2등급, 2등급→1등급)	
지원기간 및 재판정사업	◉ 바우처 포	 ● 지원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6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치를 거쳐 5회 연장 가능 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구·군이 결정 				
서비스 내 용	 ● 제공주기 및 회당시간: 연중 렌탈 및 점검(정기점검 연 2회, 수시점검 제한 없음) ● 서비스 내용: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단, 건강보험공단 지원 대상 품목 제외) 점검 및 유지 보수 - 정기점검: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 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정기점검 외 점검 · 유지 보수(예: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상담 및 정보 제공 - 초기상담: 대상 아동의 장애 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치수 측정 등 수시상담: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연중 렌탈 및 점검 					
효과성 검 증	 ● 대상 및 시점: 전수조사(이용자 전원) / 연 2회 ● 도구: 본 지침 사업별 효과성 검증 도구 p84 참고 ● 측정 결과 제출: 시·군·구 요청 시 					
		: 2010년 2월 시행 업 변경 연혁				
사업 연혁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21년	
기비 보험	사업명	맞춤형 재활보	조기구 렌탈서비스	장애인 보조기	기 렌탈서비스	
	사업코드		070103	070	101	
	※ 사업연혁	에 명시되어 있는 코드는	등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			



'22년 폐지사업 (160203) 이동건강관리서비스

항 목	내 용				
목 적	경도 이상 비만 아동 및 저체중 아동들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비만으로 인한 질병 예방 등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				
서비스 대 상 (소득·연령 ·가구 특성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소득: 제한 없음 ※ 등급별 소득기준 상이 (하단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참고) ● 연령: 만 5세 ~ 12세 (2010년 ~ 2017년 출생자) ● 가구 특성 ① 과체중아동(비만도 120% 이상) 또는 저체중아동(비만도 85% 이하) ※ 본 지침 참고자료 중 가구 특성 확인 자료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체중도표] 참고 ② 연령 대비 표준 몸무게 또는 표준 키 미달자로 발달 지연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는 자※ 연령 대비 평균 체중 및 신장은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참조 ③ 체성분 분석 결과 표준범위 외의 자 ● 가구특성 구비서류: 입증일(검사,확인,추천등)로 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① 의료기관, 보건소, 학교보건교사의 비만도 확인자료(키, 몸무게 확인) ② 의사소견서 ③ 체성분 검사 결과지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 				
우선순위	※ 중복 이용 불가사업(서비스지원 기간 내 동시 신청 이용 불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 ● 우선순위: ① 의사소견서(발달지연) ② 비만율 높은 순 ③ 저체중 심각 수준 순 ④ 체성 분 분석 결과 표준범위 외의 자 ※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 읍·면·동 확인 가능한 서류(없음)				
제공기관 등록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적용 권장기준: 제3장 신청 및 선정기준 ● 지원상담서비스(기관방문형: 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사비스 유형 (시설기준) * 19년 2월 이전 등록제공기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 단, 시설 이전 시 신규등록기관 기준 적용 → 19년 2월 이후 신규등록기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49.5㎡(15평)이상 시설 O 운동서비스 제공인력 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른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종목은 동일하여야함 ② 체육학(무용학 포함)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자 또는 중등 체육 정교사 O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제공인력 ①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의한 초등, 중등 정교사				

항 목	내 용					
	②「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사, 간호사 ③「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의한 영양사 ④「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른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중등 체육 정교사로서 관련 분야(건강 또는 영양교육 관련)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 서비스 가격(정!	부지원금 + 본인부닫	금): 월 85,000원			
			2021년 기존 이성	용자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 = m.	등급별 소득기준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1등급	월 75,000원 (회당 9,375원)	월 10,000원 (회당 1,250원)	교육급여) 차성 차상위자 ²	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차상위(차상위본인부담경감, 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역확인), 한부모가족(한부모 및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2/167	2등급	월 65,000원 (회당 8,125원)	월 20,000원 (회당 2,500원)		소득 120% 이하 중 1등급이 아닌 자	
	3등급	월 57,000원 (회당 7,125원)	월 28,000원 (회당 3,500원)	기축	준중위소득 120% 초과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지원기간 및 재판정사업	 ● 지원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 사업 아님 ● 제공주기 및 회당시간: 주 2회(월 8회 / @+⑥), 회당 90분 					
서비스 내 용	 ③ 주 2회(월 7회), 회당 90분 (※ 1회 90분은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시간 포함) ⑤ 월 1회, 회당 90분 ※ 월 횟수: ③ 7회 + ⑥ 1회 진행 ⑥ 서비스 내용: ④ 맞춤형 운동처방, 지도 - 구기종목 등 유산소운동 - 안전교육 실시, 제공기록지 기재, 교육자료 보관 ⑥ 식생활 습관 교정지도 					
		, _ , , ,	협조 등의 자료(문사	너, 가정통신	문 등) 제공	
효과성 검 증	 합년 규모, 15인 이야 ● 대상 및 시점: 전수조사(이용자 전원) / 서비스 제공 전, 후 ● 도구: 본 지침 사업별 효과성 검증 도구 p84 참고 ● 측정 결과 제출: 시·군·구 요청 시 					
	● 사업 개시: 200● 연도별 사업 변					
사업 연혁	구	분	2013년		2014~2021년	
	사업	코드	4560		160203	

(120103) 동화야 놀~자(스토리텔링)

항 목	내 용					
목 적	아동의 어휘력 및 표현력을 길러 종합적인 인지능력을 향상하고 동화의 감수성과 정서순화를 통한 정서발달 지원, 색다른 감상의 경험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 극대화					
		은 중위소득 150% (소득기준 상이(하단 '		데원칙"참고)		
서비스 대 상 (소득·연령 ·가구 특성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가구 특성● 가구 특성	3세 ~ 만 7세(2015 : 해당 없음 구비서류: 해당 없음 관련 서류 필요 시	2	ζ [·)		
	※ 중복 이 발달 자	,	원 기간 내 동시 선	신청 이용 불가): 시청각장애인부모 자녀의 언어		
우선순위	 ● 우선순위: ① 한부모 ② 다문화 ③ 맞벌이 ④ 연령(고연령 순: 만 7세 ~ 만 3세) ※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 읍·면·동 확인 가능한 서류(①, ②, ④ 미제출-다문화경우 기본증명서로 주민센터 확인 가능)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적용 권장기준: 제3장 신청 및 선정기준 p.111 확인 					
	서비스 유형 (시설기준)	 ● 지원상담서비스(기관방문형: 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 (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제공기관 등록	제공인력 자격기준	(자격증 취득 후 경 ▶「자격기본법」제173	력만 인정)	1연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법에 해당		
	◎ 서비스 기	격 (정부지원금 + 본	(인부담금): 월 74,0	000원		
		ı	2022년 기존신	구 이용자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등급별 소득기준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1등급	월 64,000원 (회당 16,000원)	월 10,000원 (회당 2,500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차상위(차상위본인부 담경감,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격확인) 한부모가족(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2등급	월 54,000원 (회당 13,500원)	월 20,000원 (회당 5,000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이 아닌 자		
	3등급	월 44,000원 (회당 11,000원)	월 30,000원 (회당 7,500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 결제원칙: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항 목		내 용				
지원기간 및 재판정사업		 ● 지원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생성 ●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 사업 아님 				
서비스 내 용	 ● 제공주기 및 회당시간: 주 1회(월 4회 / 회당 50분) ● 서비스 내용: ③ 동화구연&연극 - 연령에 맞는 동화를 선택하여 구연, 행연(신체표현을 겸한 구연), 악연(음악 및 음률을 가미한 구연) 서비스 제공 - 인형, 그림, 막대, 완구, 손유희, 그림자 동화 등 연극 관람 및 참여, 역할극, 발표회 ● 집단 규모: 8인 이하 					
효과성 검 증	 ● 대상 및 시점: 전수조사(이용자 전원) / 서비스 제공 전, 후 ● 도구: 본 지침 사업별 효과성 검증 도구 p84 참고 ● 측정 결과 제출: 시·군·구 요청 시 					
	● 사업 개시: 2013년 2월 시행● 연도별 사업 변경 연혁					
사업 연혁	구분	2013년	2014~2021년			
	사업코드	4575	121013			
	※ 사업연혁에 명시되어 있는 코드	는 동일한 사업으로 :	간주			

(130103) 해양역사문화체험 0카데미

항 목		내 용				
목 적	지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아동의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및 창의성 증진					
서비스 대 상 (소득·연령 ·가구 특성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등급별 소득기준 상이(하단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참고) ● 연령: 만 7세 ~ 15세 (2007년 ~ 2015년 출생자 또는 초등학교 재학생~중학교 재학생) ● 가구 특성: 해당 없음 ● 가구특성 구비서류: 해당 없음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 					
우선순위	순: 만 15 ※ 가장 높은 - 다문회	[순위 : ① 한부모 ② 조손세대, ③ 다문화, ④ 다자녀(3인 이상) ⑤ 맞벌이, ⑥ 연령(고연령 만 15세 ~ 만 7세) 당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 읍·면·동 확인 가능한 서류(①, ②, ③, ④, ⑥ 미제출 다문화의 경우 기본증명서로 주민센터 확인 가능) '자 선정 우선순위 적용 권장기준: 제3장 신청 및 선정기준 p.111 확인				
	서비스 유형 (시설기준)	 ● 지원상담서비스(기관방문형: 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 '19년 2월 이전 등록제공기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 단, 시설 이전 시 신규등록기관 기준 적용 → '19년 2월 이후 신규등록기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9.6㎡(12평) 이상 시설 				
제공기관 등록	제공인력 자격기준	● 비전형성 프로그램 및 아동리더십 증진서비스 제공인력 ① 청소년상담사, 초·중등 및 유치원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 ②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 -1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역사학·사학과 등 관련 학과 전공자 로서「자격기본법」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③ -2 아동·청소년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자격기본법」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 라이프 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자격기본법」제17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이 이 법에 해당				

항 목		내 용					
		●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인력 ① 청소년지도사 ②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 전문학사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체험 분야 서비스제공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③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안전관리 관련한 자격증 또는 교육 수료증자(10시간 이상)에 한함					
	◉ 서비:	 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150,00	 0원		
			2022년 기존	는신규 이용자	등급별 소득기준	•	
	1등급			1인, 차상위자	교육급여), 차상우 격확인), 한부모기 한부모가족)		
	2등급				이하 중 1등급이		
	3등급	<u> </u>	<u> </u>)% 초과 ~ 150%	이하	
서비스 가격				존·신규 이용	자 서비스 가격		
및	등급	기본(270분)	정부지원금 체험(450분)	계(720분)	기본(270분)	본인부담금 체험(450분)	계(720분)
결제원칙	1등급	51,000원 (회당 17,000원)	84,000원	135,000원	5,100원 (회당 1,700원)	9,900원	15,000원
	2등급	45,000원 (회당 15,000원)	75,000원	120,000원	12,000원 (회당 4,000원)	18,000원	30,000원
	3등급	42,000원 (회당 14,000원)	68,000원	110,000원	15,000원 (회당 5,000원)	25,000원	40,000원
		450분)을 기본(270년 원칙: 회당 결제방식		경우 기본과정	정부지원금 결제 및	및 본인부담금 닡	'
지원기간 및 재판정사업	바우;	 ● 지원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 사업 아님 					
서비스 내용	③ 울 ⑤ 보 ◎ 서비: ③ ㅈ () ※ 역, ⑥ ㅈ	 ●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 사업 아님 ● 제공주기 및 회당시간: 주 1회(월 4회), @ 90분, ⓑ 450분 @ 월 3회(주 1회), 회당 90분 ⑥ 월 1회 회당 450분 ※ ⑥ 1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5회로 대체 가능(총 12개월 중 3개월만 대체 가능) ● 서비스 내용: @ 지역의 역사, 문화, 해양 관련 기본과정 - 지역의 역사, 문화, 해양이라는 3가지 주제로 사회성, 창의력, 리더십 증진을 위한 비전형성 (지역의 향토적 주제로 서비스 운영, 지역의 특성 반영) ※ 역사교육 위주의 서비스 제공 불가(역사, 문화, 해양 등의 다양한 주제로 서비스 운영) ⑥ 지역의 역사, 문화, 해양 채험 - 지역의 역사, 문화, 해양 관련한 유적지, 박물관, 기념관 체험 및 부산의 인물, 스포츠, 문화 체험 제공 					

항 목		내 용				
	 ※ 지역: 부산·울산·김해·양산·경주 ※ 체험활동 시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 체험활동의 경우 서비스 전체 시간 중 안전교육을 일정 시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제공기록 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함 ③ 집단 규모: ② 1~12인, ⑤ 인솔자 1인당 이용자 12인 이하 					
효과성 검 증	 ● 대상 및 시점: 전수조사(이용자 전원) / 서비스 제공 전, 후 ● 도구: 본 지침 사업별 효과성 검증 도구 p84 참고 ● 측정 결과 제출: 시·군·구 요청 시 					
	● 사업 개시 : 2009년 4월 시행● 연도별 사업 변경 연혁					
사업 연혁	구분 2013년 2014~2021년					
	사업코드 4537 130103					
	※ 사업연혁에 명시되어 있는 코드	는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				

〈체험을 기본으로 100% 전환 시 회당 결제금액〉 ※ 코로나19 종결 시까지 적용

등급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계
1등급	@기본 : 월 8회, 회당 90분	16,875원	1,875원	18,750원
	@기본 : 월 4회, 회당 180분	33,750원	3,750원	37,500원
2등급	@기본 : 월 8회, 회당 90분	15,000원	3,750원	18,750원
	@기본 : 월 4회, 회당 180분	30,000원	7,500원	37,500원
3등급	@기본 : 월 8회, 회당 90분	13,750원	5,000원	18,750원
	@기본 : 월 4회, 회당 180분	27,500원	10,000원	37,500원



Ⅱ. 구군 개발 사업

상담

- 01_ (170303) 부모-자녀 상호작용증진서비스(서구, 남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
- 02_ (090203) 1인가구 중장년층의 신체정신건강통합서비스(부산진구, 연제구) ('22년 폐지사업)
- 03_ (991603) 청년심리지원서비스(동래구) ('22년 폐지사업)

돌봄

- 04_ (991503) 식사영양지원서비스(부산진구)
- 05_ (991403) 일상생활지원서비스(부산진구, 북구)

재활

06_ (280303) 행복한 중년 건강관리서비스(영도구)

역량강화

- 07_ (130803) 이바구놀이터(동구)
- 08_ (130703) 아동놀이활동 지원서비스(남구)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주요변경사항(구군)

HOIR	변경	변경 내역		
사업명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모-자녀 상호작용 시행 증진 구군구 서비스		서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서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북구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또는 통합돌봄대상자	
1인가구 중장년층의 신체정신건강 통합서비스		19년 개발 및 시행(부산진구, 연제구)	사업페지	
청년심리지원 서비스		'21년 보건복지부 공모시범사업(동래구)	사업폐지 청년마음건강신규사업(시도사업)전환 운영	
아동놀이활동지원 서비스		_	<u>'23년 해양역사문화체험아카데미와 통합하여</u>	
이바구늘	돌이터	_	<u>운영</u>	



(170303)

부모-재념상호작용증진서비스(서구,남구,북구,연제구,수영구)

항 목		내 용			
목 적		가정의 유아 아동과 부모(조부모)를 대상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과 부모(조부모) 간의 상호 교감과 유대감을 형성 지원하여 가정의 가족기능을 강화한다.			
서비스 대 상 (소득·연령 ·가구 특성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등급별 ● 연령: - 단 - 1 ● 가구 특성 ※ 중복 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등급별 소득기준 상이(하단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참고) ● 연령: - 만 3세 ~ 만 7세 (2015년~2019년 출생자) 13개월 ~ 24개월 영아의 보호자 ● 가구 특성: 해당 없음 ※ 중복 이용 불가사업(서비스지원 기간 내 동시 신청 이용 불가): 발달재활서비스, 여성가 족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우선순위	※ 가장 높은	 ● 우선순위: ① 한부모 ② 조손세대 ③ 13개월~24개월 영아의 보호자 ④ 저연령 순(만 3세 ~ 만 7세) ※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 읍·면·동 확인 가능한 서류(①, ②, ③, ④ 미제출)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적용 권장기준: 제3장 신청 및 선정기준 p.111 확인 			
	서비스 유형 (시설기준)	 ● 지원상담서비스(기관방문형: 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 '19년 2월 이전 등록제공기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 단, 시설 이전 시 신규등록기관 기준 적용 → '19년 2월 이후 신규등록기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9.6㎡(12평)이상 시설 			
제공기관 등록	제공인력 자격기준				

항 목	내 용				
	◉ 서비스 기	격(정부지 원금+ 본인부담	금): (1·2·3등급) 월 18	0,000원, (4등급) 월 200,000원	
			2022년 기존·신규 ㅇ	l용자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등급별 소득기준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1등급	월 160,000원 (회당 40,000원)	월 20,000원 (회당 5,000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자상위(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한부모가족(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21127	2등급	월 150,000원 (회당 37,500원)	월 30,000원 (회당 7,500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이 아닌 자	
	3등급	월 140,000원 (회당 35,000원)	월 40,000원 (회당 10,000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4등급	월 170,000원 (회당 42,500원)	월 30,000원 (회당 7,500원)	자녀가 13개월 ~ 24개월인 보호자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지원기간 및 재판정사업	 지원기간: 12개월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생성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 없음 				
서비스 내 용	 ● 제공주기 및 회당시간: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아동발달 및 상호작용증진 프로그램 및 RT중재서비스 ● 서비스 내용: 1. 아동발달 및 가족 상호작용증진 프로그램 및 RT중재서비스 - (조)부모+(손)자녀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놀이 활동 프로그램(미술, 음악, 요리, 각종 교구 활용한 놀이프로그램) 				
	2. 영아 기본생활,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정서 영역발달지원서비스 - 자녀의 인지, 의사소통, 언어발달, 사회-정서적 발달 가능한 활동프로그램				
	● 집단 규모 - 1:6(부모 + 자녀: 13개월 ~ 24개월) - 1:12(부모 + 자녀: 만 3세 ~ 만 7세)				
효과성 검 증	● 측정도구:1. 부모-자녀 상호작용척도2. 부모효능감 척도, 부모양육스트레스 척도				
사업 연혁	◉ 사업 개시	: 2017년 7월 시행			



상담 2 1인가구 중장년층의 신체정신건강 통합서비스(부산진구, 연제구)

항 목		내 용			
목 적	1인가구 중 만 40세 ~ 64세 저소득·취약계층 중장년층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통합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자 함				
서비스 대 상 (소득·연령 ·가구 특성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연령: 만 4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연령: 만 40세 ~ 만 64세(1958년~1982년 출생자) ● 가구 특성: ① 1인가구 중 공공·민간기관 추천자 ② 본인 직접 신청 ※ 주민등록등본 상 한부모 신청 가능 			
우선순위		● 우선순위: ① 다복동 플러스센터, 구·군 사례관리사 등 공공전달체계에 의해 추천 받은 자 ② 등록된 제공기관 등 민간전달체계에 의해 추천을 받은 자 ③ 그 외의 자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적용 권장기준: 제3장 신청 및 선정기준 p.111 확인			
	서비스 유형 (시설기준)	 ● 지원상담서비스(기관방문형: 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시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 (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제공기관 등록	제공인력 자격기준	① 신체건강 자격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 중등 정교사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사, 간호사 ② 정신건강 자격기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한 임상심리사 - 심리상담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관련 경력 1년인 자 - 심리상담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관련 경력 3년인 자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관련 경력 5년인 자 ③ 사회참여자원 자격기준 - 「사회복자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자사 - 음악·미술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항 목	내 용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u>월 160,000원</u>					
	2021년 기존 이용자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등급별 소득기준					
세비스 가격 및	월 152,000원 ⓐ 회당 19,000원 ⓑ 회당 38,000원 ⓑ 회당 38,000원 ② 화당 2,000원 ② 화당 2,000원 ② 화당 2,000원 ② 화당 2,000원 ② 화당 2,000원 ○ 화당 2,000원 ○ 화당 2,000원					
결제원칙	월 144,000원 2등급 월 144,000원 ⓐ 회당 18,000원 ⓑ 회당 36,000원 월 16,000원 ⓐ 회당 2,000원 ⓑ 회당 8,000원					
	월 136,000원 3등급 월 136,000원 ⓐ 회당 17,000원 ⑥ 회당 34,000원 ⑤ 회당 34,000원					
지원기간 및 재판정사업	 ● 지원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생성 ●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 없음 					
서비스 내 용	 ● 제공주기 및 회당시간: 최소 월 4회 이상 ⑥ 주 1회(월 4회) 회당 120분, 주 2회(월 8회) 회당 60분 ⑥ 1:1 주 1회, 회당 60분, 1:2 이상 주 1회 회당 90분 ● 서비스 내용: ⑥ 신체건강서비스 및 사회참여지원서비스 질병 예방, 건강관리서비스(밴드운동, 볼 운동) 기초체력향상서비스 자세교정 지원 식습관 개선 지원(요리프로그램, 영양교육 등) 문화여가 체험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연극, 동화극 자립 지원, 자기개발프로그램, 독서지원프로그램 ⑤ 정신건강서비스 1:1 개별상담 또는 집단상담(음악 등 매개) 웃음치료 스트레스 힐링 교육 레크리에이션 ⑥ 집단 규모: 1:10 					
효과성 검 증	● 측정도구: 1. 자아존중감 척도 또는 사회적 고립감 척도					
사업 연혁	◉ 사업 개시: 2019년 3월 시행					



'22년 폐지사업 (991603) 청년심리지원서비스(동래구)

항 목	내용				
목 적	경제 불황과 취업난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현실회피와 우울, 심리적·정서적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 대인관계 향상 등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서비스 대 상 (소득·연령· 가구 특성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연령: 만	 ● 소득: 제한 없음 ● 연령: 만 19 ~ 34세 (1988년 ~ 2003년 출생자) ● 가구 특성: 해당 없음 			
우선순위	② 의사 전 ③ 신규 선	● 우선순위 ① 공공전달체계(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 연계자 ②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정신보건전문요원의 소견서가 있는 자 ③ 신규 신청자 ④ 고연령 순			
제공기관 등록	서비스 유형 (시설기준)	◉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 의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시IO/ ID	제공인력 자격기준	① 상담관련 분야(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대학 졸업 후 관련 기관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 이상인 자 ②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 서비스 기	격(정부지원금 + 본연	인부담금): 월 200,000	원	
			2021년 기존 (이용자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등급별 소득기준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1등급	월 180,000원 (회당 45,000원)	월 20,000원 (회당 5,000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한부모가족(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2등급	월 170,000원 (회당 42,500원)	월 30,000원 (회당 7,500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이 아닌 자	
	3등급	월 160,000원 (회당 40,000원)	월 40,000원 (회당 10,000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항 목	내 용
지원기간 및 재판정사업	 ● 지원기간: 6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생성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 가능 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구에서 결정
서비스 내 용	 제공주기 및 회당시간: 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서비스 내용: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①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②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집단 규모: 1:1 원칙
효과성 검 증	 ● 대상 및 시점: 전수조사(이용자 전원) / 서비스 제공 전, 후 ● 도구: 심리수준(우울, 불안, 자존감 및 사회성 향상 등) 관련 척도 ▶ MMPI-2, HTP, FD, SCT, BDI, STAli, PTSD 척도 검사 등 ● 측정 결과 제출: 시·군·구 요청 시
사업 연혁	◉ 사업 개시: 2021년 5월 시행



(991503) 식사영양관리서비스(부산진구)

항 목	내용			
목 적	고령, 만성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자(노인)가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 유지 및 영양상태 개선하여 건강한 자립생활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대상 (소득·연령 ·가구특성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	 ● 소득: 제한 없음 ※ 등급별 소득기준 상이(하단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참고) ● 연령: 만 65세 이상(1957년(포함) 이전 출생자) ● 가구 특성: 거동불편,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유지가 어려우며, 돌봐줄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여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 			
우선순위	● 우선순위 : ① 통합돌봄 정책대상 중 돌봄주택(공유주택, 노인돌봄주택, 중간시설) 거주자 ② 요양병원(시설)에서 퇴원(퇴소)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한 대상 ③ 수술ㆍ입원 후 퇴원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대상 ④ 낙상관리 및 다제약제관리가 필요한 대상 ⑤ 70세 이상 노인 중 돌봄시각자대에 있는자,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등급의 대상 통합돌봄 정책 대상 유형 장기입원군: 요양병원(시설)에서 퇴원(퇴소)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한 대상 되원기 이행군: 수술ㆍ입원 후 퇴원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대상 집중건강관리군: 낙상관리 및 다제약제관리가 필요한 대상 고위험 선제개입군: 70세 이상의 장애인ㆍ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4~5 등급 및 등급 외 대상 ※ 1순위는 돌봄주택 거주자, 2순위 ~ 5순위는 돌봄주택 미거주자로 우선순위 구분 ● 통합돌봄 정책 대상 유형 및 돌봄주택 거주 유무에 따라 통합돌봄창구 담당자를 통한 우선순위 판정			
제공기관 등록	지비스 유형 (시설기준) ● <mark>혼합형(재가방문서비스+기관방문서비스)</mark> ●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12호의 집단급식소로서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 ① (필수인력)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임상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 또는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2.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3.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② (그 외 제공인력)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사・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조리사 등 필요인력			

항 목	내 용				
	● 서비스 기	격(정부지원금 + 본인부			
	등급	정부지원금	2022년 신규 본인부담금	이용자 등급별 소득	기즈
	1등급	월 160,000원	월 40,000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부담경감
	2등급	월 140,000원	월 60,000원	カススの人口 160	% 이하 중
세 가격	3등급	월 100,000원	월 100,000원	년 기 준중 위소득 160%	5 초과인 자
및	※ 가정배달 이용 시 배송료를 징구할 수 있음				
결제원칙			2021년 기존	_ · - · ·	2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등급별 소득	
	1등급	월 180,000원 (회당 7,200원)	월 20,000원 (회당 800원)	사상위활 차상위장에 한말고(환말고) 조선독	자상위자격확인) 청년한[코7 주
	2등급	월 160,000원 (회당 6,400원)	월 40,000원 (회당 1,600원	<u>-</u>]) 1등급이 아닌	· 가
	3등급	월 140,000원 (회당 5,600원)	월 60,000원 (회당 2,400원	기준중위소득 120 160% 이행	% 초과 ~ 하
	● 결제원칙:	월 결제 방식			
지원기간 및 재판정사업		인트 생성주기: 1개월미		대자수및 재정상황에 따라구;	<u>구</u> 이 결정
서비스내용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산형 절차를 거쳐 1회 연장 가능. 단. 대가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구군이 결정 ● 제공주기 및 회당시간: 주 6회(월 24회), 1식+간식 2회(60분): 식사 지원 월 1회(상시): 영양관리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식사 지원 : 사전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식사 제공 종류 구성 형태 및 주의 사항 제공 유형 임난식 대양한 식품군 구성 반찬의 크기, 익힘 정도 당뇨식, 만성신부전식, 연하장애식 지료식 등 질환이 확인되고 식사요법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경우 약물로 인한 금지 식품 오시락 배달 약물로 인한 금지 식품 2. 영양관리 서비스 - 사전검사에 근거한 식사 제공 및 모니터링, 영양상담 및 교육, 타 분야 연계 프로그램 실시 영양 판정 ● 영양 진단 ● 영양 중재 ● 모니터링 및 평가 - 영양 중재 내용 				
효과성		품 다양성 및 빈도 판정	도구		
검 증		의 질 판정 도구	•		
사업 연혁	● 사업 개시	: 2020년 7월 시행			



(991403) 일상생활지원서비스(부산진구,북구)

항 목		내 용		
목 적	1. 고령화 등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통합돌봄 대상자(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대상자)가 방문 가 사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립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2. 기존 유사 재가방문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계층(장기요양급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을 대상으 로 서비스 이용의 공백을 해결하여 서비스 차별성과 보충성을 보완함			
서비스 대 상 (소득·연령 ·가구 특성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연령: 만 (● 가구 특성① 의료급여② (구·군)통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통합돌봄대상자 ● 연령: 만 65세 이상(1957년(포함) 이전 출생자) ● 가구 특성: ①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추천자 ② (구·군)통합사례관리사 및 (읍·면·동)케어안내창구 추천자 ③ 사회복지관장 및 제공기관장 추천자 		
우선순위		● 우선순위: ①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추천자 ② (구군)통합사례관리사 및 (읍·면·동)케어안내 창구 추천자 ③ 사회복지관장 및 제공기관장 추천자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적용 권장기준: 제3장 신청 및 선정기준 p.111 확인		
	서비스 유형 (시설기준)	 ● 재가방문서비스 (재가방문형 : 제공인력이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 원칙 ● 시설기준(신규·기존 공통):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제공기관 등록	(1)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단, 지역적 특성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구인이 어려운 경우「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이버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과 시·군·구청장의 지도 감독 하에 다음 인력을 제공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음 (2)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40시간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 10시간을 수행한 자 (3)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취업·직업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기사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기관의 현장실습 10시간을 수행한 자 (4)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등록 시 인력기준에 미포함)			

항 목	내 용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300,000원(시간당 15,000원)						
	2022년 기존·신규 이용자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월 280,000원 (시간당 14,000)	본인부담금	월 20,000원 (시간당 1,000원)			
결제원칙	※ 제공시간이 15분	I소 30분 단위로 서비스 제공 이상 45분 미만일 경우 ▶ 이상일 경우 ▶ 1시간으로 (제방식	30분으로 산정,				
지원기간 및 재판정사업	 지원기간: 12개월 바우처 포인트 생 재판정 사업 여부	성주기: 1개월마다 생성					
세비스 내 용	● 재관정 사업 여부: 해당 없음 ● 제공주기 및 회당시간: 월 최대 10회, 회당 120분 • 가사 지원: 월 최대 10회 이용 가능 ※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서비스 내용: 가사·일상 지원, 신변·활동 지원: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식사 도움, 설거지, 세면 도움,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등 ※ 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와 동시간에 이용 불가 ● 근태관리 플랫폼: '22년 의무도입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록 제공기관 및 활동 제공인력 플랫폼 의무 사용 - 플랫폼 구성: ① 제공기관 사용 웹(관리자), ② 제공인력 사용 앱(어플) ① 웹: 제공인력 출·퇴근 확인 및 관리, ② 앱: 서비스 시작·종료 시 출·퇴근 인증 ※ 사용방법: 플랫폼 사용 영상 참조(부산지원단 홈페이지 게제) ※ 플랫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지침 p.152 참조 ※ 부산시 및 구·군, 지원단: 현장점검 시 플랫폼 사용 및 활용 내역 확인						
효과성 검 증	● 측정도구:1. 일상생활능력 (ADL) 또는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IADL)						
사업 연혁	사업 개시: 2019	년 7월 시행					



(280303) 행복한 중년 건강관리서비스(영도구)

항 목		내 용				
목 적		대사증후군 5개 항목 위험요인(혈압, 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복부비만)이 있는 중년을 대상으로 운동 및 식생활 개선교육, 정신건강 지원을 통한 신체 및 정신건강 기능 향상				
서비스		중위소득 150% 이하 는득기준 상이(하단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참고)				
대 상 (소득·연령	◉ 연령: 만 40	0세 ~ 만 64세(1958년~1982년 출생자)				
·기구 특성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의사진단시	● 가구 특성: ①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5개 항목(혈압, 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비만) 중 2개 항목 이상인 자로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또는 직장 건강검진 결과표에 확인이 되는 자 ② 국민체육센터, 마을건강센터, 제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체성분 측정 결과 표준범위 외의 자				
우선순위	: ※ 가장 높은 유	● 우선순위: ① 1인가구 ② 대사증후군 항목 2개 이상 보유자 ③ 마을건강센터, 국민체육센터의 체성분 측정 결과 제출자 ④ 제공기관의 체성분 측정 결과 제출자 ※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 읍·면·동 확인 가능한 서류(① 미제출)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적용 권장기준: 제3장 사회서비스 신청 및 선정기준 p.111 확인				
	서비스 유형 (시설기준)	 ● 지원상담서비스(기관방문형: 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 '19년 2월 이전 등록제공기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 단, 시설 이전 시 신규등록기관 기준 적용 → '19년 2월 이후 신규등록기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66.1㎡(20평) 이상 시설 				
제공기관 등록	제공인력 자격기준 ³	1. 신체건강서비스 ①「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 종목은 동일하거나, 또는 해당 운동 경력 2년 이상인 자 ②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자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중등 체육 정교사 2. 정서함양프로그램 ─「자격기본법」제17조에 의한 웃음치료사, 레크리에이션지도자 등 세부 프로그램 관련 자격 중 소지자로서 해당 관련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3.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①「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의한 초등, 중등 정교사 ②「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사, 간호사 ③「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의한 영양사 ④「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또는 중등 체육 정교사로서 관련 분야(건강 및 영양교육 관련)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자격기본법」제17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이 이 법에 해당				

항 목			내	요 응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100,000원					
			2022년 기존·신	l규 이용자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등급별 소득기준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1등급	월 90,000원	월 10,000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한부모가족(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2등급	월 80,000원	월 20,000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이 아닌 자		
	3등급	월 70,000원	월 30,000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 결제원칙	: 회당 결제방식				
지원기간 및 재판정사업		: 12개월 또인트 생성주기: 1기 사업 여부: 해당 없음				
서비스 내 용	· 월 6~7 · 월 1~2 ※ 기준 (단, · 분기 1호 · 연 1회: ● 서비스 □ 1. 신체건(2) 2. 정서함(3) 3. 건강교(4) 4. 안전교(5) 4. 안전교(5) 4. 안전교(5) (화재, ※ 안전 (제) ※ 서비	회: 신체건강프로그램회: 정서함양프로그램 한의 특성과 이용자의 반드시 월 1회~2회회: 건강교육 및 상담 안전교육 생프로그램 - 운동을 양프로그램 - 치료레 육 및 상담 - 식생활 육 - 서비스 제공현정 지진, 응급·재난상황 선교육 연 1회 반드시 공기록지 내 안전교육	역구에 따라 신체건 나에서 정서함양 프 통한 신체교정 운동 크리에이션, 음악치료 습관교육, 생활맞춤운 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등) 실시, 안전교육 실시 당실시함을 확인할 수	강 및 정서함양 프로그램 횟수 조정 가능 로그램은 실시) , 기초체력향상 및 유산소 운동, 신체활동 , 웃음치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요법 등 운동처방 검사 는 사고 관련한 예방교육 시 후 서비스 비용 결제 가능		
효과성 검 증	● 측정도구:1. 신체건강: 인바디 검사(체성분 분석기), 건강검진2. 우울증: BDI					
사업 연혁	◉ 사업 개	시: 2017년 7월 시행	}			

항 목			내 용			
목 적	놀이시간이 부족한 아동에 대하여 놀이 소개·놀이 기회 제공·놀이 활동 유도 등 놀이 활동 지원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서비스 대 상 (소득·연령· 가구 특성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소득: 해당 없음 ※ 등급별 소득기준 상이(하단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참고) ● 연령: 만 6세 ~ 만 12세 (2010년~2016년 출생자) ※ 놀이 활동이 필요한 아동 ● 가구 특성: 해당 없음 ※ 중복 이용 불가사업(서비스지원 기간 내 동시 신청 이용 불가) 					
우선순위	● 우선순위:	해당 없음				
제공기관 등록	서비스 유형 (시설기준)	● 활동보조서비스 및 지원 성●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표	===	66.1㎡(20평) 이상 시설		
세당/번 등록	제공인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최한 놀이 활동가 자격기준 양성교육(6시간 이상) 수료자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130,000원					
	2022년 기존·신규 이용자					
세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등급별 소득기준		
및 결제원칙	1등급	월117,000원 (회당 117,000원)	월13,000원 (회당 13,000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7127	2등급	월104,000원 (회당 104,000원)	월26,000원 (회당 26,000원)	1등급이 아닌 자		
	● 결제원칙: 월 결제 방식					
지원기간 및 재판정사업	 ● 지원기간: 6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생성 ● 재판정 사업 여부: 1회 					
서비스 내 용	 ● 제공주기 및 회당시간: 월 1회(480분) ● 제공방식: 대면서비스 및 비대면서비스 혼합 제공 가능 					

항 목	내 용
	 ● 서비스 내용 1. 대면형: 이바구놀이캠프 아동이 직접 만드는 놀이로 주체적으로 놀이활동에 참여하는 놀이 캠프 2. 비대면형: 놀이 KIT 제공 및 활용 아동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으로 놀이를 구성하여 주체적으로 놀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감으로 구성한 놀이 키트 지원 ※ 매월 대면·비대면 서비스 제공 계획(장소·내용 등)을 등록지 구군에 보고해야 함 ※ 신규사업 인큐베이팅을 위해 1인 2바우처 한시적 허용('21년 12월) ※ 23년 해양역사문화체험아카데미와 통합하여 운영 ⑤ 집단 규모: 대면형 1:20 이하, 비대면형: 1인
효과성 검 증	1. (6개월 이용 아동) 서비스 제공 전, 후 비교 2. 사업 기간 중 제공인력으로 등록된 인력 수 3. 제공기관에서 해당 시점에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시업 연혁	● 사업 개시: 2020년 7월 시행

항 목	내 용						
목 적	놀이활동을 통	놀이활동을 통한 관계 형성, 즐거움 경험, 놀이 발견으로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 정서적 발달 지원					
서비스 대 상 (소득·연령 ·가구 특성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등급별 2 ● 연령: 만 6 ● 가구 특성:	 ● 소득: 해당 없음 ※ 등급별 소득기준 상이(하단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참고) ● 연령: 만 6세 ~ 만 12세 (2010년~2016년 출생자) ● 가구 특성: 해당 없음 ※ 중복 이용 불가사업(서비스지원 기간 내 동시 신청 이용 불가) 					
우선순위	● 우선순위:	해당 6	었음				
제공기관 등록	서비스 유형 (시설기준)	유형 ●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					
	제공인력 자격기준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200,000원						
			2022\	년 기존·신규 이용자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등급별 소득기준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1등급		월 180,000원 (회당 22,500원)	월 20,000원 (회당 2,500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한부모가족(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2등급		월 160,000원 (회당 20,000원)	월 40,000원 (회당 5,000원)	1등급이 아닌 자		
	◉ 결제원칙:	회당 김	결제방식				
지원기간 및 재판정시업	 ○ 지원기간: 6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생성 ○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 없음 						

항 목	내 용
	● 제공주기 및 회당시간: 주 2회(월 8회), 회당 100분※ ②~ⓒ 서비스 중 ⑤와 ③, ⓒ 택 1, 총 2가지 이용
서비스 내 용	 ● 서비스 내용: ② 즐거움이 남구, 놀이탐험 - 도보 5분 내외의 반경 기준 골목(마을), 부산박물관, 문화회관, 평화공원 등 특정 장소에서 단계 별 미션 형식의 놀이체험활동 - 관계 형성, 신체놀이 중심 ⑤ 놀라움이 남구, 똑!똑! 놀이페스티벌 - 책놀이, 수공예, 한복공예, 라탄공예, 한식디저트, 목공예 등 6가지 체험활동 - 체험활동 경험을 토대로 아동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놀이페스티벌 참여 ⑥ 놀이가 남구, 맘껏 놀~자 - 안전한 공간에서 놀이큐레이터의 보호 아래 단·복수의 신체적 놀이체험활동 ※ ②~ⓒ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장소: 남구 전역. 단, 3개월 주기로 서비스 제공계획(서비스 제공 내용 및 제공 장소)을 등록지 구·군에 반드시 보고 및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 ※ 상해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또는 여행자 보험 등 이용자 안전관리를 위한 보험가입 필수 ※ 체험활동의 경우 서비스 전체 시간 중 안전교육을 일정 시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제공기록지
	※ 제임들당의 당구 시비스 전체 시한 당 한편교육을 들당 시한 물지에야 하며, 이를 제공기록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함 ※ 23년 해양역사문화체험이카데미와 통합하여 운영 ● 집단 규모: 15인 이하
효과성 검 증	1. 설문조사 2. (제공기관 총 매출액- 바우처 지원 이용자 구매액)/제공기관 총 매출액 3. 사업 기간 중 신규 고용 인력 수
사업 연혁	◉ 사업 개시: 2020년 7월 시행



Ⅲ. 서비스별 가구 특성 확인 자료

- 0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02 적용 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 03_ 사회서비스 이용 추천서(서식)
- 04 사회서비스별 가구 특성 예시본
 - 1)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발달관련 (K-DST, K-CDRII, DEP, K-ASQ)
 - 2)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와 아동정서 발달지원서비스 (K-CYP, CBCL, KPRC, 기타(SELSI, PRES, REVT, U-TAP, 텐버발달검사, Sensory profile))
 - 3) 노인건강관리서비스 체성분 분석결과 절단점
 - 4) 노인건강관리서비스 노인기초체력검사 절단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2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원

1 기준중위소득 65%

가구원수	人口コス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구현구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119,000	74,447	23,682	75,079
3인	2,727,000	95,330	62,567	96,204
4인	3,329,000	116,785	106,459	118,045
5인	3,916,000	137,178	129,070	138,878
6인	4,490,000	157,050	156,445	158,787
7인	5,057,000	177,454	184,453	180,075
8인	5,625,000	196,955	208,798	200,004
9인	6,193,000	219,871	238,263	223,722
10인	6,761,000	240,332	263,638	244,759

2 기준중위소득 7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구현구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282,000	79,783	31,047	80,371
3인	2,936,000	102,842	77,067	103,945
4인	3,585,000	126,039	120,425	127,461
5인	4,217,000	147,798	144,703	149,666
6인	4,835,000	169,210	172,486	171,393
7인	5,446,000	191,124	201,464	193,882
8인	6,058,000	212,712	229,170	216,279
9인	6,669,000	235,821	258,283	240,332
10인	7,281,000	254,658	281,796	260,234

3 기준중위소득 80%

기구이스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608,000	91,563	54,782	92,499	
3인	3,356,000	118,045	109,394	119,032	
4인	4,097,000	144,572	140,095	146,207	
5인	4,820,000	169,210	172,486	171,393	
6인	5,526,000	193,882	205,006	196,955	
7인	6,224,000	219,871	238,263	223,722	
8인	6,923,000	244,759	269,412	249,469	
9인	7,622,000	272,614	303,435	279,532	
10인	8,321,000	296,681	330,939	307,505	

4 기준중위소득 90%

기구이스	ᄼᆮᆁᄌ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34,000	102,842	77,067	103,945	
3인	3,775,000	132,848	122,504	134,295	
4인	4,609,000	162,889	164,438	164,811	
5인	5,422,000	191,124	201,464	193,882	
6인	6,216,000	219,871	238,263	223,722	
7인	7,003,000	244,759	269,412	249,469	
8인	7,789,000	272,614	303,435	279,532	
9인	8,575,000	307,505	342,082	319,763	
10인	9,361,000	334,652	369,311	350,228	

5 기준중위소득 100%

기구이스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6 기준중위소득 110%

기구이스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586,000	126,039	120,425	127,461
3인	4,614,000	162,889	164,438	164,811
4인	5,633,000	196,955	208,798	200,004
5인	6,627,000	231,661	252,936	235,821
6인	7,598,000	266,083	295,553	272,614
7인	8,559,000	307,505	342,082	319,763
8인	9,520,000	334,652	369,311	350,228
9인	10,481,000	370,489	408,122	398,320
10인	11,441,000	434,898	472,366	473,200

7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
2인	3,912,000	137,178	129,070	138,878
3인	5,034,000	177,454	184,453	180,075
4인	6,145,000	216,279	233,478	219,871
5인	7,229,000	254,658	281,796	260,234
6인	8,288,000	296,681	330,939	307,505
7인	9,337,000	334,652	369,311	350,228
8인	10,385,000	370,489	408,122	398,320
9인	11,433,000	434,898	472,366	473,200
10인	12,482,000	473,200	511,899	511,709

8 기준중위소득 13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528,000	88,587	49,096	. –
2인	4,238,000	149,666	146,860	151,426
3인	5,453,000	191,124	201,464	193,882
4인	6,657,000	235,821	258,283	240,332
5인	7,832,000	279,532	311,917	287,535
6인	8,979,000	319,763	354,661	334,652
7인	10,115,000	370,489	408,122	398,320
8인	11,250,000	398,320	435,141	434,898
9인	12,386,000	434,898	472,366	473,200
10인	13,522,000	473,200	511,899	511,709

9 기준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723,000	95,330	62,567	-
2인	4,564,000	160,790	161,298	162,889
3인	5,873,000	206,291	220,611	209,473
4인	7,170,000	254,658	281,796	260,234
5인	8,434,000	296,681	330,939	307,505
6인	9,670,000	350,228	386,763	370,489
7인	10,893,000	398,320	435,141	434,898
8인	12,116,000	434,898	472,366	473,200
9인	13,339,000	473,200	511,899	511,709
10인	14,562,000	511,709	549,554	567,870

10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917,000	102,842	77,067	-
2인	4,890,000	171,393	175,541	173,710
3인	6,292,000	223,722	242,987	227,649
4인	7,682,000	272,614	303,435	279,532
5인	9,037,000	319,763	354,661	334,652
6인	10,361,000	370,489	408,122	398,320
7인	11,671,000	434,898	472,366	473,200
8인	12,981,000	473,200	511,899	511,709
9인	14,292,000	511,709	549,554	567,870
10인	15,602,000	567,870	602,760	663,895

11 기준중위소득 160%

기구이스	ᄼᆮᆁᄌ	7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3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12,000	109,507	93,071	. –
2인	5,216,000	182,739	190,860	185,461
3인	6,712,000	235,821	258,283	240,332
4인	8,194,000	287,535	320,986	296,681
5인	9,639,000	350,228	386,763	370,489
6인	11,051,000	398,320	435,141	434,898
7인	12,449,000	473,200	511,899	511,709
8인	13,847,000	511,709	549,554	567,870
9인	15,244,000	567,870	602,760	663,895
10인	16,642,000	663,895	684,512	850,979

12 기준중위소득 170%

기그이스	ᄼᆮᆁᄌ	건강보험료본인부담				
가구원수	소득기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06,000	115,672	104,481	-		
2인	5,542,000	193,882	205,006	196,955		
3인	7,131,000	249,469	275,458	254,658		
4인	8,706,000	307,505	342,082	319,763		
5인	10,242,000	370,489	408,122	398,320		
6인	11,742,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3,227,000	473,200	511,899	511,709		
8인	14,712,000	567,870	602,760	663,895		
9인	16,197,000	567,870	602,760	663,895		
10인	17,682,000	663,895	684,512	850,979		

13 기준중위소득 180%

기구인스	ᄼᆮᆁᄌ	7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3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01,000	123,332	120,104	-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9인	17,150,000	663,895	684,512	850,979
10인	18,722,000	663,895	684,512	850,979

적용 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연령	출생연도	연령	출생연도	연령	출생연도
만 1 세	2021년생	만 36세	1986년생	만 71세	1951년생
만 2 세	2020년생	만 37세	1985년생	만 72세	1950년생
만 3 세	2019년생	만 38세	1984년생	만 73세	1949년생
만 4 세	2018년생	만 39세	1983년생	만 74세	1948년생
만 5 세	2017년생	만 40세	1982년생	만 75세	1947년생
만 6 세	2016년생	만 41세	1981년생	만 76세	1946년생
만 7 세	2015년생	만 42세	1980년생	만 77세	1945년생
만 8 세	2014년생	만 43세	1979년생	만 78세	1944년생
만 9 세	2013년생	만 44세	1978년생	만 79세	1943년생
만 10세	2012년생	만 45세	1977년생	만 80세	1942년생
만 11세	2011년생	만 46세	1976년생	만 81세	1941년생
만 12세	2010년생	만 47세	1975년생	만 82세	1940년생
만 13세	2009년생	만 48세	1974년생	만 83세	1939년생
만 14세	2008년생	만 49세	1973년생	만 84세	1938년생
만 15세	2007년생	만 50세	1972년생	만 85세	1937년생
만 16세	2006년생	만 51세	1971년생	만 86세	1936년생
만 17세	2005년생	만 52세	1970년생	만 87세	1935년생
만 18세	2004년생	만 53세	1969년생	만 88세	1934년생
만 19세	2003년생	만 54세	1968년생	만 89세	1933년생
만 20세	2002년생	만 55세	1967년생	만 90세	1932년생
만 21세	2001년생	만 56세	1966년생	만 91세	1931년생
만 22세	2000년생	만 57세	1965년생	만 92세	1930년생
만 23세	1999년생	만 58세	1964년생	만 93세	1929년생
만 24세	1998년생	만 59세	1963년생	만 94세	1928년생
만 25세	1997년생	만 60세	1962년생	만 95세	1927년생
만 26세	1996년생	만 61세	1961년생	만 96세	1926년생
만 27세	1995년생	만 62세	1960년생	만 97세	1925년생
만 28세	1994년생	만 63세	1959년생	만 98세	1924년생
만 29세	1993년생	만 64세	1958년생	만 99세	1923년생
만 30세	1992년생	만 65세	1957년생	만 100세	1922년생
만 31세	1991년생	만 66세	1956년생	만 101세	1921년생
만 32세	1990년생	만 67세	1955년생	만 102세	1920년생
만 33세	1989년생	만 68세	1954년생	만 103세	1919년생
만 34세	1988년생	만 69세	1953년생	만 104세	1918년생
만 35세	1987년생	만 70세	1952년생	만 105세	1917년생

[※] 상기 기준은 사업 종류가 매우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른 복지 사업 및 사회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별지] 제5호 서식(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추천서) 〈2020.1.10.수정〉

사회서비스 이용 추천서

1.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호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
		/

2. 추천사유 및 판단근거

① 추천사유	□ 발달지연 □ 문제행동 및 정서불안	
	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② 판단계기	주요인(관찰내용, 검사결과	
	등 기술)	
	-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분야 등 상세의견 기재	
③ 추천자		
의 견		
, <u> </u>		

3. 작성자 (2항의 내용을 작성한 자)

소속기관명			연락처	
기관소재지				
직 또는 자격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대상자	다와의 관계*	:	

* 담임교사, 대상자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원장 등 구체적으로 명시

2022. . . 발 급 처 ^{직 인}

※(예외1) 불가피하게 발급기관(학교장)의 직인이 포함되기 어려운 경우 작성자의 재직증명서 대체 가능 ※(예외2) '19.12.24. 부산 16개 구군 초등학교 무작위 조사결과, 조사대상 모든 학교에서 직인 발급을 위해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함을 확인함. 이는, 학교담임교사를 가구특성 및 우선순위에 반영한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20.1.9. 구군 담당자 간담회 시 학교담임교사·학교사회복지사·학교상담교 사가 추천할 경우「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에 한하여 추천인의 도장으로 직인을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함.

- 단,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 받을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 38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내용의 양에 따라 편집 가능

이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발달관련 가구 특성 자료

예시 1 K-DST(한국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검사결과지

아이 이름				(남.0	Ħ)	작성	일		년	1	월	일
생년월일	1	년	월	일	(조산아인	경우 출생	<u></u> 예정일	:	년		월	엘
섵	문 응답지	ŀ		□어ㅁ	HU 🗆	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그기타()
결과 요약												
是류	1	2	3	4	5	6	7	8	총점		절단점	
영역	'	-	3	4	5	0		٥	20	가	나	С
대근육운동										15	19	2:
소근육운동										15	20	2
인 지										5	16	2:
언 어										11	17	2:
사 회 성										9	16	2
자 조										11	16	2
추가 질문 [1]=예 [0]=아니오										11:	= 예 ①	= 0}
수가 쌀군									. 10		5(9	3
문 항		1(S)		2(S)	3	(S)		4 (S)		5 (5	"
		1(S) 1) ©	1	2(S	0	1	(s) 0	[4(S) 1 0	1	1	0

※ 평가결과란에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에 해당되는 소견이 있을 때, <u>'(011003)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의</u> 대상에 해당됨.

예시 2 K-CDRII(영・유아 발달검사지) 검사결과지

수고하셨습니다! **K-CDR II**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자녀명 :

생활연령: 39개월

정상범위: 29.0 개월 ~ 45개월 까지

• 경계범위: 27.0개월 ~ 29.0 개월 까지

• 지연범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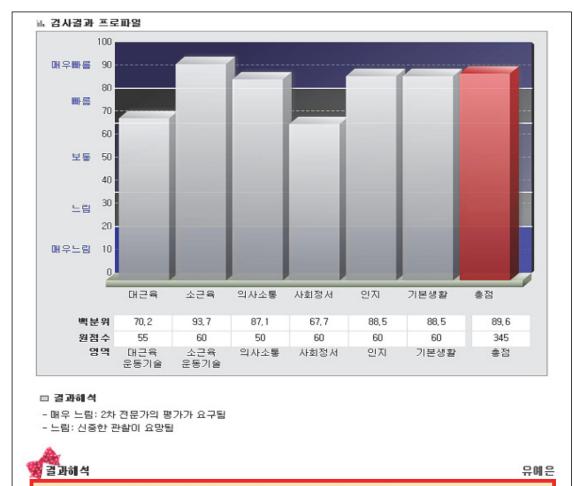
○ 발달검사결과

척도	측정 내용	K-CDR II 진단 결과
사회성	개별적 상호작용 뿐 아니라 집단 참여 상황에서 부모, 아동, 다른 성인들과의 상호작용 발달	정상
자조행동	먹기, 옷입기, 목욕하기, 화장실 가기, 독립심과 책임감 발달	정상
대근육운동	걷기, 뛰기, 오르기, 점프하기, 타기, 균형잡기, 협응 능력 발달	정상
소근육운동	눈과 손의 협용 능력을 포함하여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부터 그 림 그리는 것까지 눈과 손의 협용 발달	정상
언어	간단한 몸짓, 발성, 복잡한 언어표현과 간단한 이해, 개념의 이 해 발달	정상
전체발달	발달의 총체적 지표를 제공해주는 요약 척도로서, 위의 하위 척도로부터 가장 연령 구분력이 뛰어난 10개의 문항 으로 구 성된다.	정상
홍	본 OOO마동은 현재 모든 발달이 연령수준(생활연령 39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개월)에 적합한 건강한

^{*} 주의사항:본 검사는 아동이 현재 생활연령 수준에서 사회성, 자조행동, 운동 및 언어발달이 정상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스크리닝(screning) 검사입니다. 따라서 각 영역별 아동의 현재 발달 수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총적인 검사를 요합니다.

※ 결과 통보서 어느 하나 영역에 '정상'이외의 결과(이상, 지연 등)의 소견이 있을 경우 '(011003)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이용자에 해당됨.

예시 3 DEP(영아선별교육진단검사) 검사결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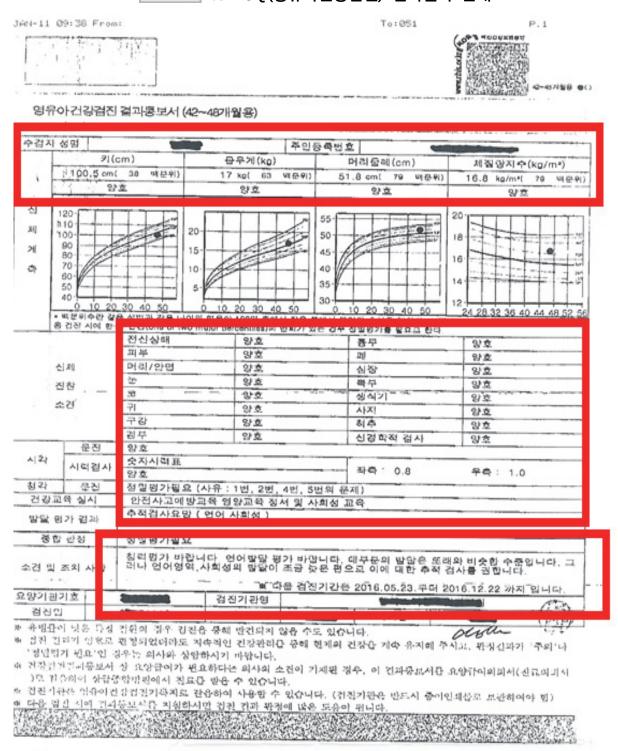


동일 월령대에 속한 영아에 비해 전반적인 발달 수준이 매우 빠른 편입니다.

- 동일 헐렁대에 속한 영아에 비해 대근육 운동기술 영역의 발달 수준이 빠른 편입니다.
- 동일 월령대에 속한 영아에 비해 소근육 운동기술 영역의 발달 수준이 매우 빠른 편입니다.
- 동일 월령대에 속한 영아에 비해 의사소통 영역의 발달 수준이 매우 빠른 편입니다.
- 동일 월령대에 속한 영아에 비해 사회정서 영역의 발달 수준이 빠른 편입니다.
- 동일 월령대에 속한 영아에 비해 인지 영역의 발달 수준이 매우 빠른 편입니다.
- 동일 월령대에 속한 영아에 비해 기본생활 영역의 발달 수준이 매우 빠른 편입니다.

※ 결과 해석란에서 각 영역별 수준이 '느림', '매우느림'으로 해석된 영역이 하나이상일 경우 '(011003)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이용자에 해당됨.

예시 4 K-ASQ(영유아건강검진) 검사결과 안내



※ 결과 통보서에 '신체계측 항목'으로 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중 1개라도 (10%이내 백분위)에 해당이 되는 경우 신청 가능함. '(011003)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이용자에 해당됨.

이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와 이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가구 특성 확인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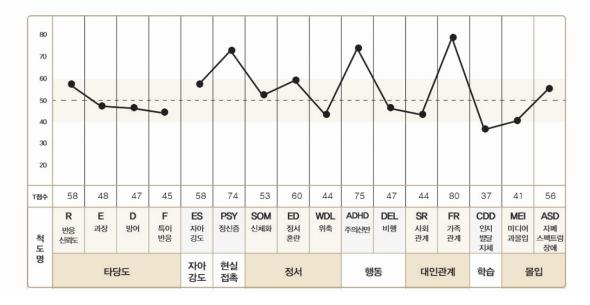
- ※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의 경우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원장의 추천서/공공기관·병원·일반기관· 에서 근로하는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언어재활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검사하여 분석한 결과 지를 함께 제출해야 함.(단 온라인 검사의 경우 검사결과에 대한 결과지를 출력하여 제출하면 이를
-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의 경우 추천서 또는 소견서 또는 검사결과지 세 가지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제출해야 함.

예시 5 K-CYP(아동청소년 성격검사) 검사결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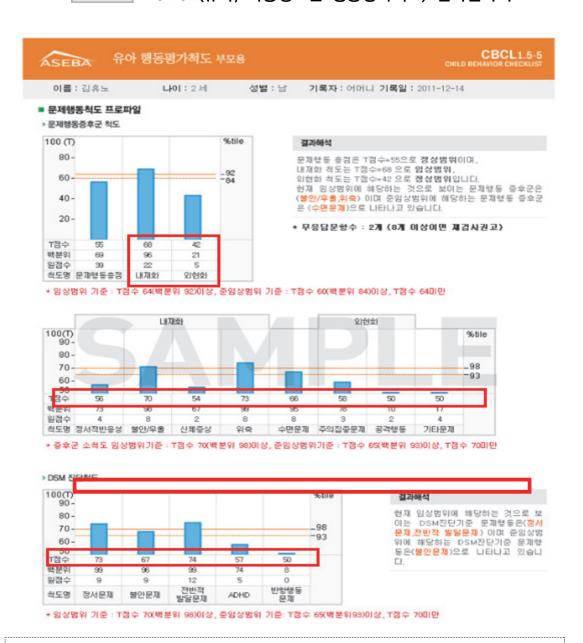
01 종합프로파일

T접수는 평균 50, 표준편차 10인 표준화 점수입니다. 표준점수는 백분위로 변환하여 또래집단에서의 상대적인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령 T점수 70의 경우 상위 2.5% 정도 (백분위 97.7)에 해당하며 또래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냅니다.



- ※ 종합 프로파일 내 '자아강도', '현실접촉', '정서', '행동', '대인관계', '학습', '몰입' 영
- 역 세부항목(ex. 정서 : 신체화, 정서혼란, 위축 등) 의 T점수가
- ① 70T 이상의 항목이 1개 이상 나타날 경우. '(011003)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 ② 65T 이상의 항목이 1개 이상 나타날 경우 '(290503)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이용대상에 해당됨.

예시 6 CBCL(유아,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검사결과지



※ (290503)아동정서발달서비스 : 종합 프로파일 내 '내재화', '외현화' 영역 어느하나의 T점수가 60T 이상이거나, 세부항목(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기타 문제, 정서문제, 불안문제, 전반적 발달문제 ADHD, 반항적 행동문제) 어느 하나의 T점수가 65T 이상일 때 서비스 이용대상에 해당됨.

※ (011003)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 종합 프로파일 내 '내재화', '외현화' 영역 어느 하나의 T점수가 64T 이상이거나, 세부항목(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주의집 중문제, 공격행동, 기타 문제, 정서문제, 불안문제, 전반적 발달문제 ADHD, 반항적행동문제) 어느 하나의 T점수가 70T 이상일 때 서비스 이용대상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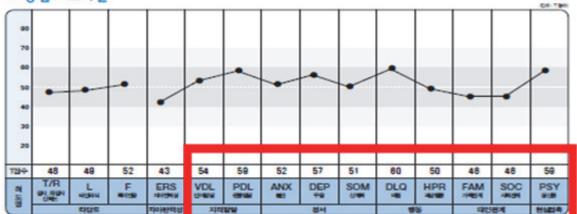


'T점수는 불군이 '당 이고 프론인하나 '한건 점수'당-1년 대부분의 '참 시대 때문의 점수는 열고보던 불용하여 주십시오. 검사일:2011.08.18 홍길등님의 KPRC한국아동인성행정적도

* KPRC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

기왕에 건본초등학교	3	1	1	여자	^{6년} 용결동	2011-06-16
				생년월일:200	02년03월27일 응	답자: 홍길순(모)

:: 종합 프로파일



: 검사소건 변경문 이름, 상선물 이상 기업을 가장하는 지원 경우 전문 기업을 받는 것이 보고 기업을 하는 것이 되었다.

용결동 아동! 청소년] 은 연중에 적합한 언어적 발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으며, 대체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해 관계도 원만하여, 친구들과 교류를 맺고 의사 소등을 하는 능력도 잘 말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 이고 있습니다. 또해 관계도 원만하여, 친구들과 교류를 맺고 의사 소등을 하는 능력도 잘 말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 습니다. 이러한 면이 창의적이고 독장적인 아동의 장점으로 발위될 수 있다면 해우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때로는 주면 사람들이 잘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역이 적절히 발달되어 있고,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 스스로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살랑하고 남극시킬 능력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에게서 간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물을 행동도, 긍정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도록, 아동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종합 프로파일 내 '언어발달', '운동발달', '불안', '우울', 신체화, '비행', '과잉행동',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신증' 세부항목 T점수가
- ① 70T 이상의 항목이 1개 이상 나타날 경우, '(011003)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 ② 65T 이상의 항목이 1개 이상 나타날 경우 <u>'(290503)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u> 이용대상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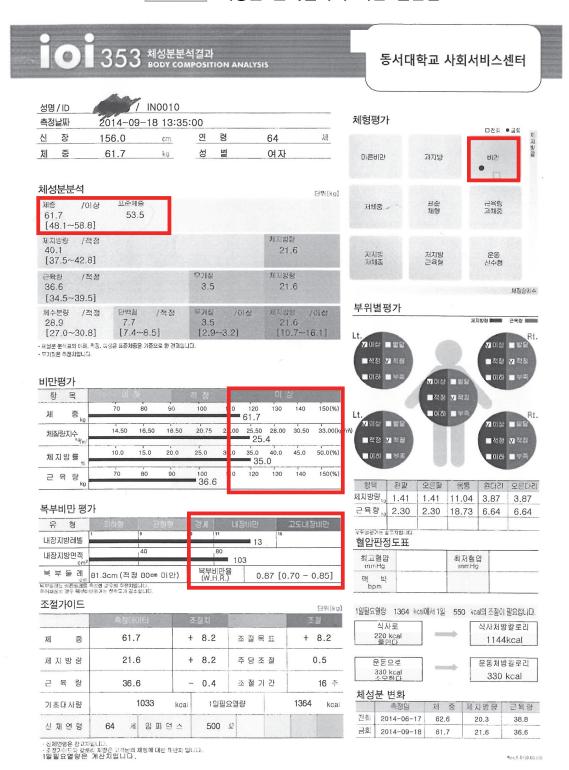
예시 8 기타 효과성 검증도구 절단점 기준(심리치유서비스)

도구명	절단점 기준
영유아 언어발달검사 (SELSI)	 ○ 대상 : 생후 4개월~35개월 아동 언어발달 검사 ○ 구성 : 수용언어 (56문항), 표현언어 (56문항) ○ 절단점 기준 - 검사결과 등가연령(발달연령)이 생활연령(만 나이)보다 6개월 이상 저하된 아동은 서비스 이용 대상으로 선정 예시) 생활연령 24개월 아동이 검사결과 등가연령 17개월로 나타난 경우 서비스 이용대상에 해당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 대상 : 2세~6세의 아동사용 ○ 구성 : 수용언어영역(45문항), 표현언어영역(45문항) ○ 절단점 기준 : - 검사결과 백분위수 20%ile 이하 또는 등가연령(발달연령)이 생활 연령(만 나이)과 3세 이하 6개월 이상, 3세 초과 1세 이상 저하 된 아동은 서비스 이용 대상으로 선정
수용• 표현 어휘력검사 (REVT)	 ○ 대상 : 2세 6개월~16세 유아 및 청소년 ○ 구성 : 수용어휘검사(REVT-R)-185문항, 표현어휘검사(REVT-E)-185문항 ○ 절단점 기준 - 검사결과 백분위수 20%ile 이하 또는 등가연령(발달연령)이 생활 연령과 3세 이하는 6개월 이상, 3세~6세는 1세 이상, 7~16세는 1세 6개월 이상 저하된 경우 대상으로 선정
U-TAP (조음 및 음운 장애검사)	○ 2세~12세 조음 음운장애검사 ○ 구성: 그림낱말검사-43개자음 검사+10개 단모음검사, 그림문장검사-30개 목표 낱말 검사 ○ 절단점 기준 - 평균 보다 -1SD(표준편차) 이하인 경우 또는 음소발달 연령에 따 른 오조음 형태가 맞지 않을 때 대상으로 선정
덴버발달검사	 ○ 대상 : 0세~6세의 영유아 ○ 구성 : 104개 문항(개인성, 사회성, 미세운동, 적응성, 언어, 전체 운동) ○ 절단점 기준 - 검사결과 '이상', '의심'등의 결과가 나타나면 심리치유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
Sensory profile	○ 절단점 기준 - Sensory profile 검사 결과 항목들에서 '의심 범주', '어려움 범주'의 결과가 나타나면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

<u>* 참고 : 2014년 2월 1일생의 생활연령은 2018. 1. 1. 기준으로 47개월 또는 3세 11개월임.</u>

노인건강관리서비스 가구 특성 확인 방법

예시 1 체성분 분석결과에 대한 절단점



- 1. 체성분 분석 : 체성분 분석 결과에서 '적정' 이외에 항목 1개라도 있으면 서비스 이용가능
 - ▶ 위의 결과지상 과체중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2. 체형평가: 표준체형, 저지방 근육형, 운동 선수형을 제외한 영역에 해당되면 서비스 이용 가능
 - ▶ 위의 결과지상 '비만'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3. 비만평가 : 체중, 체질량지수, 체지방률의'적정'영역을 제외한 점수결과가 1개 항목 이상 나타나면 서비스 이용가능
 - ▶ 위의 결과지상 체중,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모두 '이상' 판정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4. 복부비만평가 : 피하형, 균형형을 제외한 영역에 해당되면 서비스 이용가능
 - ▶ 위의 결과지상 '내장 비만'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 ※ 1~4번의 결과 중 1개 항목이라도 '이상' 또는 '경계, 내장비만, 고도내장비만', '마른 비만, 과지방, 비만, 저체중, 근육형 과체중, 저지방 저체중'의 결과가 나타나면 서비스 이용가능

예시 2 체성분 분석결과에 대한 절단점





(내장형)

피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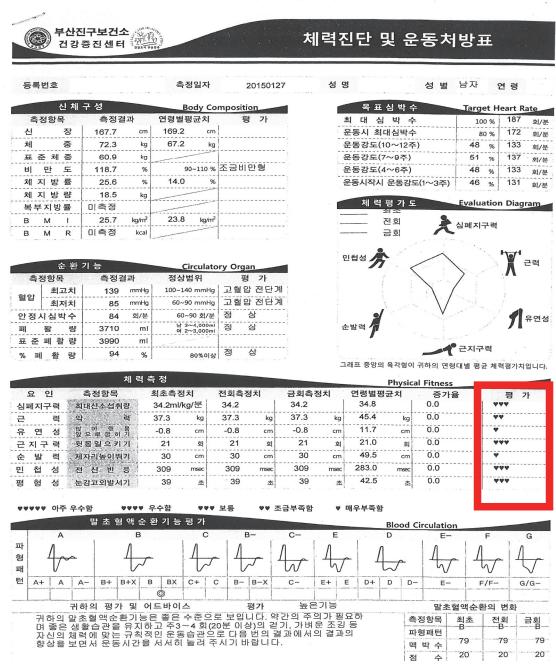
•복부비만평가는 특이체질의 경우 정확도가 감소합니다.

- 1. 체성분 분석 : 체성분 분석 결과에서 '적정'이외에 항목 1개이상이면 서비스 이용가능
 - ▶ 위의 결과지상 체지방량 '이상'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단, 근육량 이상의 의미는 적정 수준보다 많다라는 의미이기에 근육량의 '이상'으로 서비스 대상이 되지 않음)
- 2. 체형판정도표 : 적정, 저지방 근육형, 운동 선수형을 제외한 영역에 해당되면 서비스 이용 가능
 - ▶ 위의 결과지상 '경계형 비만'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3. 체성분측정결과(비만평가) : 체중,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체지방량의 적정 영역을 제외한 점수결과 1개 항목 이상 나타나면 서비스 이용가능
 - ▶ 위의 결과지상 체중, 체질량지수, 체지방량에서 '이상' 판정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 4. 복부비만평가 : 피하형, 균형형을 제외한 영역에 해당되면 서비스 이용가능
 - ▶ 위의 결과지상 내장지방 레벨, 복부비만율 균형형, 적정으로 서비스 이용 불가

※ 1~4번의 결과 중 1개 항목이라도 '이상' 결과가 나타나면 서비스 이용가능

노인건강관리서비스 가구 특성 입증 자료 확인 방법

예시 1 노인기초체력검사 절단점



- ※ 보건소 노인체력측정 검사결과 평균 4등급 이상인 자에 대한 해석
 - : 체력측정결과 평가란 ♥표시 개수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 이용대상은 각 하위요인 중 어느 하나의 요인의 평가결과 "♥♥(2개) 이하인 경우" 서비스('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내 나이가 어때서]) 이용 가능
- ※ 부산의 전체 보건소에서 노인체력측정을 하는 것이 아님. 노인체력측정 이용이 어려울 경우 보건소 인바디검 사(체성분검사)를 통해 서비스 신청 가능함을 안내 필요



Ⅳ. 사업별 효과성 검증도구 예시본

- 01 사업별 효과성 검증도구
- 02 해양역사 문화체험 아카데미-자아존중감 척도
- 03 해양역사 문화체험 아카데미-자기효능감척도
- 04_ 해양역사 문화체험 아카데미-진로성숙도 척도
- 05 아동건강관리서비스-아동건강증진행위 척도
- 06_ 뇌에 기(氣)가 팍팍-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K)
- 07_ 가족마음이음서비스 (구)자녀의 성공을 돕는 부모코칭-결혼만족도 척도
- 08_ 가족마음이음서비스 (구)자녀의 성공을 돕는 부모코칭-부모효능감검사
- 09_ 노인건강관리서비스, 뇌에기가 팍팍 Beck 우울 척도(BDI)
- 10_ 노인건강관리서비스, 뇌에기가 팍팍 자살생각척도(SSI)

사업별 효괴성 검증도구

효과성 검증 (서비스 제공 전 단계 및 후 단계) 총 2회 실시

반드시 사업별 필수도구로 제시한 효과성 검증도구를 활용하시고 그 외 이용자 특성에 맞는 효과성검증도구 활용은 기관 선택사항입니다.

사업코드	사 업 명	검 사 도 구
120103	동화야 놀자	1 사 도 구 아래 도구 (①~④) 중 택 1 ① 유아 창의적 특성 검사(K-CTC) ② 유아종합창의성 검사(K-CCTYC) ③ 한국유아사회성기술검사(K-SSRSP) ④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
130103	해양역사문화체험아카데미	① 자아존중감*, ② 자기효능감*, ③ 진로성숙도* 중 택 2
160203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체성분 분석(인바디) + 아동건강증진행위 척도* = 총 2가지
011003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아래 도구(①~⑪) 중 택 1 ①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BCL) ②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KPRC) ③ 한국아동청소년인성척도(K-CYP) ④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⑤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⑥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⑦ 사회성숙도 검사(SMS) ⑧ 감각 반응 검사(Sensory Profile) ⑨ 덴버 발달검사(DDSTII) ⑪ 우리말 조음 음운평가(U-TAP) ①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 P-FA
290503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래 도구 (①~③) 중 택 1 ①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BCL) ②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KPRC) ③ 한국아동청소년인성척도(K-CYP)
250203	뇌에 기(氣)가 팍팍	필수 검사도구 1가지 + 선택 검사도구 1가지 = 총 2가지 (필수)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K)* (선택) Beck 우울척도(BDI)* 또는 자살생각척도(SSI)*
080603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만족도 조사
050903	노인건강관리서비스 (구)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필수 검사도구 1가지 + 선택 검사도구 1가지 = 총 2가지 (필수) 체성분분석(인바디) (선택) Beck 우울척도(BDI)* 또는 자살생각척도(SSI)*
070101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만족도 조사

^{* :} 본 지침에 반영되어 있는 측정도구를 활용해야 함

사업코드	사 업 명		검 사 도 구		
		예비부모 (자녀가 없는 부부)	결혼만족도 척도*		
	가족마음이음서비스	자녀가 있는 부모	부모양육태도유형검사(Arete)		
170203	(구)자녀의 성공을 돕는 부모코칭	유아 및 초등부모	아래 도구 (①~②) 중 택 1 ① 부모양육태도검사(PAT) ② 부모양육스트레스검사(K-PSI)		
		중고등부모	부모효능감 척도(PSOC)*		
280303	행복한 중년 건강관리서비스	체성분 분석(인바디) + Beck 우울척도(BDI) = 총 2가지			
170303	부모-자녀 상호작 용증 진서비스	필수 검사도구 1가지 + 선택 검사도구 1가지 = 총 2가지 (필수) 부모-자녀 상호작용척도 (선택) 부모효능감 척도 또는 부모양육스트레스 척도			
991403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아래 도구 (①~②) 중 택 1 ① 일상생활능력 (ADL) ②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IADL)			
090203	1인가구 중장년층의 신체정신건강 통합서비스	아래 도구 (①~②) 중 택 1 ① 자아존중감 척도 ② 사회적 고립감 척도			

^{* :} 본 지침에 반영되어 있는 측정도구를 활용해야 함

해양역사 문화체험 이카데미 - 자아존중감 척도

	1) 자아존중감의	정도	- 측정					
	2) 자아존중감 ^초 하위요인	· 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및 측정내용		÷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a
		총체적 자이존중감	퍨	자기 자신에 대한 좀 명가이며 아동 자신의 대한 전반적인 평가0	모든 부분에	l	5, 9, 13, 17, 21	6	
척도		사회적 자이존중감	1	다른 사람에 대한 찬 신에 대해 느끼는 감		2, 6, 10, 14, 18, 22, 25, 28, 31			
내용		가정에서의 자이존중감		가정생활에서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인정되고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원만하기에 대한 평가적 태도를 말한다. 즉, 가족구성원으로서 자신에 대하여			7, 11, 15, , 23, 26, 29, 32	9	.64~.84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4*, 8*, 12, 16*, 20*, 24*, 27*, 30*		8		
				전체				32	
실시방법	X	가기보고식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내용이 대상자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단,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에 대해서는 점수를 반대로 계산한다.								
채점방법		하위요인별 총	점	총체적 자이존 중 감	사회적 자이 존중 감		가정에서 자이존중		학교에서의 자이존중감
				점		점		점	점
	*	하위요인별 총	점은	설문문항 응답결과를	하위요인별로 협	합한 갑	<u></u>		
척도의 출 처		김지연. (1999). 역사학위 논문, (ient 프로그램 :	효과연	1구: 청소년	자아존증	동감 향상을 중심으로.

이 질문은 평소에 여러분이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문항 내용이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①번에서 "매우 그렇다" ⑤번까지 해당되는 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번 호	질문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 이다	④대체로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	나는 결심을 하고 그 결심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	1)	2	3	4	(5)
2	나는 내 또래의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1)	2	3	4)	(5)
3	부모님은 내 기분을 잘 맞춰 주신다.	1	2	3	4)	(5)
4	나는 학교에서 실망하는 일이 가끔 있다.*	(5)	4)	3	2	1
5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	1)	2	3	4)	(5)
6	나에게 친구가 많다.	1)	2	3	4)	(5)
7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1	2	3	4	(5)
8	내가 원하는 만큼 학교생활이 원만치 않다.*	(5)	4)	3	2	1
9	나는 주저하지 않고 결심할 수 있다.	1	2	3	4)	(5)
10	누구든지 나를 좋아한다.	1)	2	3	4)	(5)
11	나는 집에서 상당히 행복하다.	1	2	3	4)	(5)
12	나는 학교에서 가끔 화날 때가 있다.	1)	2	3	4)	(5)
13	내 문제는 주로 내가 해결 할 수 있다.	1	2	3	4)	(5)
14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좋아한다.	1)	2	3	4)	(5)
15	나는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진다.	1	2	3	4	5
16	선생님은 나를 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5)	4)	3	2	1
17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18	나는 남을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이다.	1)	2	3	4	(5)
19	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다.	1	2	3	4)	(5)
20	나는 학교 성적에 실망이 든다.*	(5)	4	3	2	1)
21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22	나는 남에게 좋은 친구이다.	1	2	3	4)	(5)
23	우리가족은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다.	1	2	3	4	5
24	나는 학교에서 하는 일이 서툴다.*	(5)	4)	3	2	1)
25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을 귀담아 들어준다.	1	2	3	4	(5)
26	나는 좋은 딸, 아들이다.	1)	2	3	4)	5
27	내가 좀 더 나은 학생이면 좋겠다.*	5	4)	3	2	1)
28	친구들은 주로 내 생각에 따른다.	1)	2	3	4)	5
29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실 만하다.	1)	2	3	4)	5
30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내가 좀 더 이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5	4	3	2	1)
31	나는 원하면 항상 친구를 사귈 수 있다.	1)	2	3	4)	5
32	나는 우리 기족 중 중요한 사람이다.	1	2	3	4	(5)

해양역사 문화체험 아카데미 - 자기효능감 척도

	1						
	1) 자기효능감 2) 자기효능감	의 정도 측정 ·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및	신리도				
	하위요인	측정내용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a	
	자신감	곤란한 상황을 맞이했을 심리 상태	때의 (1), (3), 4, (11), (1		8	.87	
최도 내용	자기조절 효능감	일의 순서적인 처리능력 정보활용능력	, , ,	2, 7, 8, 12, 14, 17, 19, 20, 22, 23		.84	
	과제 난이도 선호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태도검사	- 1	(6), (9), 15, 18, 21		.89	
		전체	'		23	.92	
	()표시는 역 채점 문항임						
실시방법	자기보고식						
	Likert 5점 초 감 척도가 높은	다로 '전혀 아니다'는 1점으 2 것이다	로 하고 '아주 그렇	다'는 5점 <u>으로</u>	해당 점수	가 높을수록 자기효능	
채점방법	하위요인별	자신감 총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 선호		
		점	점		점		
	* 하위요인별	총점은 설문문항 응답결과를	하위요인별로 합한	값			
척도의 출 처	정보현. (2012). 비전수립 코칭 프로그램이 방과후 아카데미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교육학박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이 질문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평소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sqrt{\ }$)하여 주십시오.

번 호	질문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 이다	④대체로 그렇다	(5배우 그렇다
1	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우울함을 느낀다.*	(5)	4	3	2	1)
2	나는 일의 순서를 정해 치례로 처리할 수 있다.	1)	2	3	4	(5)
3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5)	4	3	2	1)
4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	2	3	4	(5)
5	나는 위험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	(5)	4	3	2	1)
6	일은 쉬운 것일수록 좋다.*	(5)	4	3	2	1)
7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찾아낼 수 있다.	1	2	3	4	(5)
8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1	2	3	4	5
9	만일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려운 일보다는 쉬운 일을 선택할 것이다.*	(5)	4	3	2	1
10	나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필요 이상으로 받는 다.*	(5)	4	3	2	1)
11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곤한다.*	(5)	4	3	2	1
12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판단과 생각은 대체로 정확하다.	1	2	3	4	(5)
13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다.*	(5)	4	3	2	1
14	나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따라서 일의 진행 상태를 확 인한다.	1)	2	3	4	(5)
15	좀 실수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1)	2	3	4	(5)
16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5)	4	3	2	1)
17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다.	1)	2	3	4	(5)
18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재미나는 일이다.	1)	2	3	4	(5)
19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다.	1	2	3	4	(5)
20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한다.	1	2	3	4	(5)
21	이주 쉬운 일보다는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더 좋다.	1)	2	3	4	(5)
22	나는 어떠한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1	2	3	4	5
23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1	2	3	4	5

해양역사 문화체험 이카데미 - 진로성숙도 척도

1)) 진로성숙도의	저ㅡ	ᄎᅑ
	りかた公子と의	싱노	

2) 진로성숙도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

척도
내용

<u>, </u>	, =====================================							
하위요인	측정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a				
계획성	직업목표를 선정한 후 그 목표에 도달할 1, 2, 3, (4),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능력 (5)		5	.80				
성향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 정도 및 선호하는 진로 방향에 대한 확신정도	(6), 7, (8), 9, 10	5	.64				
타협성	진로선택 시 개인의 욕구와 사회 현실을 조화시킬 수 있는 태도	(11), 12, (13), 14, 15	5	.66				
결정성	지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정도 및 자기의 진로방향 탐색 결정과정에서 망설임이나 확신하는 정도		5	.63				
	전체	20	.74					

()표시는 역 채점 문항임.

실시방법 자기보고식

응답에 따른 채점형태는 '예'는 2점, '모르겠다'는 1점, '아니오'은 0점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방법

하위요인별 총점	계획성	성향	타협성	결정성
	점	점	점	점

* 하위요인별 총점은 설문문항 응답결과를 하위요인별로 합한 값

척도의 출 처

정보현. (2012). 비전수립 코칭 프로그램이 방과후 아카데미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교육학박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이 질문은 여러분의 진로에 대한 태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자신의 입장과 똑같거나 거의 같으면 ①번의 "예", 잘 모르겠으면 ②번의 "모르겠다", 자신의 입장과 다르면 ③번의 "아니오"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문	① 예	② 모르 겠다	③ 아니오
1	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함께 나의 진로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	2	3
2	나는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직업이 유망한 것인가를 알아보는데 관심이 많다.	1	2	3
3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나는 학교를 졸업할 때가지 학교 공부에만 힘쓰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미리 준비 하지 않아도 된다.*	3	2	1
5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3	2	1
6	나는 장래에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2	1
7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8	나는 여러 직업 중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3	2	1
9	나는 나의 취미나 흥미를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10	나는 내가 어떤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내 모습을 가끔 상상해 본다.	1)	2	3
11	나는 아직 경험이 없으므로,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2	1
12	나는 진로 결정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하겠다.	1	2	3
13	나는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생각한다.*	3	2	1
14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생각이다.	1)	2	3
15	직업을 선택할 때는 최소한 몇 가지 직업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이야 한다.	1)	2	3
16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인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1)	2	3
17	나는 나의 흥미나 취미에 가장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18	나는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을 자주 바꾸는 편이다.*	3	2	1
19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생각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직업선택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1)	2	3
20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	2	3

이동건강관리서비스 - 이동건강증진행위 척도

	 건강증진행위의 정 건강증진행위 척도 		<u> </u> 별 문항	및 신리도			
척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a
	개인위생 및 실	활습관	1, 2, 3	, 4, 5, 6, 7, 8, 9,	10, 28	11	
내용 내용	사고예빙	†	11	, 12, 13, 14, 15, 1	6	6	
	전염병 예	방	17	, 18, 19, 20, 21, 2	22	6	.85
	정신건강	<u> </u>		23, 24, 25, 26, 27		5	
	전체					28	
				생활습관 11문항, 사고 1며 5점 척도로 점수기			
채점방법	하위요인별 총점	개인위생 및 생활 습 관		사고예방	전염병 예방관리		정신건강
			점 점			점	점
	* 하위요인별 총점은 설문문항 응답결과를 하위요인별로 합한 값						
척도의 출 처	민혜영. (2010). 학령후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이존중감 및 건강증진행위. 석사학 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 질문은 여러분의 건강습관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소 행동과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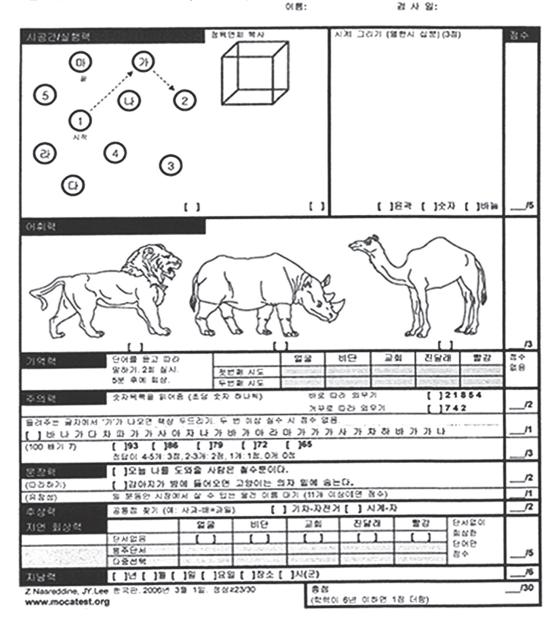
번 호	질문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1	2	3	4	(5)
2	식사는 거르지 않고 먹는다.	1	2	3	4)	(5)
3	식사 전에 손을 씻는다.	1	2	3	4	(5)
4	손톱 발톱을 짧고 깨끗하게 정돈한다.	1	2	3	4)	(5)
5	목욕을 규칙적으로 한다.	1	2	3	4)	(5)
6	외출해서 돌아오면 손을 씻는다.	1	2	3	4)	5
7	잠자기 전에 이를 닦는다.	1	2	3	4	(5)
8	썩은 치아가 있을 때는 치과에 가서 치료한다.	1	2	3	4	(5)
9	정기적으로 치아 검진을 한다.	1	2	3	4	(5)
10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한다.(1시간 이상 걷기, 수영 등)	1	2	3	4	(5)
11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보고 건년다.	1	2	3	4	(5)
12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뛰지 않고 한칸씩 밟는다.	1	2	3	4	(5)
13	자전거, 롤러블레이드, 퀵보드를 탈 때는 헬멧(안정장 비)을 착용한다.	1)	2	3	4	(5)
14	전기제품은 젖은 손으로 만지지 않고 안전 규칙을 지킨다.	1	2	3	4	(5)
15	위험한 운동이나 놀이를 하지 않는다.	1	2	3	4	(5)
16	약을 내 마음대로 혼자 꺼내먹지 않는다.	1	2	3	4	5
17	과일은 씻은 후에 먹는다.	1	2	3	4	5
18	상한 음식은 먹지 않는다.	1	2	3	4	5
19	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주사를 맞는다.	1	2	3	4	(5)
20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손을 씻는다.	1	2	3	4)	(5)
21	기침 할 때는 병균이 옮기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다.	1)	2	3	4	(5)
22	눈병이 난 친구의 물건을 같이 쓰지 않는다.	1	2	3	4	(5)
23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1	2	3	4)	(5)
24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1	2	3	4)	(5)
25	내가 아프면 가족 모두가 걱정한다.	1	2	3	4	(5)
26	나는 행복하다.	1	2	3	4)	(5)
27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1	2	3	4	(5)
28	학교공부 외에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	1	2	3	4	(5)

되에 기(氣가) 팍팍 -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K)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는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 문항들을 가능한 그대로 한국어로 반안한 검사로, 경도인지장에 환자들을 선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시공간실행력, 어휘력, 주의력, 문장력, 추상력, 지연회상능력, 지남력과 같은 인지가능들을 평가하며, 검사 소요시간은 약10분에서 15분 정도이다. 한국형 간이 정산상태 검사와 마찬가지로 피검자가 제대로 수행을 하면 1점을 주고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 0점을 주는 2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단, 계산문항은 100에서 7씩 빼나가는 과정을 5번 가치는데 4~5개를 맞출 경우 3점, 2~3개를 맞출 경우 2점, 1개를 맞추면 1점, 하나도 맞추지 못할 경우 0점을 준다. 총 30점 만점으로 23점 이상이면 정상으로 간주하지만 22점 이하일 경우 경도인지장에의 선별대상자가 된다. 여가에서 주의할 점은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의 경우 한국형 간이 정산상태 검사와 다르게 참가자의 학력을 고려하여 학력이 6년 이하일 경우 1점의 추가점수를 부여한다.

*출처 : 정유경. (2010). 몬트리올 인지평기를 통한 기억성 경도인지장애의 탐지. 석시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한국판 온트리올 인지평가 (MOCA-K) 성별: 교육년수: 정년89일: 어름: 검사임:



가족마음이음서비스 (구)자녀의 성공을 돕는 부모코칭 - 결혼만족도 척도

결혼만족도 하위영역별 문항, 가능 총점 범위 및 신뢰도

구분	해당 문항 번호	문항 수	가능 총점 뱀위	신뢰도
부부관계	1, 9, 15*, 25*, 28, 29*, 32, 34*, 35, 36*, 41*, 42, 44*, 45, 46*, 47	16	16점-80점	.91
배우자	2, 4, 5, 19*, 20, 22, 24, 27, 30*, 31*, 33, 37, 38*, 39, 40*, 43*	16	16점-80점	.91
환경	3*, 6*, 7*, 8*, 10*, 11*, 12, 13*, 14, 16, 17, 18*, 21, 23*, 26, 48	16	16점-80점	.89
전체				

* : 역 채점 문항

*출처 : 이기복. (2006).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수용 프로그램. 박사학위 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하위요인별 총점	부부관계	배우자	환경
	점	점	점

* 하위요인별 총점은 설문문항 응답결과를 하위요인별로 합한 값

다음의 질문 문항에 대해 본인이 느끼는 만족정도에 체크($\sqrt{\ }$) 하십시오.

번 호	질문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 이다	④대체로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	나는 결혼생활에 있어서 남편(부인)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지를 알고 있다.	1)	2	3	4	5
2	남편(부인)은 되도록 나를 편하게 해 주려 한다.	1	2	3	4	(5)
3	나는 결혼생활에 대해 근심, 걱정이 많다.*	(5)	4	3	2	1
4	만약 내가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의 남편(부인)과 같은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5	나는 남편(부인)을 항상 신뢰할 수 있다.	1)	2	3	4	(5)
6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인생은 매우 공허했을 것이다.*	(5)	4	3	2	1
7	현재의 결혼생활은 나를 너무 구속한다.*	(5)	4	3	2	1
8	나는 나의 결혼생활이 따분하게 느껴진다.*	(5)	4	3	2	1
9	남편(부인)과의 결혼생활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다.	1)	2	3	4	(5)
10	결혼생활은 나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5)	4	3	2	1
11	나는 결혼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스럽다.*	(5)	4	3	2	1
12	나는 결혼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3	지금의 결혼생활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란다.*	(5)	4	3	2	1
14	시간이 갈수록 나의 결혼생활은 더 만족스러워 할 것이다.	1)	2	3	4	(5)
15	나는 결혼생활을 다른 어떤 일보다도 나에게 만족감을 더 많이 준다.*	(5)	4	3	2	1
16	나는 결혼생활이 생각했던 것만큼 즐겁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7	나의 결혼생활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나에게 만족감을 더 많이 준다.	1	2	3	4	(5)
18	결혼생활이 해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5)	4	3	2	1
19	남편(부인)은 나를 매우 신경질 나게 한다.*	(5)	4	3	2	1
20	남편(부인)은 내 의사를 나타낼 충분한 기회를 주는 편이다.	1)	2	3	4	(5)
21	지금까지 나의 결혼생활은 성공적이었다.	1)	2	3	4	(5)
22	남편(부인)은 나를 자신과 동등하게 대해 준다.	1)	2	3	4	(5)
23	결혼생활 이외에 인생을 가치 있고 흥미롭게 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5)	4	3	2	1
24	남편(부인)은 내가 최선을 다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	1)	2	3	4	5
25	결혼생활을 통하여 내 성격은 많이 억눌려져 왔다.*	(5)	4	3	2	1

번 호	질문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 이다	④대체로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6	내 결혼 생활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1	2	3	4	5
27	나는 남편(부인)에게 진실로 관심을 기울인다.	1)	2	3	4	5
28	나는 남편(부인)과 사이가 좋다.	1	2	3	4	5
29	나는 남편(부인)과 이혼하여 헤어질까 봐 두렵다.*	5	4	3	2	1
30	남편(부인)은 내 자유 시간을 불공평하게 자주 빼앗는다.*	5	4	3	2	1
31	남편(부인)은 나를 합당하지 못하게 대하는 편이다.*	(5)	4	3	2	1
32	내 결혼생활은 나 자신이 결혼 전에 세웠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 이 된다.	1	2	3	4	(5)
33	남편(부인)은 우리의 관계를 보다 좋게 하려 애쓴다.	1)	2	3	4	(5)
34	남편(부인)과 취미가 다르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다.*	(5)	4	3	2	1)
35	우리 부부의 애정표현은 각자의 마음에 드는 편이다.	1	2	3	4	(5)
36	불행한 성관계가 나의 결혼생활에 장애가 된다.*	(5)	4	3	2	1
37	남편(부인)과 나는 어떤 행동이 올바르고 적절한지에 대해 서로 의 견이 일치한다.	1	2	3	4	(5)
38	남편(부인)과 나는 같은 인생철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5)	4	3	2	1)
39	남편(부인)과 나는 서로 좋아하는 몇 가지 취미생활을 함께 즐긴다.	1	2	3	4	(5)
40	나는 가끔 지금의 남편(부인)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다.*	(5)	4	3	2	1
41	현재의 결혼생활은 확실히 불행하다.*	5	4	3	2	1
42	나는 남편(부인)과 즐거운 마음으로 성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	1)	2	3	4	5
43	남편(부인)은 나를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	5	4	3	2	1
44	나는 남편(부인)을 신뢰하기 어렵다.*	5	4	3	2	1
45	남편(부인)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대부분 알아차린다.	1)	2	3	4	5
46	남편(부인)은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5)	4	3	2	1
47	나는 남편(부인)과 자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1)	2	3	4	(5)
48	나는 확실히 나의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1)	2	3	4	5

가족마음이음서비스 (구)자녀의 성공을 돕는 부모코칭 - 부모효능감 검사

부모 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a
부모로서의 효능감	2, 3, 7, 8, 9*, 10*, 11, 12, 15	9	.78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좌절감	4, 5, 6, 16	4	.67
부모 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	1, 13*, 14	3	.82
-			.81

^{*} 표시는 역 채점 문항임

출처 : 예사현. (2004). 의사소통 훈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 효능감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하위요인별 총점	부모로서의 효능감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좌절감	부모 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
	점	점	점

^{*} 하위요인별 총점은 설문문항 응답결과를 하위요인별로 합한 값

다음 질문은 부모로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측정하는 것입니다. 문항을 읽어가면서 부모로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번호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문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 이다	④대체로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잘 알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4	나는 아이가 현재 보이고 있는 수준이 그 나이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 는 것을 알면서도 짜증이 난다.	1)	2	3	4	(5)
5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려고 해도 아이가 내 뜻대로 잘 따라 오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	1	2	3	4	5
6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된다.	1	2	3	4	(5)
7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8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1	2	3	4	(5)
9	나는 아이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보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	(5)	4	3	2	1
10	나는 부모로서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느낀다.*	(5)	4	3	2	1
11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1	2	3	4	(5)
12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1	2	3	4	(5)
13	나의 흥미와 관심은 부모 역할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다.*	(5)	4	3	2	1
14	내가 부모가 되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 흥미가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 도 좀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15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16	부모로서 나는 긴장하고 있으며 불안하다.	1)	2	3	4	5

노인건강관리서비스 (구)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뇌에 기가 팍팍(구. 찾아가는 맞춤형 치매예방교실) - Beck 우울 척도 (BDI)

척도 내용	1) 우울 증상의 정도 측정. 2)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문항으로 구성. 3) 1961년 개발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4) 특징: 증상의 정도를 Likert 척도가 아니라 증상의 정도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진술문에 응답케 함으로 써 응답자들이 자신의 심리상태를 수량화하는데서 겪는 혼란을 줄일 수 있음.
실시방법	자기보고식. 자신의 상태를 4개 문장 중 하나에 표시하도록 함.
채점방법	1) (1)번 = 0점, (2)번 = 1점, (3)번 = 2점, (4)번 = 3점으로 채점. 2) 각 문항 점수를 합신하여 총점을 구함.
해석지침	1) 점수의 범위: 0 - 63점 0 - 9점: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 - 15점: 가벼운 우울 상태 16 - 23점: 중한 우울 상태 24 - 63점: 심한 우울 상태 2) 한국판 연구 - 우울환자 집단(39명): 평균점수 23.46점 (표준편차 8.43) 일반인 집단 (51명): 평균점수 8.43점 (표준편차 5.39) - 우울집단 선별을 위한 절단점으로 16점을 제시.
척도의 출 처	1) 한국판: 이영호, 송종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 리학회지: 임상, 15권 1호, 98-113. 2) 원판: Beck, A. T.(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Row

이름 : _____ 연령 : ____세 성별 :남 / 녀 작성일 : 년 월 일

이 질문자는 여러분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내용은 모두 네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네 개의 문장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 중 요즈음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문장을 선택하여 그 점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빼지 말고 반드시 한 문장만을 선택하시되,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호	질 문	점수
	1) 나는 슬프지 않다.	0
4	2) 나는 슬프다.	1
1	3)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2
	4)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3
	1)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0
2	2) 나는 앞날에 대해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	1
۷	3)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느낀다.	2
	4) 나의 앞날은 이주 절망적이고 나이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3
	1)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0
3	2) 나는 보통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1
3	3)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투성이인 것 같다.	2
	4) 나는 인간으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3
	1) 나는 전과같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0
1	2) 나의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	1
4	3) 나는 요즘에는 어떤 것에서도 별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2
	4)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싫증난다.	3
	1)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0
5	2)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1
5	3)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다.	2
	4) 나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3
	1)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0
C	2) 나는 어쩌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1
6	3) 나는 벌을 받을 것 같다.	2
	4)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3
	1)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0
7	2)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1
/	3)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2
	4)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한다	3

번호	질 문	점수
	1)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0
0	2)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을 탓하는 편이다.	1
8	3)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탓한다.	2
	4)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다 내 탓이다.	3
	1)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0
9	2) 나는 자살할 생각을 기끔 하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1
Ü	3) 지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2
	4) 나는 기회만 있으면 지살하겠다.	3
	1) 나는 평소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0
10	2)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1
10	3) 나는 요즈음 항상 운다.	2
	4) 나는 전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지만, 요즈음은 울래야 울 기력조차 없다.	3
	1) 나는 요즈음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는 편은 아니다.	0
11	2) 나는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진다.	1
11	3) 나는 요즈음 항상 짜증을 내고 있다.	2
	4)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에 요즘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3
	1)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0
12	2) 나는 전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1
12	3)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2
	4)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3
	1)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0
13	2) 나는 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1
10	3) 나는 전에 비해 결정 내리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2
	4) 나는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3
	1)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더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0
14	2) 나는 나이 들어 보이거나 매력 없어 보일까봐 걱정한다.	1
14	3) 나는 내 모습이 매력 없게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
	4)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3
	1) 나는 전처럼 일을 할 수 있다.	0
15	2)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에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든다.	1
10	3) 무슨 일이든 하려면 나 자신을 매우 심하게 채찍질해이만 한다.	2
	4)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3
16	1)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가 있다.	0
	2) 나는 전에 만큼 잠을 자지는 못한다.	1

번호	질 문	점수
	3) 나는 전보다 한 두 시간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2
	4) 나는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 수 없다.	3
	1)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0
17	2)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1
17	3) 나는 무엇을 해도 피곤해진다.	2
	4)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3
	1)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	0
18	2) 나는 요즈음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1
10	3) 나는 요즈음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2
	4) 요즈음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3
	1) 요즈음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0
	2) 전보다 몸무게가 2Kg 가량 줄었다.	1
19	3) 전보다 몸무게가 5Kg 가량 줄었다.	2
	4) 전보다 몸무게가 7Kg 가량 줄었다	3
	5) 나는 현재 음식 조절로 체중을 줄이고 있는 중이다.	예 아니요
	1)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0
20	2) 나는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	1
20	3) 나는 건강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생각하기 힘들다.	2
	4)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다.	3
	1) 나는 요즈음 성(sex)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0
21	2)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1
۷۱	3)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2
	4) 나는 성(sex)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3

○ 병기자 기록란: 종섬 병가

노인건강관리서비스 (구)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뇌에 기가 팍팍(구. 찾아가는 맞춤형 치매예방교실) - 자살생각 척도 (SSI)

착도 내용		자살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는 도구 Beck, Kovacs 및 Weissman (1979)의 자살생각 척도로 자살시도 전에 자살에 대한 생각의 심각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현재 자살의도의 정도를 수치화한 도구임.				
실시 뱅법	자기보고식. 19문항으로 구성됨					
채점 방법	각 문항을 0점에서 2점으로 평정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구함					
	점수의 범위는 0~38점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평가	
해석지침		16-19점	14-17점	9-11점	경도	
		20-23점	18-21점	12-14점	중등도	
		24점 이상	22점 이상	15점 이상	고도	
척도의 출 처	Beck, Kovacs 및 Weissman (1979) 심민섭 (1990) 한국어판 자기보고형 SSI 의 내용임					

이름: ______ 연령: ____세 성별: 남/녀 작성일: 년 월 일

이 질문자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내용은 모두 네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네 개의 문장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 중 요즈음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문장을 선택하여 그 점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빼지 말고 반드시 한 문장만을 선택하시되,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호	질 문		점수
		보통 혹은 많이 있다.	0
1	살고 싶은 소망은?	약간 있다.	1
		전혀 없다.	2
		전혀 없다.	0
2	죽고 싶은 소망은?	약간 있다.	1
		보통 혹은 많이 있다.	2
	H7 H0 N0 / T 7 H0	사는 것이 죽는 것 보다 낫기 때문이다.	0
3	살고 싶은 이유 / 죽고 싶은 이유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1
	VIII ∟: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2
		전혀 없다.	0
4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려는 욕구가 있는가?	약간 있다.	1
		보통 혹은 많이 있다.	2
	별로 적극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자 살욕구가 생길 때는?	생명을 건지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할 것이다.	0
5		삶과 죽음 을 운명에 맡기겠다.	1
		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	2
		잠깐 그런 생각이 들다가 곧 시라진다.	0
6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나 소망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	한동안 그런 생각이 계속된다.	1
		계속, 거의 항상 그런 생각이 지속된다.	2
		거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0
7	얼마나 자주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	1
		그런 생각이 계속 지속된다.	2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0
8	자살 생각이나 소망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양가적이나 크게 개의치 않는다.	1
		그런 생각을 받아들인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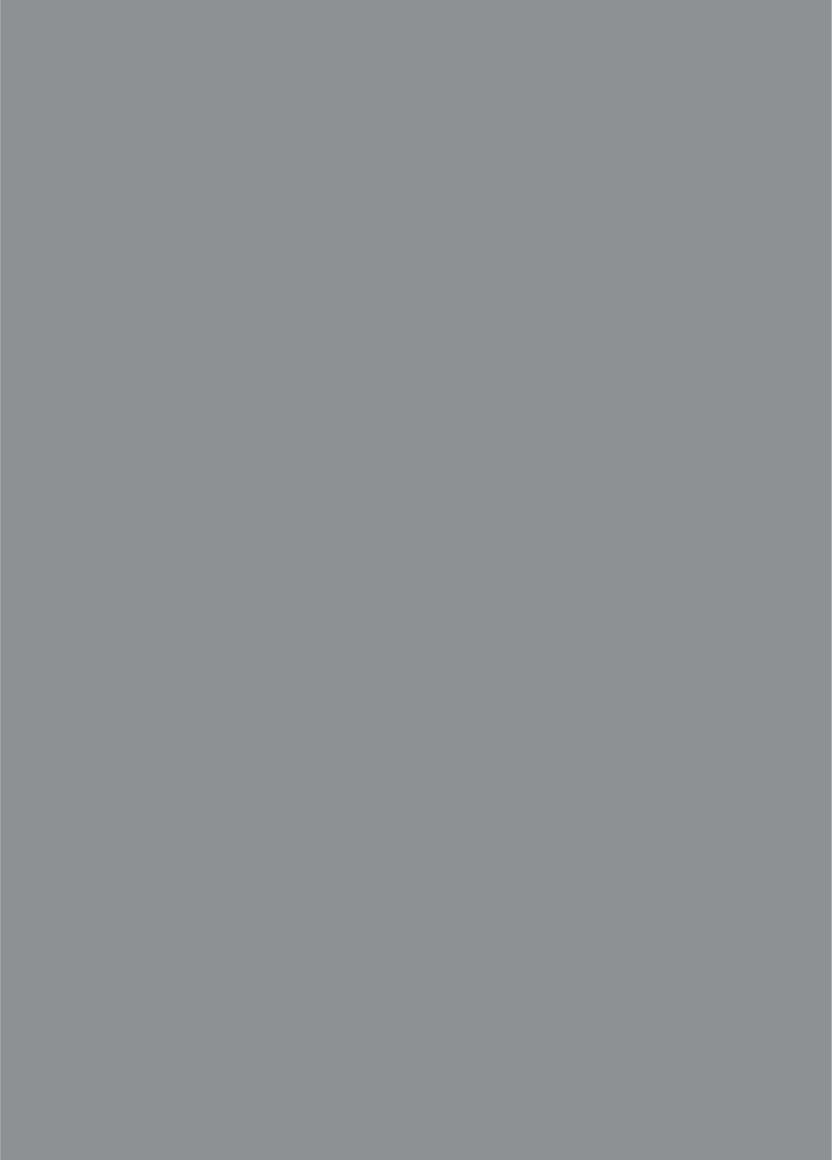
번호	질 문		점수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0
9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통제할 수 있 는가?	통제 할 수 있을지 확신 할 수 없다.	1
		전혀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	2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한	방해물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0
10	방해물이 있다면? (예: 기족, 종교,	방해물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쓰인다.	1
	다시 살 수 없다는 생각 등)	방해물에 개의치 않는다.	2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0
11	자살에 대해 깊게 생각 해 본 이유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 관심을 끌거나 보복하기 위해서	0
11	는 ?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보복하거나, 현실 도피의 방법 으로	1
		현실 도피적인 문제해결 방법으로	2
	자살에 대해 깊게 생각 했을 때 구 체적인 방법까지 계획했는가?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0
12		자살 생각을 했으나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1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하고 치밀하게 생각해 놓았다.	2
		방법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고, 기회도 없을 것이다.	0
10	지살 방법을 깊게 생각 했다면 그것 에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 며, 또한 시도할 기회가 있다고 생 각하나?	방법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것 이다.	1
13		생각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며, 기회도 있을 것이 다.	2
		<u>앞으로</u> 기회나 방법이 생길 것 같다.	2
	실제로 자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용기가 없고 너무 약하고 두렵고 능력이 없어서 자살 할 수 없다.	0
14	있다고 생각하나?	자살 할 용기와 능력이 있는 지 확신 할 수 없다.	1
		자살 할 용기와 자신이 있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0
15	정말로 지살 시도를 할 것이라고 확 신하나?	잘 모르겠다.	1
		그렇다.	2

번호	질 문		점수
		없다.	0
16	자살에 대한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 실제로 준비한 것이 있나?	부분적으로 했다(예: 약을 사 모으기 시작함).	1
		완전하게 준비했다(예: 약을 사 모았다).	2
		없다.	0
17	자살하려는 글(유서)을 쓴 적이 있는 가?	쓰기 시작했으나 다 쓰지 못했다: 단지 쓰려고 생각했다.	1
		다 써 놓았다.	2
		없다.	0
18	죽음을 예상하고 마지막으로 한 일 은 무엇인가?	생각만 해 보았거나, 약간의 정리를 했다.	1
		확실한 계획을 세웠거나 다 정리를 해 놓았다.	2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0
10	지살에 대한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	다른 사람에게 터놓고 이야기 하였다.	0
19	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속이거나 숨겼습니까?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다가 숨겼다.	1
		그런 생각을 속이고, 숨겼다.	2

○ 평가자 기록란 : 총점 평가	
-------------------	--

제3장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및 선정기준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기준

1. 신청기간

- 2022. 1. 24.(월) ~ 2. 4.(금) 단, 잔여예산 발생 및 대기자 소진 시 연중 추가 모집 가능

2. 서비스 신청

1) 신청

- (신청조건1) ①소득+②연령+③가구특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조건2) ④ 우선순위 입증서류는 <u>가장 높은 우선순위 1건에 대한 서류만 제출 가능.</u> 단, 구군 및 읍면동에서 확인 가능한 우선순위 입증서류 미제출
- (신청조건3) ① '21.12.9.~10. 구군 담당자 의견 조사결과, 부산광역시 이용자는 1인 1개 바우처(지역 사회서비스)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②전년도에 선정 된 A서비스 이용자(서비스 시작월이 '21년 4월 이후인 자)가 당해연도 B서비스 신규 신청 가능. 단, 전년도에 선정 된 A서비스 이용자(서비스 시작월이 '21년 4월 이후인 자)가 당해연도 B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할 경우, B서비스 선정 시 A서비스는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
- (신청권자)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발급대상자, ② 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 ③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보호자의 동의 필요. 단,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동의 생략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④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발급대상자의 요청 시 신청 지원)
- ※부산지역사회서비스 홈페이지(www.ssbn.or.kr) → 서비스 정보와 제공기관 위치 확인
- 2)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3) 제출서류

- (공통)[제1호 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공통)[제7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공통)[제5-2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만 14세 미만) [제5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신청서
- (만 14세 미만) [제6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카드 발급 시) [제5-1 서식]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해당 시) [별지 제5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 추천서
- (해당 시) 우선순위 관련 서류 1건

4) 온라인 신청 플랫폼 운영 : 부산지역사회서비스 온라인 신청 웹

- (목적) 온라인 신청 플랫폼으로 신청한 이용자 중에 우선순위에 따라 가선정된 이용자에 한하여 주민 센터 방문 신청을 안내하여 대면 신청을 최소화하고자 함
- (운영 구군) 동구, 사상구에서 시행하는 시도 및 구군사업 ※'21년 구군사업에 시범 도입
- (온라인 신청 플랫폼 활용방법) 서비스 신청 웹 접속 → 개인정보 입력 → 신청자격 입력 → 우선순 위 입력 → 제출서류 확인 → 우선순위에 따라 가선정 시 안내 문자 발송 →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소득+연령+가구 특성+우선순위 입증서류 확인 → 미선정자는 대기자 명단으로 관리 및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 신청 문자 발송

3. 이용자 선정 결과 알림

1)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통지서와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 우편 배송

- [제2호 서식] 사회보장급여(결정, 변경, 정지, 중지, 상실) 통지서
- [제10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 안내문



4.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 절차 p.146 참조

1) 서비스 계약

- 이용자가 선호하는 제공기관을 직접 알아보고 선택 → www.ssbn.or.kr 활용
- [제36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제34호 서식]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2부 작성 후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각각 보관
- [제32호 서식] 초기상담기록지, [제4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이용 동의서(이용자용)
- 세부 사업의 효과성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사전검사 실시(계약 후 1개월 이내)

2) 본인부담금 매월 사전 납부

-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 → 계좌이체 원칙, 카드 및 현금 납부 가능
- 현금 납부 시. [제30호 서식] 본인부담금 영수증 발급

3) 서비스 이용

-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 내용을 [제37호 서식]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작성
- 이용자는 [제37호 서식]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회당 이용자 서명 필수
-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로 정부지원금 결제

4) 서비스 종결

- [제8·9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안내문(예시1·2) 작성 및 발송
- [별지 제6호 서식] 이용자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분석도구에 입력 및 분석 결과 활용
- 세부 사업의 효과성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사후검사 실시(종료 전 3개월 이내)
- [제42호 서식] 서비스 종료(상담) 보고서 작성

5) 추가 구매

- 제공기관과 계약(추가 구매 횟수·비용)을 통해 지역사회서비스 추가 구매 가능

※추가구매란?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기준정보(연령, 서비스 내용)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선정기준



1. 소득·연령·가구특성 3가지 조건 충족 시 서비스 신청 가능

- 1) 소득: 가구원 수 기준으로 일정한 기준중위 소득 이하(세부 사업별 상이)
- 2) 연령: 출생연도 기준(세부 사업별 상이. 단, 연령이 속한 출생연도 모두 인정)
- 3) 가구 특성: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욕구를 입증하는 기준(세부 사업별 상이)
- 4) 신청과 선정 기준: (신청 기준)소득+연령+가구특성, (선정 기준)신청기준+우선순위

2. 이용자 우선순위 접수도구 활용 방안

- 1) 우선순위: 세부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자 선정. 선정 외 자는 대기자 명단으로 관리
- <u>구군 및 주민센터 담당자는 이용자 우선순위 접수 도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부산시 및 지원단의</u> 요청 시 제출해야 함.

2) 우선순위 적용기준(구군별 상이)

- 구군 기준: 구군 내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권 선정 → 우선순위 형평성
- 주민센터 기준: 주민센터 내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권 선정 → 지역 형평성

3) 우선순위 동순위 선정기준(권장사항)

- 확률표본추출방법의 체계적표본추출법(계층표집)
- 체계적표본추출법: 추출 단위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간격으로 나눈 후 첫 구간에서 하나의 번호를 무작위로 선정한 다음, 등간격으로 다음 번호들을 계속해서 추출해 나가는 방법

모집단	표본프레임의 선정	표본추출방법의 결정	표본크기의 결정	표본 추출
신규 신청자	이용자 우선순위 접수도구에 입력된 신규신청자 명단	확률·체계적 표본추출법 적용	세부사업별 선정 가능한 이용자 규모 결정	이용자 우선순위 접수도구의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체계적 표본추출 법 적용

- 동순위 선정기준 적용사례1

모집단	표본프레임의	표 본추출 방법의	표본크기의	표본 추출
工品口	선정	결정	결정	工亡 宁芝
A사업 신규 신청자 1 순위 100명	우선순위 접수도구 일련번호에 따라 1순위 100명 입력	확률·체계적 표본추출법 적용	구군에서 A사업 선정 가능이용자 결정 (예시 50명)	1. 등간격 계산 100명÷50명=2명 [↑] 2. 일련번호 1,2번 중 무작위 선정(예시 2번) [↑] 3. 등간격으로 선정 가능한 이용자 수 만큼 표출(2,4,6)

- 동순위 선정기준 적용사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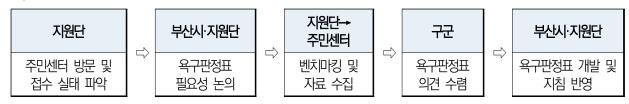
신청자 수	선정 가능 이용자 수	등간격 계산식	등간격	최초 선정자 무작위표출	이용자 선정
100명	30명	100명÷30명= 3.33	3명	일련번호 1~3번 중 무작위 선정	2(무작위),5 ,8,11

3. 욕구판정기준표

1) 욕구판정표 표준화

- 구군 또는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별 이용자의 신청 욕구(가구 특성·우선순위 등) 입증서류를 신속·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조사표
- 구성 내용 : ① 신청 서비스명, ② 신청일 및 신청자, ③ 서비스별 선정기준(소득, 연령, 가구 특성),
 - ④ 서비스별 우선순위(서비스별 상이), ⑤ 서비스 신청 시 제출서류, ⑥ 담당자 확인

2) 제작 절차



3) 활용방안

- '22년 부산시 지침(p.163) 내 욕구판정표 표준화 반영(빈서식), 서비스별 활용 가능한 욕구판정표 부산지 원단 홈페이지(www.ssbn.or.kr) 내 별도 공지 및 구군 담당자 배부
- 구군 및 주민센터 기준 서비스별 이용자 신청·접수 시 활용(권장)

4. 대기자 선정관리 → 보건복지부 지침 준용

- 이용자 우선순위 접수도구를 활용하여 대기자 선정관리

5. 공공전달체계를 통한 이용자 선정 절차

- 1) 공공전달체계란?
-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연계된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
-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급여
- (부산광역시) 의료급여·통합사례관리사,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부산교육청)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

2) 이용자 연계 및 선정 절차

드림스타트, 의료급여 → 지역사회 구군	지역사회 구군 → 주민센터	이용자	주민센터	지역사회 구군
대상자 발굴 및	추천자 명단	서비스	공공전달체계	이용자
이용자 추천(공문 추천)	공문 전달	신청	이용자로 접수	선정

6. 시도사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신규이용자 선정 가이드

※ 구군 내 단일 서비스(사업코드 기준)에 구군의 예산 총액 대비 50% 초과 선정 지양

1) 가족마음이음서비스 (구)자녀의 성공을 돕는 부모코칭

- '22년 1~2월 신규이용자 1차 접수 및 선정 → 7~8월 신규이용자 2차 선정. 단, 구군의 대기자 및 예산을 고려하여 수시 선정 가능.

2) 청년 마음건강 신규사업('22년 시행 예정)

- ('22년 상반기) 사업설명회 및 제공기관 신규등록
- ('22년 상반기) 지역사회 구군 담당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제공기관에 이용자 발굴 협조 문서시행 → 수시 이용자 접수 및 선정

3) 아동건강관리서비스

- '22년 사업폐지 및 신규이용자 선정 불가, 단, '21년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기간까지 이용 가능.

7. 구군사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신규이용자 선정 가이드

1) 부모-자녀 상호작용증진서비스

- '22년 시행지역 확대(서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 북구)

2) 행복한 중년 건강관리서비스

- ('22년 1~2월) 지역사회 구군 담당자 → 국민체육센터, 마을건강센터, 제공기관에 이용자 발굴 협조 문서 시행 → ('22년 3~9월) 수시 이용자 접수 및 선정

3) 1인가구 중장년층의 신체정신건강 통합서비스

- '22년 사업폐지. 단, '21년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기간까지 이용 가능.

4)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22년 1~2월) 지역사회 구군 담당자 → 구군 통합사례관리사·의료급여사례관리사·사회복지관·제공기관에 이용자 발굴 협조 문서 시행 → ('22년 3~9월) 수시 이용자 접수 및 선정
- 사회복지관장 및 제공기관장 추천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욕구조사표[서식 p207] 작성 및 서비스 제공계획[서식 p208] 수립 → 보관 및 제출

5) 식사영양지원서비스

- ('22년 1~9월) 부산진구 담당 부서 간 협의를 통해 '22년 신규이용자 선정. 단,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고려하여 해당 서비스의 수요 책정.

6) 이바구 놀이터 및 7) 아동놀이활동 지원서비스

- '22년 1~2월 신규이용자 1차 접수 및 선정 → 7~8월 신규이용자 2차 선정
- '22년 서비스 제공실태 분석결과에 따라 '23년부터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와 통합 운영 예정.

8) 청년심리지원서비스

- '22년 시범사업 종료 → '22년 청년 마음건강 시도사업으로 확대 시행.

8. 구군의 서비스 유형별 예산집행 상한기준(권장사항)

- 1) '22년 예산집행 비율 상한기준(권장사항)
- 구군 내 단일 서비스(사업코드 기준)에 구군의 예산 총액 대비 50% 초과 집행 지양

2) '20년 구군별 예산 총액 대비 서비스 유형별 예산집행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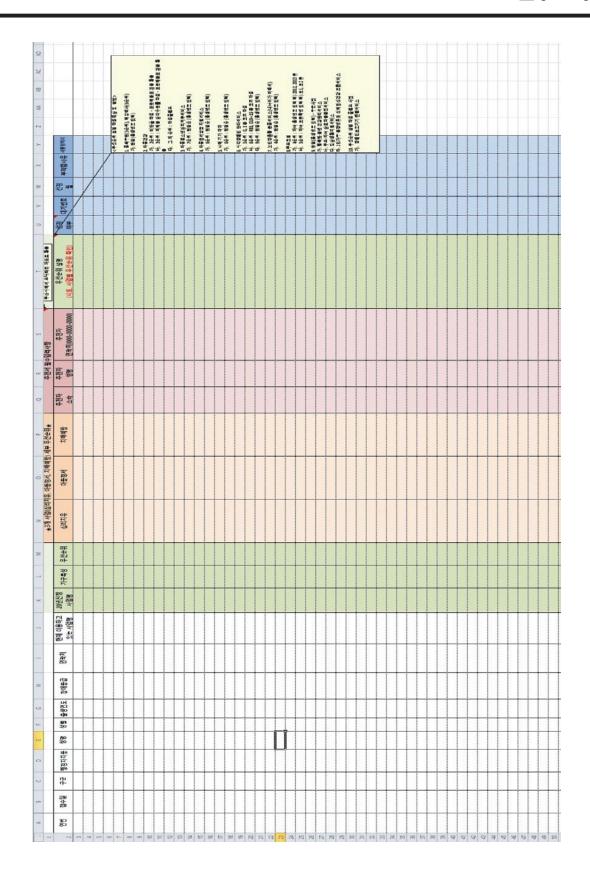
(단위:%)

		상담			재	활		돌봄	역량	강화	구군	구군 예산
구분	심리 치유	아동 정서	부모 코칭	아동 건강	노인 건강	보조 렌탈	시각 안마	치매 예방	동화 구연	해양 역사	사업	집행 비율
부산시	27.4	10.5	9.3	1.0	2.9	1.2	32.1	4.4	3.8	5.4	2.0	100
<u> </u>		47.2			37	7.2		4.4	9	.2	2.0	100
강서구	42.3	20.1	13.0	1.0	0.0	1.7	4.8	2.0	7.6	7.4	0.0	4.1
금정구	30.1	13.7	8.0	1.3	7.8	1.8	21.9	7.4	4.6	3.4	0.0	5.0
기장군	32.1	18.2	10.2	0.9	0.1	1.6	14.5	1.8	11.8	8.8	0.0	4.6
남구	19.0	10.6	12.3	1.3	8.1	1.8	25.5	4.7	4.1	5.0	7.6	6.9
동구	17.9	6.0	6.6	0.0	2.4	0.9	49.6	2.0	1.8	1.1	11.7	2.7
동래구	30.7	10.5	9.3	1.9	0.8	1.5	33.6	2.8	4.4	4.5	0.0	6.5
부산진구	26.0	5.9	7.7	1.2	2.9	1.0	41.8	2.4	2.4	5.0	3.7	13.3
북구	24.5	10.0	11.4	1.1	1.6	1.2	31.7	5.3	3.0	9.8	0.3	8.7
사상구	37.0	10.2	8.1	0.1	2.8	0.7	28.1	6.2	2.4	4.5	0.0	8.2
사하구	30.1	13.0	7.8	1.2	3.3	1.2	27.3	5.5	4.5	6.2	0.0	8.9
서구	28.6	11.3	7.3	0.1	0.8	0.5	40.1	2.7	2.6	4.9	1.0	3.2
수영구	19.2	7.9	10.3	0.5	2.2	1.4	41.2	5.4	2.4	1.4	8.0	4.5
연제구	26.7	8.7	12.4	1.4	0.7	1.8	31.4	4.8	4.5	6.5	1.1	6.6
영도구	16.8	10.2	4.6	1.3	9.6	0.5	40.5	9.3	1.1	3.7	2.5	5.3
중구	13.1	3.0	2.8	0.0	3.9	0.0	66.1	10.0	0.7	0.4	0.0	1.5
해운대구	29.5	10.7	10.9	1.1	0.6	1.4	34.6	2.0	3.4	5.8	0.0	10.0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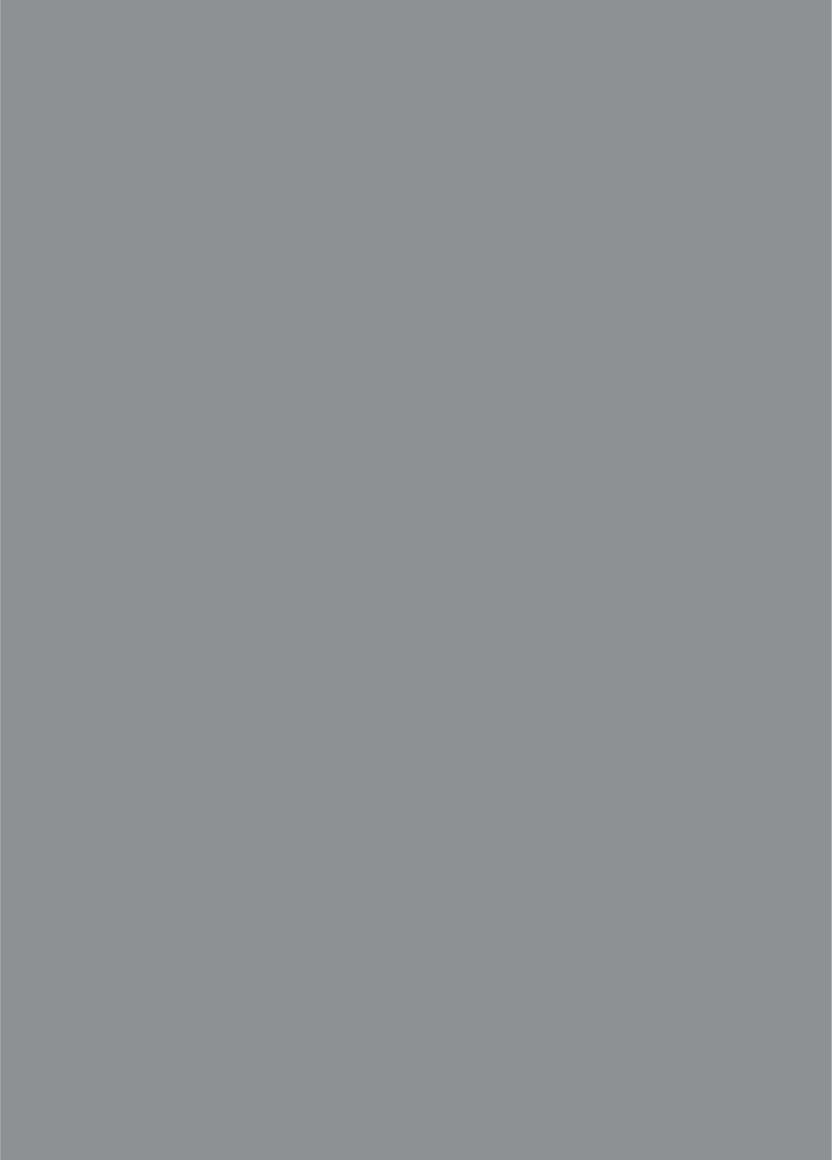
		상담			재	활		돌봄	역량	강화	구군	구군 예산
구분	심리 치유	아동 정서	부모 코칭	아동 건강	노인 건강	보조 렌탈	시각 안마	치매 예방	동화 구연	해양 역사	사업	에 년 집행 비율
부산시	27.9	9.7	8.2	1.1	1.7	1.2	32.0	4.2	3.8	5.3	4.0	100
구산시		45.8			36	3.0		4.2	9.1		4.8	100
강서구	42.9	19.2	10.7	1.1	0.0	1.3	5.7	2.4	8.5	8.1	0.0	4.8
금정구	37.4	11.3	9.1	1.9	2.3	1.6	24.2	6.0	3.1	3.2	0.0	6.1
기장군	32.6	19.2	9.3	0.7	0.0	1.2	16.5	1.4	8.9	10.2	0.0	5.2
남구	21.5	9.8	8.8	0.9	5.0	1.1	30.0	2.5	2.8	4.9	12.7	8.4
동구	12.6	6.7	4.7	0.4	0.7	0.7	49.7	2.4	3.1	1.2	17.7	3.2
동래구	30.7	6.1	4.6	0.8	0.3	1.9	45.2	1.8	3.7	2.7	2.2	7.1
부산진구	24.7	6.4	7.2	1.6	2.2	1.2	33.5	3.8	1.7	4.4	13.4	11.1
북구	22.8	5.8	9.5	2.1	0.2	1.9	27.3	8.1	3.7	6.8	11.8	6.5
사상구	34.7	11.7	5.6	0.2	1.5	0.4	30.8	7.6	3.7	3.8	0.0	9.0
사하구	29.7	10.8	7.0	1.5	3.9	1.2	29.3	5.0	4.6	7.1	0.0	7.2
서구	30.7	13.8	6.0	0.0	0.4	0.4	36.3	2.5	2.2	6.8	1.0	3.5
수영구	16.5	4.9	12.6	1.0	0.9	1.7	46.0	3.8	2.3	1.5	8.8	5.0
연제구	26.1	9.3	9.1	2.1	0.1	1.4	31.1	5.1	4.3	7.1	4.3	5.1
영도구	16.7	10.3	4.9	2.2	7.1	0.8	39.2	11.1	0.9	5.3	1.4	4.4
중구	24.0	2.7	5.8	0.2	1.8	0.2	54.4	8.4	0.4	2.1	0.0	1.5
해운대구	30.8	8.5	12.0	0.6	0.1	1.4	33.5	1.0	4.9	7.3	0.0	11.9

이용자 우선순위 접수 도구



제4장

제공기관 등록·변경·휴업·폐업



부산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

제공기관 등록 시 관련 목록

세 부 내 용	페이지
● 등록제 개요	122
● 제공자 등록기준	122
- 시설·장비 기준	122
- 추가확보시설 등록 제한	123
- 인력 배치 기준	123
- 교육훈련 기준	124
- 시설·장비·인력의 공동 이용	125
- 제공자 결격사유	125
● 제공기관 등록절차 및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27
● 제공기관 등록 접수 및 심사	128
- 제공기관 등록 접수	128
- 제공기관의 사업 범위	129
- 등록의 유효기간	129
-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및 등록증 발급 (시·군·구 담당자 처리사항)	129
●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과	130

1. 목적

-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2. 법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자 등록기준

1. 시설·장비 기준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설·장비 기준

사회서비스 유형	시 설 기 준	장 비 기 준
재가방문서비스 (재가방문형)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활동보조서비스 (집단활동형)	ME TOWN PAC MIE	
지원상담서비스 (기관방문형)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보건ㆍ위생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 및 신규 시설 등록의 경우 위의 기준에 따름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필수 장비: 인터넷, 컴퓨터, 전화, FAX, 기타 사무용 집기

※ "회당 이용정원 10명"의 개념은 서비스 1회당 함께 서비스 제공받는 한 그룹의 총 인원을 의미

2) 부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설기준

- 2022년 부산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유형(시설기준) 적용
 - ※ 신규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 사업별「변경된 신규등록기관 시설기준」적용
 - ※ A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00제공기관이 B사업을 신규로 등록할 경우 사업별 「변경된 신규등록기관 시설기준」적용
 - ※ A사업에 등록되어있는 00제공기관이 시설 이전 시「변경된 신규등록기관 시설기준」적용

1-1. 추가확보시설(협력기관1)) 등록 제한

- 1) 추가확보시설은 제공기관에서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시설(학교, 사회복지시설, 수영장, 운동장 등)을 활용할수밖에 없는 경우만 추가확보시설로 등록 가능
 - ※ 단, 시설 사용 관련 계약서(협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 지점 형태의 운영 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체육관, 학원, 교습소 등의 장소 계약을 통해 일부 시간대와 특정 요일에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가
- 2) 추가확보시설의 지점 형태 운영 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제공기관 시설 기준 확보 등 자체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시설은 별도의 제공기관으로 등록
 - ※ 단, 타 업종 제한에 대한 규정이 개별법에 없는 경우라야 함(교습소, 학원, 기타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추가시설뿐만 아니라 제공기관으로도 등록할 수 없음)
- 3) 추가확보시설은 이용자 모집 홍보 등을 추가시설 명의로 할 수 없고 등록된 제공기관 명의로만 가능
 - ※ 추가시설 등록은 이용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추가시설을 등록한다는 의미이며, 추 가시설 등록이 제공기관 등록 신고는 아님
-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집 (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p.286)

2. 인력 배치 기준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역 할	기관 대표자	이용자 및 제공인력 관리 등	기준정보 내용으로 이용자에게 실제 서비스 제공하는 자		
인원수	1명	1명	세부 서비스별 1명 이상		
자격기준	별도 자격기준 없음 (단, 이용권법 제17조의 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보건복지부 고시(제2016-228호) 및 동 고시 제4호에 따른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비고		결직 가능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예외 (보건복자부 고시 제2012-137호)		

¹⁾ 협력기관은 특화분야에 대한 전략적 제휴나 공동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협력기관으로서 추가시설과는 다르나, 현재 추가 시설을 협력기관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추가확보시설 개선방안과 동일하게 적용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예시) 제공기관 등록 시 경우), 서비스별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관리책임자 겸직하는 1명 이상 배치	※ 단, 서비스 제공 시에 지역
(신규 채용 등)이 있을 경	강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변경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법 라 해당 구군에 변경 등록하여야 함	사회서비스 제공계획(기준정 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 시 준수하여야 함

* (근거) 시행규칙 별표1 제5호(2016. 12. 27. 개정)

3. 교육훈련 기준

1) 등록 전 의무교육

-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 전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실시하는 ①**등록예정자 의무교** 육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개설하는 ②**사이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교육시간(1+2): 신규 제공기관 16시간, 시각정애인만나비스 신규 제공기관 4시간, 기존 제공기관 8시간
- 위 ①, ②의 교육이수증 제출 시 신규 제공자 등록 신청 가능 (단,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자는 ①의 교육만 이수·교육이수증 제출)

2) 등록예정자 의무 교육

- 대상: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
- 내용: (신규) 부산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준정보, 등록 서류 및 절차, 품질관리 등 (기존) 성과관리 교육 등
- 교육훈련 횟수: 반기 1회(연 2회)
- 교육훈련 일정: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
- 교육 신청 및 이수증: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교육이수증 발급
 - ※ 제공기관의 장이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 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관리책임자의 교육 참석 허용함(이수증 제출 시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의 교육이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함)
 - ※ A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00제공기관이 B사업을 신규로 등록할 경우도 기존제공기관 대상 등록예정자 의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등록예정자 의무 교육 이수 관련 안내사항
 - 등록예정자 의무 교육이수증의 유효기간은 교육시행일자로부터 6개월입니다.
 - 교육이수증은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중 1명의 교육이수증만 있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 등록예정자 교육을 받은 기관은 등록 후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오니 교육이수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사이버 교육

- 대상: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
- 내용: 상세한 교육과정은 부산지역사회서비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버교육) https://sscyber.kohi.or.kr
 - ※ 사회보장정보원(사이버교육) http://edu.ssis.or.kr/index.jsp

4. 시설·장비·인력의 공동 이용

- 1)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장비·인력 공동 활용 가능
-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가사간병, 노인돌봄, 산모신생아도우미)과는 인력 공동 활용 불가
- 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세부 사업 간에는 공동 활용 가능
- ※ 예시) A서비스와 B서비스 모두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합당한 홍길동 제공인력은 A서비스, B서비스에 모두 제공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음
- 3)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비 공동 활용 가능

5. 제공자 결격사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또는 법 인의 경우로서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로 등록 불가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공기관 등록절차

절 차	세부 내용	참고 내용
사회서비스 및 등록제 이해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제공자 등록 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 보원 사이버 교육 이수 사회서비스의 개념 등록제의 개념 	 부산지역사회서비스홈페이지 (www.ssbn.or.kr) 본 지침 제4장 제공기관 등록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		
제공 서비스 선택	시·도 사업 (광역)구·군 사업 (기초)	· 본 지침 제2장 부산지역사회서비스 투 자사업
~		
제공자 등록기준	· 시설·장비·제공인력 확보 - 사업 유형별 상이	· 본 지침 제2장 부산지역사회서비스 투 자사업
~		
구비서류 준비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등	• 본 지침 부록. 관련 서식
-		
세부사업별 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 소재지 구·군에 등록	• 본 지침 제4장 제공기관 등록
*		
등록 접수 및 심사	· 시·군·구 사업 담당	 등록신청 관련 서류 심사 등록기준 충족 여부 심사 제공자의 결격사유 인력의 자격 충족 여부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 여부 *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과 가능
~		
등록정보시스템 입력 및 결정·통지	· 시·군·구 사업 담당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의 제 공자 등록 정보 행복e음 입력·전송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등록증 발급
₩		
등록 내용의 공지	· 시·군·구 사업 담당	· 제공자 등록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 - 서면, 홈페이지 등 활용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서식번호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제12호 서식 제13호 서식	① 서비스 종류	①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⑥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계획과 충족 여부 판단
-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 법 제17조의 결격사유 미해당자
_	④ 법인	• 법인 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 계좌 ⑥ 시설기준	통장 사본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대표자 또는 제공자명 명의 통장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 '전용면적'이라 함은 등록된 사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 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 확인) 건물 등기부 등본 	회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 설 면적을 의미함
_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_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이동정서 : 필요한 약기보유라스트 및 수 등	- 해당 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 품 리스트를 작성
-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서류 없음	- <u>단, 이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는</u> 슈퍼비이저 자격기준 관련 서류 필요
제49,50호서식	⑩ 안전관리 계획	•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 교육 계획서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⑪ 인력기준	①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업무내용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명 작성 필요(부산시 추가)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단, 근무 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 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제23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제공인력용)	
_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학력 증명서(사업별 상이)	- 보건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②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제24호 서식		② 보안각서	
	⑩ 교육 이수	• 등록예정자 의무교육 이수증 • 사이버 교육 이수증	 등록자 교육은 부산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주관 교육만 인정함 사이버 교육은 부산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홈페이지에 공지된 교육과 정만 인정함
공통서식 1호	위임장	•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대표자 방문 원칙, 대리인 방문 시

제공기관 등록 접수 및 심사

1. 제공기관 등록 접수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1) 신청

- (1) 신청 장소: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시·군·구 지역사회서비스 담당과
- (2) 신청 및 작성 주체: 대표자(방문 접수 원칙)
- ※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접수 가능(위임장 작성 제출)
- ※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고 대표자 및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 (공통양식 제1호 참조)
- (3) 사업별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및 등록 관련 제출서류 전반(제출서류 목록)
 - ①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제12호 서식)
 - ② 사업자등록증.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다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근무 형태가 특수한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 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는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함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기입자명부 발급방법: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s://www.4insure.or.kr) 온라인 발급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오프라인 발급
- (4) 서류 작성 요령
 - 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서([제12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및 지역사회서비스 개요서)
 - 서비스 공급 내용에 제공기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요를 작성
 -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운영 계획서([제13호 서식] 제공기관 운영 계획서 p.185)
 -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군·구의 범위, 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제공인력 확보 현황·계획 및 자격, 시설 확보 현황, 연간 서비스 프로그램 개요를 작성·제출
 - 제공기관장은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과 계약 체결 시 일자리 참여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 및 정부 일자리 통합관리시스템에 제공하는 데 대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아 보관(제23호 서식)

2) 심사 방법

[공통사항]

- ①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제출 서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와 건물등 기부등본을 확인
- ② 제공인력 자격기준 확인(본 지침 제2장 2022년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 ③ 법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
- ※ 제공기관의 장 및 법인 임원을 대상으로 등록지 기준으로 법 제17조 제1~6호 사항 결격사유에 대해 서면 조회 실시(단, 제7호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에 확인 요청)
- ④ 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보완 지시

⑤ 등록 신청자에 대한 서면심사 및 실사 등을 통해 등록기준 충족 검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가 확인]

- ① 지역에서 계획된 사업과 제공자가 제출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서와 비교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인 지 검토
- ※ 서비스 프로그램 연간계획 및 내용, 횟수, 단가 등 검토하여 부적합한 경우 등록을 제한
- ② 제공인력에 대한 추가 검토
- ※ 해당 사업의 사업 계획서의 프로그램 내용을 참고하여 합당한 제공인력이 갖추어졌는지 확인

2. 제공기관의 사업 범위

- 1) 시도개발사업(광역): 부산 시민 모두 이용 가능
- 2) 구군개발사업(기초): 해당 구・군민 이용 가능
- ※ 2022년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0개 서비스(동화야 놀자~가족마음이음)는 시도개발사업(부산 시민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사업장 소재지 및 이용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부산시 전체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음

3. 등록의 유효기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 구조조정 등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경우 등록의 효력은 사라지며, 동법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에 따른 절차 없이 휴업 처리된 것으로 간주함

4.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및 등록증 발급 (시·군·구 담당자 처리사항)

- 1) 행복e음을 통한 등록정보 입력
 - 시·군·구 사업 담당자는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서 입력 후 전송
- 2) 전송된 정보는 전자바우처시스템과 연계되어 관리
- 3) 시스템 전송 완료 후 제공기관 정보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제14호 서식)에 별도 기재
- 4) 제공자 등록증(제15호 서식)을 발급 후 신청인에게 전달
- ※ 등록번호는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정보 입력 후 전송 시 자동 부여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과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 제3항)

제16조(제공자 등록)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제공기관의 적정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할 필요성

1) 연도별 지역사회서비스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지역사회	12,953	15,133	13,097	15,081	14,283	18,301	19,690	19,253	18,894	19,466	21,298	21,064
가사간병	1,469	1,469	1,469	2,326	2,406	2,108	2,529	2,034	2,754	3,919	4,268	3,853
산모신생	1,644	1,644	1,956	3,569	2,331	2,336	3,188	2,918	3,303	5,360	9,041	9,256
 계	16,066	18,246	16,522	20,976	19,020	22,745	25,407	24,205	24,951	28,745	34,607	33,595
증감률	_	13.6分	-9.4↓	27.0企	-9.3√	19.6分	11.7分	-4.7↓	3.1分	15.2分	20.4分	2.9↓
물가상승률	2.9分	4.0分	2.2分	1.3分	1.3分	0.7介	1.0分	1.9分	1.5分	0.4分	1.5分	2.6分

2) 등록제 시행(2012. 8. 5.) 후 제공기관 수

(단위: 개소)

구분 ²⁾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10
사업코드	56	60	108	197	186	428	496	818	1,037	1,296	1,333	1,401	1,422	1464
실기관	43	47	96	104	112	203	236	324	392	364	516	535	554	582
신규기관	4	3	23	18	88	259	177	326	336	479	234	207	153	101
폐업기관	_	_	6	4	15	33	25	52	91	223	143	155	163	62

3) 제공기관의 평균 이용자 수

(단위: 명)

구분3)	갱	귦	기장	땲	돵	동래	잔	똮	사상	사하	ᄱ	쒀	연제	뚕	쥸	해운	계
'16	34.8	31.1	32.0	49.9	25.8	24.4	33.6	21.1	36.6	22.0	48.4	34.9	28.4	65.7	19.0	36.2	34.0
'17	9.3	24.1	17.0	34.9	16.2	16.9	29.6	21.6	23.8	17.7	20.4	15.2	20.5	27.0	13.6	26.8	212
'18	8.8	19.4	15.8	32.8	19.5	16.2	21.4	20.5	20.0	23.1	23.6	13.9	17.2	32.4	14.1	25.8	20.3
'19	7.8	16.3	15.6	25.8	21.0	13.9	26.8	16.9	21.6	31.3	21.1	9.3	17.4	38.1	12.6	17.0	183
'20	13.1	16.4	17.0	21.9	26.7	16.5	32.6	16.8	25.2	25.4	17.0	11.0	15.8	41.8	162	17.3	19.4
21.10	17.2	15,3	16.1	20.7	22.4	14,3	26.5	11.5	28.1	20.9	17.5	10.6	14,0	39.3	15.4	16.0	17.6

²⁾ 자료 출처: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제공기관 현황

³⁾ 자료 출처: 사회서비스 통계분석시스템 이용자 수 ÷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제공기관 현황

2. 제공기관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과

연번	시행년도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과 내용
1	2016	· 신규기관 등록 전 등록예정자 의무교육 최초 시행
2	2017	· 추가확보시설 등록 규제
3	2017	· 제공인력 경력기준 향상, 민간자격 제외 등 제공인력 자격·등록기준 강화
4	2018	· 아동상담서비스의 제공기관장(또는 슈퍼바이져) 자격기준 도입 (2018년 시행 → 2021년 유예 → 2023년 최종 유예)
5	2019	· 이용자 집단규모에 비례한 전용면적 확보 후 등록 가능
6	2020	· 제공기관 등록예정자 의무교육 횟수 축소: 연 3회 → 연 2회
7	2020	· 등록예정자 의무교육 시간 확대: 신규(8 → 16시간), 기존(4 → 8시간) - (신규기관) 사이버 교육 4시간 + 지원단 교육 12시간 - (기존기관) 사이버 교육 4시간 + 지원단 교육 4시간
8	2020	· 제공기관 등록예정자 의무교육 이수증 유효기간 축소: 12개월 → 6개월
9	2020	· 신규 제공기관이 최초 제공기관 등록 시 1개 사회서비스만 등록 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발급일 기준으로 1년 후 추가사업 등록 허용
10	2020	· 현장점검 결과, 행정처분 시 처분일로부터 2년 내 신규사업 등록 제한
11	2021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공공성 강화 → 제공자 준지정제 적용
12	2022	 가족마음이음서비스의 제공기관장(또는 슈퍼바이져) 자격기준 도입 예정 (2022년 기획→2024년 3월까지 유예기간 적용)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공공성 강화 → 제공자 준지정제(등록 제한 및 조건 부여) 허용 구군 요청 시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일정표를 해당 구군에 보고

제공기관 등록사항 변경 및 제출 서류

세 부 내 용	페이지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192
- ① 서비스 종류	
- ② 신청인(대표자):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③ 기관명	
- ④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 ⑤ 설립 구분	
- ⑥ 시설기준: 시설면적, 설비, 비품	
- ⑦ 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수, 제공인력 수	
- ⑧ 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 ⑨ 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 ⑨ 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 ⑩ 지급 계좌, 예금주	
● 제공기관 등록사항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91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92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92

제공기관 변경 및 처리 절차



사회서비스 등록사항 변경기준

1. 사회서비스 등록사항 변경기준

1) 대표자 변경 시

연번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예정자 의무교육 이수	기존 등록 사업 수 유지		제출 서식	비고
1	동일	0	0	① 지위승계 신고서 및 관련 서류 ② 등록예정자 의무교육 이수증 ※ 해당 사례에 한하여 등록 6개월 이내 교육이수증 제출 예외적 허용(단,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6개월 내 등록 요건 미충족 시 폐업 처리)		행정처분 지위승계
2	변경	0	0	1안	① 지위승계신고서 및 관련 서류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 경신청서 및 관련 서류 ③ 등록예정자 의무교육 이수증	행정처분 지위승계
			1개 사회서비스 만 등록가능	2안	① 폐업 및 신규 등록 관련 서류 ② 등록예정자 의무교육 이수증	폐업 후 신규 등록

※2번 사례의 경우 제공기관 상황에 따라 선택(1안, 2안 中 선택)

2)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연번	대표자	등록예정자 의무교육 이수	기존 등록 사업 수 유지	제출 서식	비고
1	동일	X	0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및 관련 서류	기존 행정 처분결과 지속
2	변경	0	0	① 지위승계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 ③ 등록예정자 의무교육 이수증	행정처분 지위승계
		0	1개 사회서비스만 등록가능	2안 ① 폐업 및 신규 등록 관련 서류 ② 등록예정자 의무교육 이수증	폐업 후 신규 등록

^{※2}번 사례의 경우 제공기관 상황에 따라 선택(1안, 2안 中 선택)

3) 법인 관련 변경 시

연번	사 례	등록예정자 의무교육 이수	기존 등록 사업 수 유지	제출 서식 비고
	711011107117			1안 ① 폐업 및 신규 등록 관 폐업 후 년 서류 신규 등록
1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제공기관이 법인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X	0	2안 ① 지위승계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행정처분 ② 시회사비스 제공자 등록시항 지위승계 변경산청서 및 관련 서류
2	법인 대표 변경 (기관장 변경 X)	X	0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결과 지속

4) 기관 주소 변경(이사 등) 또는 추가로 기관을 개설할 때

연번	사 례	등록예정자 의무교육 이수	기존 등록 사업 수 유지	제출 서식	비고
1	(기관장 동일) A구 제공기관이 A구 내 에서 이동할 때	×	0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기존 행정처분 결과지속
2	(기관장 동일) A구 제공기관이 B구로 이전(이사)할 때 (폐업일자 기준 6 개월 이내)	X	7존사업수유지 (폐업일자 7준 6개월 이후는 1 개 사회서비스 만 등록 가능)	① 폐업 및 신규 등록 관련 서류 ② 폐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경험이 있는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록예정자의무교육 제외 증빙서류)	A구 기관 폐업 후 B구 신규 등록
3	(기관장 동일)A구 제공기관이 A구 또는 B구에 추가 로 기관을 개설할 때	X	1개 사회서비스만 가능	① 신규 등록 관련 서류 ②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경험이 있는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록예정자의무교육 제외 증빙서류)	별도의 신규 기관으로 간주

※ [구.군 담당자 참조사항] A구 폐업 및 B구로 이전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기관 및 이용자 상황을 고려하여 2번 사례(기존사업 수 유지)로 적용 가능하나, B구 담당자는 B구 등록일 기준 6개월 내 A구 폐업 여부 필수 확인(시스템 및 A구 담당자 확인 등)

2. 용어의 해석 및 참고사항

- ① 등록 관련 참고사항
- 신규 제공기관이 최초 제공기관 등록 시: 1개 서비스만 등록 가능, 사회서비스 제 공자 등록증 발급일 기준으로 1년 후 추가사업 등록 허용
- ※단,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 행정처분 시 최종 처분일로부터 2년 내 신규 사업 등록 제한
-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외 [사업 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 기존등록예정자 의무교육 기준에 따라 교육 이수 후 추가 사업 등록 가능(제4장 제공기관 등록 I-3, 교육훈련 기준 참조)
- ② 등록사항 변경신청 시 등록예정자 의무교육 이수 여부

→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제4장 제공기관 등록 I-3. 교육훈련 기준에 따른 등록 전 의무교육(신규 -16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예외) 과거 부산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경험이 있는 자(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가 대표자로 등록하는 경우 교육 이수한 것으로 갈음

X 등록 전 의무교육 이수 불필요

- ③ 지위승계신고서를 통한 변경 시
- : 지위승계신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추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요(단, 변경신청서에 명시된 변경사항의 경우만 가능) 순서 및 절차는 구·군 행정절차에 따름(구·군 문의)





제공자 휴업·폐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세 부 내 용	페이지
● 제공기관 휴업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업) 신고서	194
- 이용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	239
- (법인 경우) 휴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
● 제공기관 폐업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신고서	194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91
- 이용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	239
-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이관, 자체 보관)신청서	195
-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197
-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198

휴업·폐업 시 처리 절차

절 차	담당주체	내 용
신고서 작성	신고인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업).폐업 신고서 - 공통 제출서류 ·휴업 신고서 ·이용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 1부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업.(폐업) 신고서 - 공통 제출서류 ·신고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이용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 1부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이관, 자체 보관) 신청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		
접수	시·군·구 사업 담당	• 기준 충족 여부 접수 심사
-		
검토	시·군·구 사업 담당	• 기준 충족 여부 검토
-		
결재	시·군·구 사업 담당	• 검토 확인
-		
통보	시·군·구 사업 담당	• 제공기관 사실 확인 여부 통보

법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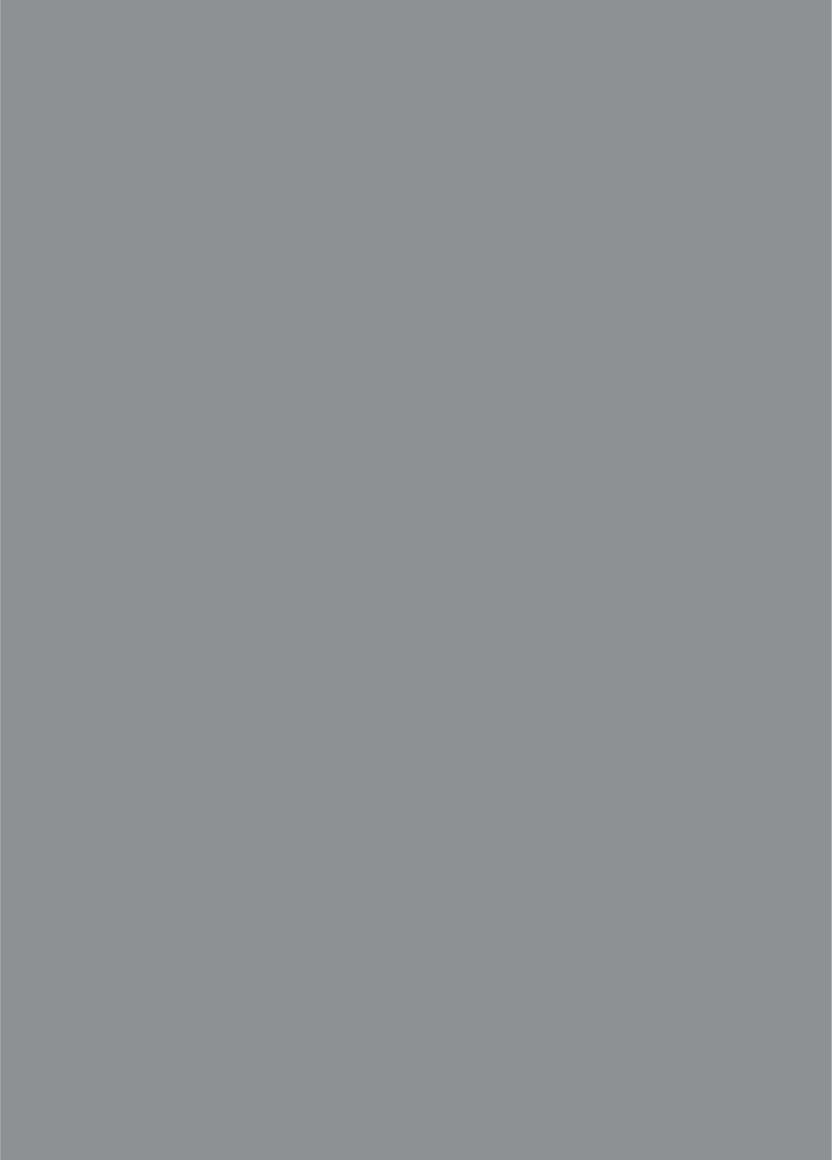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공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9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
- 제공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등록 시·군·구에 휴·폐업을 신고하여야 함
- 휴·폐업 예정 2개월 전까지 폐업·휴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기존 이용 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
 - ※ 휴·폐업 신고서 처리기한은 신고 시 기입한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처리
-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 전화로 휴·폐업 사실 통보
- 제공자가 행정처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 청
 문 및 행정처분서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기한 이내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 제공기관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경우 또는 제공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함(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9조제9항)

제5장 제공기관 운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및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설치 제공기관에서는 전자바우처 로그인을 위해 **기관장은 '보건복지용 공인 인증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발급**받으며, 사업별 담당자는 개인 금융권 공인인증서를 사용합니다.

단말기 신청 및 제공인력 정보등록 바우처 카드 결제를 위한 전용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단말기를 신청, 수령) 또한 사업별 제공인력에 대한 정보 및 급여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입력하며, 변경 시 구·군에 보고, 시스템에 변경 입력합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계약

이용자별 맞춤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기상담 및 접수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이후 "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를 작성·보관합니다.

본인부담금 수납

본인부담금은 해당 월 내에 서비스 가격을 납부해야하며, 납부 방식은 계좌이체가 원칙이나 현금 또는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작성, 가상계좌로 납부 불가)

세비스 제공 및 정부자원금 결제 기준정보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 제공 장소, 내용 등을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이용자에게 내용 확인 후 이용자 서명 및 제공인력 서명을 받습니다. 이후 서비스 결제방식(회당 결제, 월 결제)에 따라 바우처 카드를 통해 결제합니다.

효과성 측정 검사 실시

이용자의 변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효과성 검증도구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시·군·구 요청 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모니터링

이용자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응답 결과는 시·군·구 요청 시 제출합니다. (서비스 6개월 이상 이용자 대상으로 종료 시점 전까지 1회 실시)

세스 종결 및 추가구매

서비스 지원기간이 끝나면 **종결상담을 한 뒤** 추가로 서비스를 구매할지 를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추가 구매할 경우, 횟수 및 비용은 기관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결정)

시업추진실적보고서 제출

제공기관의 사업 추진 실적, 모니터링 결과, 접수만족도 결과, 효과성 측정 결과, 가격탄력제, 안전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해당 시·군·구 요청 시 제출

바우처 시스템 운영 절차

1. 제공기관 등록 후(서비스 제공 전) 단계

단계

업무 내용

기하

전자바우처 시스템 설치

- 전자바우처시스템(http://nevs.socialservice.or.kr) 설치
- '보건복지용 공인인증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발급)' 필요 (단, 기관에서 사용중인 범용인증서가 있을 경우 활용 가능)

_



제공기관 정보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등록된 제공기관 정보 정합성 확인
- 등록 정보 오류 시 시·군·구로 제공기관 정보 수정을 요청
- * 시스템 화면: 제공기관관리≫제공기관관리≫기본정보 조회/수정

등록 후 7일 이내



제공인력 정보 등록 1

- 제공기관에서 소속된 제공인력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 시스템 화면: 제공인력관리≫제공인력관리≫제공인력등록
- ** 제공인력 정보 등록 시 반드시 제공인력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 유형 정보를 등록해야만 정상 결제가 가능함에 유의
- *** 사업 유형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맞는 자격증 정보 입력 필수

등록 후 14일 이내



제공인력 정보 등록 2

- 제공기관에서 소속된 제공인력 정보를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에 등록
- * 홈페이지 화면: 제공기관관리≫기관정보등록 및 관리≫대상자추가

서비스 실시 전



계약대상자 정보 등록

- 제공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대상자 정보를 등록
- 대상자 정보 등록 후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인력을 매칭
- * 시스템 화면: 대상자관리≫서비스 대상자관리≫대상자등록

서비스 실시 전



단말기 신청

- 단말기 개통 후 신청 취소는 불가
- 단말기 개통 후에는 신청 취소가 불가능하며, "신규신청 단계 이후 개통 이전 단계에서는 단말기 보급사로 연락하면 변경 가능
- * 시스템 화면: 카드/단말기관리≫단말기관리≫단말기신청

서비스 실시 전

2. 서비스 제공 중간 단계

단계

업무 내용

바우처 생성 조회

- 제공기관에서는 매월 초(5일 이내) 이용자의 바우처 포인트(정부지원금)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
- * 계약 등록한 대상자만 조회가 가능하며, 미등록자는 조회 불가
- * 반드시 매월 초(5일 이내) 대상자별 바우처 생성 여부를 확인하고, 바우처가 생성된 대상자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



제공인력 결제 ID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제공인력 결제 ID를 확인하고 제공인력별로 안내
- 제공인력 정보입력 후 제공인력 현황조회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
 - * 시스템 화면: 제공인력관리≫제공인력관리≫제공인력현황조회
- ** "제공인력 현황조회" 화면에서 제공인력 ID 16자리와 제공인력 결제 ID 8자리 등 2종류의 ID가 조회되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결제를 위해서는 8자리의 제공인력 결제 ID를 활용



바우처 결제 • 관리

- 대상자 바우처 카드, 제공인력 결제 ID, 단말기를 활용하여 바우처를 결제 및 결제 내역 관리
- * 결제승인내역조회: 매출및정산≫결제내역관리≫결제(승인/취소) 관리



제공인력 CSI 급여 등록

- 매월 발생되는 제공인력 급여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록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제공인력 정보 등록 또는 다운로드 되는 양식(엑셀 등)에 제공인력 정보를 업데이트한 뒤 해당 월 급여 입력
- 전월 급여에 대하여 매월 6일부터 25일까지 시스템 등록
- * 화면별 상세 매뉴얼은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 및 자료실 참조

3. 서비스 비용

 _

업무 내용

비용의 지급

-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 제공 비용 청구 제공기관에 대해 월 3회(10일 단위 지급) 서비스 비용을 지급
-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별 예탁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
- 단, 매년 1월은 사업비 예탁일정 등을 감안하여 3차(2월 5일)에만 서비스 비용을 지급

과·오 청구 비용의 반환 등

- 제공기관은 자체 점검을 통하여 제공인력의 과·오 청구 여부를 확인
 - * 서비스 제공계획과 서비스 제공 시간(바우처 결제시간)을 비교하여 제공인력의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 지급 보류 대상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제20조제3항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청구 건 ※ (특별한 사유) 부정이 의심되는 이상결제 유형
- 소명방법: 지급보류일로부터 <u>14일 이내(토·일·공휴일 포함)</u>, 정상결제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청구 철회 등록
 - ※ 마감일 이후에는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 철회 등록이 시스템으로 자동 차단되며, 해당 건은 '부적정'으로 확인

예외 지급

- 대상자 및 제공인력이 서비스이용(제공) 후 결제매체(바우처카드, 단말기)를 통한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공기관의 결제 없이 예외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 실시간 결제가 불가한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전자 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신청·승인·지급 처리

4. 보고의 의무

1) 제공인력 CSI 급여관리

- 매월 발생되는 제공인력 급여 및 4대 사회보험 기입 여부 등록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제공인력 정보 등록 또는 다운로드 되는 양식(엑셀 등)에 제공인력 정보를 업데이트 한 뒤 해당 월 급여 입력
- 전월 급여에 대하여 매월 6일부터 25일까지 시스템 등록

【 제공인력 CSI 급여관리 일정 】

1. 서비스 제공비용은 매월 월 3회(10일 단위) 정기 지급일에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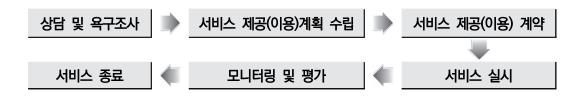
1 1 10 10 1		, 6 1 162 11 16
제공기관	~10일까지	사업별 제공인력 등록
부산지원단		급여등록 문자 안내
구·군 담당자	~25일까지	급여등록 승인(오류 확인 후)
부산시 담당자		승인누락 여부 최종 확인

- ※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에 공지된 날짜는 이 과정이 모두 포함된 처리 마감일이므로, 제공기관에서는 반드시 10일까 지 급여등록 완료해야 함
- 매월 급여 등록 시 제공인력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기입 유무 입력 ※ 제공기관에서 가입한 4대 사회보험 실제 가입 내역과 일치하도록 입력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15896호(2019. 07. 24.) 관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및 2019년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제공기관의 보고의 의무' 규정에 따라 제공인력의 급여정보 등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보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사항을 위반 시 같은 법 제6장 벌칙조항 제40조(과태료) 제1항제2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의무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절차



1. 서비스 제공 전 단계

단계

이용자 바우처 생성 확인

업무 내용

•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제공기관(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 전에 서비스 대상자별 바우처 생성 여부 및 바우처 잔량을 확인



초기상담기록지 작성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자를 면담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파악
- 서비스 제공 일정, 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 등을 파악
- 이용자의 구체적인 문제, 개인의 욕구, 가구 특성 등을 파악
- 접수만족도 조사 실시



서비스 제공 계획서 작성

•상담 시 파악된 이용자 본인 및 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제공인력이 작성





•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서"의 내용을 근거로 이용자와 사회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을 하며, 계약서는 제공기관 보관용 1부, 이용자 보관용 1부, 총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이용자용)

• 이용자의 기본 정보, 개인식별정보 등을 수집·활용하기 위하여 제공기관에서는 제공계약서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이용자용)을 함께 작성



효과성 검증 사전 검사

• 서비스별 필수 검사도구로 제시되어 있는 검사도구 중 한 가지를 활용하여 서비스 계약 후 1개월 내 사전검사를 실시



본인부담금 수납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당 월 내에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반드시 직접 납부

2. 서비스 제공 중간 단계

단계

서비스 실시

업무 내용

-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율적인 계약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및 일정표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이용) 후 단말기를 이용한 바우처 카드 결제로 서비스 비용을 결제

제공기록지 작성

- 제공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일시, 장소, 인력 등)을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기록
- 서비스 제공받은 회기 이용자 서명

정부지원금 결제

• (원칙) 실시간(회당) 결제로써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당일'에 결제 가능하되, 서비스를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 제공기관은 서비스 6개월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종료 시점 전까지 이용자별 모니터링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 양식으로 작성

3. 서비스 제공 후 단계

단계

효과성 검증 사후 검사 실시



•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도구로 서비스 종료 전 4분기 내 실시

서비스 종료 상담기록지 작성

• 서비스가 완료되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거나, 초기상담 시 사용했던 검사 도구 등을 활용하여 변화 정도를 측정하여 결과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



이용자 종료 통지 및 종료안내문

- •서비스 제공기관이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14일 전에 이용자에게 계약 해지 통지
-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7일 전에 제공기관에 계약 해지 통지

재판정

• 2022년 부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준정보'에 따라 재판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재신청 절차를 거쳐 연장 가능. 단, 대기자 수 및 재정 상황에 따라 구·군이 결정



추가 구매

•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서비스 대상자 전액 부담으로 추가 구매 가능

제공기관 운영 시 작성 및 관리 제출 서류 안내

1. 제공기관 관련 서류

1. 제공기관 등록증

2. 회계 관련 서류

3. 위험관리체계 구축 관련 서류

4. 제공인력 정보공개 관련 서류(권고)

5. 추진실적보고서 관련 서류

- 수입·지출, 추가구매 현황, 서비스 모니터링,

효과성 측정 등

-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추진실적보고서 작성 안내」 참고

2.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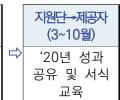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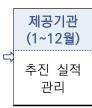
· 공통지표 : 계획 및 집행, 성과(사업관리, 제공인력 관리, 제공기관 관리)

· 지역특화 지표 :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u>서비스 효과성 향상</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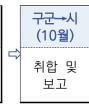
- 추진 절차

시	·지원단				
(1월)					
추	진 실적				
분	선 및				
성과	평가 반영				





	제공자→구군 (9~10월)
\bigcirc	추진 실적 현황 보고



	시→지원단 (10월)						
合	추진 실적 현황 분석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 대비 제공기관의 사업 추진 실적, 모니터링 결과, 접수만족도 결과, 효과성 측정 결과, 가격탄력제, 안전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해당 시·군·구에서 요청 시 제출

1) 수입·지출: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등 수입, 인건비, 재료비 등 지출 관리

제공기관 회계파일 서식 다운 경로

부산지역사회서비스 홈페이지(ssbn.or.kr) ▶ 참여광장 ▶ 공지사항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회계관리용 자동집계 파일 사용 알림」 ▶ 제공기관 회계관리용 자동집계파일(엑셀서식) 다운로드

- 2) 추가 구매 현황 관리
 - 서비스 이용 전·중·후 추가 구매 이용자를 구분하여 자료 관리
 - 서비스 이용 전 추가 구매 이용자: 바우처 이용자로 선정되기 전 제공기관에 자부담을 내고 한 번이라도 이용한 이용자
 - 서비스 이용 중 추가 구매 이용자: 이용기간 중 제공기관에 자부담을 내고 한 번이라도 이용한 이용자
 - 종료 후 추가 구매 이용자: 바우처로 선정되어 종료된 이후 자부담을 내고 추가로 한 번이라도 이용한 이용자

사업유형	서비스 이용 전·중·후 추가 구매 이용자 수(명) * 중복 제외	종료 후 추가구매이용자수(명)		

3) 서비스 모니터링

- 제공기관은 서비스 6개월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종료 시점 전까지 이용자별 모니터링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 양식으로 작성
- 반드시 본 지침 내 '이용자 모니터링 설문지'(별지 제6호 서식)로 모니터링 실시
- ※ 이용자 접수만족도 결과(<u>초기상담 시 접수만족도 설문 진행)</u>와 이용자 모니터링 설문 결과를 통합한 부산시 자체 개발한 모니터링 분석 툴 활용 권장

모니터링 분석 툴 다운 경로

부산지역사회서비스 홈페이지(ssbn.or.kr) 〉〉참여광장〉〉제공기관 자료실〉〉 「모니터링 분석 툴 개발 및 공유」〉〉 이용자 모니터링 측정결과 조사(엑셀파일) 다운로드

- 4) 효과성 측정: '사업별 효과성 검증도구'를 활용한 사전-사후 효과성 측정
- ※ 부산시 자체 개발한 효과성 검증 툴 활용 권장

효과성 검증 툴 다운 경로

부산지역사회서비스 홈페이지(ssbn.or.kr) 〉〉참여광장〉〉제공기관 자료실〉〉 「효과성 검증 툴 개발 및 공유」〉〉 효과성 측정결과 조사(엑셀파일) 다운로드

3. 이용자 관련 서류

※ 이용자별로 초기상담기록지 ~ 이용자 모니터링 설문지 등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별 "홍길동" 서류 관리방법(예시))

왼쪽 (계약, 평가, 종료 관련 서류)	오른쪽 (매월 작성해야 하는 서류)
1. 초기상담기록지 2. 서비스 제공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이용자용) 4. 서비스 제공계약서 5. 효과성 측정도구 및 결과(사전·사후) 6. 이용자 모니터링 7. 서비스 종료 (상담) 보고서	1. 월별 서비스 제공계획서(권장) 2. 서비스 제공기록지 3. 본인부담금 영수증(필요시)

제공자 보수교육 (제공인력 관리 및 교육.훈련)

1. 제공인력 계약 및 적용 규정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급여 등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인건비 지급 및 노무관리(최저임금 보장,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 준수 의무 등)
- 제공인력에 대한 4대 보험, 퇴직적립금 등을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가입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제공인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사업장 단위로 가입(상시 1인 근로자 사용 사업장 당연 적용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2. 제공인력의 정보 공개(권고)

- 1) 실시명: 제공인력 정보 공개
- 2) 내용:

제공인력 자격 사항(권고)

- 학력(학교명 제외)
- 전공 과목
- 자격증 명시
- 경력사항
- ※ 공개 제외 내용: 이용자가 편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얼굴이 드러나는 사진, 출신 학교, 나이 등)
- 3) 제공인력 정보제공 방법(선택사항)
- 개별 수업 공간 입구 부착
- 이용자 계약 시 강사 이력 파일 공개 등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전 제공인력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개, 공개 형태 및 양식은 기관 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함
- ※ 제공인력 정보 공개는 권고 사항이며, 추후 의무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음

3.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 훈련

- 1) (원칙) 제공기관의 장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관의 장과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제공인력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자체 및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은 이를 지원 또는 관리·감독함
- 2) (필수 교육훈련 시간)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은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연도 내에 아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8시간)
- ※ 신규 제공기관 인력(지역사회서비스사업 최초 참여 인력으로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포함)은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총 12시간(공통-기본교육 4시간 포함)을 이수하여야 함

- 3) (인정되는 교육과정) 인정되는 이수과정은 다음과 같음
- ① 보건복지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 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보수교육과정 또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 ③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은 2022년에 한하여 최대 8시간(신규 제공기관 인력은 최대 12시간)까지 인정
- ※ 보수교육 신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집합교육) https://www.kohi.or.kr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버교육) https://sscyber.kohi.or.kr 사회보장정보원(집합·사이버교육) http://edu.ssis.or.kr/index.jsp

- ④ 사회보장정보원 또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의 제공기관 컨설팅을 받은 기관은 최대 4시간까지 교육으로 인정
- ※ 단, 등록된 서비스의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안마사, 언어재활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단, 해당 연도 교육이수증 보관)
- ※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인정 안 됨
- ⑤ 다만, 신규 제공기관 인력의 경우, 공통-기본교육 4시간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⑥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
 - 인정하는 교육과정은 부산지역사회사비스 지원단 홈페이지(www.ssbn.or.kr) 별도 공지
 -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후 부산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홈페이지에 교육이수 현황 등록 필수
- ※ 등록 방법 : 부산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홈페이지》〉제공기관 관리〉〉기관정보등록 및 관리

4. 기타 제공인력 관련 구비서류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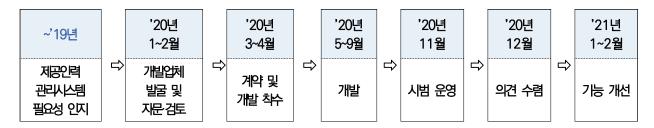
1. 자격기준 입증서류	5. 보안각서
2. 근로계약서	6. 부정행위 근절 이행각서
3. 4대 보험 증빙서류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 교육증빙 서류	8. 제공인력 정보 공개(권고)

1. 목적 및 필요성

재가방문서비스는 제공기관에서 제공인력의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하나,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서비스 제공시간 및 제공 장소 기준 미준수 등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부정행위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해짐.

이에 재가방문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제공인력 근태관리 플랫폼을 도입하여 부정행위 근절 노력 및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

2. 플랫폼 개발 과정



3. 플랫폼 도입 개요

- 도입 시기: 2021년 3월

- 적용 사업: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21.7.), 일상생활지원서비스('22.1.)

- 사용 대상: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등록·운영 제공기관 내 활동 제공인력

- 사용 내용: 서비스 제공 시작·종료 시 근태관리 플랫폼(앱)을 통한 출퇴근 관리

4. 플랫폼 사용방법 및 안내

- 근태관리 플랫폼(관리자 웹, 어플 앱) 사용 설명 영상 제작 및 배부(^{21.3.})
- 부산지원단 홈페이지(www.ssbn.or.kr)-제공기관 자료실 게재

5. 기타사항

- 2021년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 적용 사업 기준정보 내 근태관리 플랫폼 의무사용 반영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외 적용 사업 추가예정: 재가방문서비스, 가족마음 이음서비스 등

현장점검 주요내용

1. 사전준비사항

• 개인별 준비물 : 공무원증(명함), 법령, 지침

• 공통준비물 : 점검통지 공문, 점검안내문, 제공기관이 제출한 자체점검표, 확인서 양식(파일), 기준정보

• 점검자료 사전확보

- 기관정보 : 제공기관명, 사업명, 참여사업, 등록일자, 시설규모(등록 시 신고), 제공인력 수 등

기관명	사업명	등록일자	시설	제공인력 수	대표자	실무자	연락처	주소	비고

- 결제내역(액셀에 작성)

• 이용자별, 제공인력, 결제일자, 금액 등

시오의	레고이크		이용자		정부지원	금(원)	H이H다그(의)	비고
이용월	제공인력	성명	생년월일	등급	결제일자	금액	본인부담금(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 급여등록 현황 : 근무기간, 근무시간, 월 급여, 보험가입여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배상보험, 상해보험 등), 퇴직금 적립 여부, 보수지급대장
- 이상결제 모니터링 결과 내역(사회보장정보원)

2. 점검사항

점검분야	점검항목	점검사항	지적사항 조치
	① 등록증	• 제공기관 등록증 확인 - 등록증 기록사항과 실재사항 확인	• 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처벌
가. 제공기관 등록	② 등록기준 유지여부	 등록기준 : 법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제공자 등록기준) 1.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기관방문형의 경우 33m²이 상의 시설(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m² 공간 확보) 	 법 제16조, 법 제23조, 법 제36조 제2호,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

점검분야	점검항목	점검사항	지적사항 조치
		2.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3. 인력기준 : 가.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각 1명(제공기관장이 관리책임자 겸직기능) 나. 제공인력 -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따라 적합한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 ※ 제공기관장이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경우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으나 제공인력에는 포함하지 않음	
	① 회계관리	 타 기관의 회계 및 타 보조금 사업 회계와 별도 분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서비스별로 회계 분리 예산집행과 관련된 서류는 5년간 보관 	행정지도
나. 기관운영	② 기관운영· 관리	서비스 제공시 사고,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 (배상보험, 상해보험 등 가입유도) 제공인력 교육 - 신규인력 : 공통-기본교육(4시간) - 보수교육 : 직무별 기본 또는 심화교육(8시간)	 행정지도
	③ 보고의무	• (제공인력 정보 보고) 인적정보, 자격증 정보, 교육정보 등	행정지도
	① 제공인력 자격기준 (자격증 사본보관)	 (지역사회)제공인력자격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제2016-228호) 고시 4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별도 기준 미자격자 서비스 제공내역 확보(환수 대비) 자격요건 미 충족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바우처 지원 불가 (환수) 	 부당이득 환수 (법 제21조) 법 제16조 제2항 위반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2에 의거 행정처분
다. 제공인력	② 보험가입	• 4대 보험가입 - 관련법령의 기준에 의거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 험, 고용보험 가입 및 일용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	 행정지도
관리	③ 퇴직 적립금	• 퇴직 적립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	 행정지도
	④ 제공인력 관리	 근로계약 체결(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근로조건 명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주에 평균 1회 이상), 연차 및 유급휴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용자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엄수(보안각서 징구) 	• 행정지도
	⑤ 제공인력 참여 제한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등에게 서비스 제공불가	행정지도환수
라. 이용자 관리	① 계약서 등 작성	•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작성(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서 붙임) -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 비용 및 지급방법,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 계약효력 정지 및 취소 등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 행정지도

점검분야	점검항목	점검사항	지적사항 조치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징구(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행정지도
	① 초기상담 기록지 작성	• 상담 내용 - 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 이용자의 구체적인 문제, 개인의 욕구, 가구특성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수립시 반영	 행정지도
	② 이용자별서비스제공계획서수립	 내용 서비스유형, 서비스내용, 제공방법, 제공횟수, 제공자(제공인력), 제공일정, 서비스가격, 본인부담금 및 납부방법 등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 계약서 작성 시 첨부 	 행정지도
	③ 서비스실시사전·사후검사	• 이용자의 변화 측정을 위한 사전·사후 검사 실시	 행정지도
마. 서비스 제공	④ 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제37호 서식(제공기관에서 임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 이용자, 제공인력명, 서비스내용, 제공일자 및 시간, 이용자 확인, 기타 중요사항 등 	 행정지도 서비스 미제 공시 부당 결제에 의거 조차(사회서비스) 용권 19조제7항제1호)
	⑤ 기준정보 준수	• 서비스 제공 횟수, 시간, 비용결제, 본인부담금, 서비스내용, 집단 규모, 서비스제공 형태(재가, 기관, 집합) 등	경고(법19조제7항제2호) 부당이득환수(법제21조)
	⑥ 서비스 모니터링	 반기별 1회 이용자별 모니터링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자체양식으로 작성하고 다음 사업연도까지 보관 모니터링 항목에 맞게 하였는지 점검 부산시 지침 서비스 모니터링 기준 적용 	 행정지도
	⑦ 서비스종료	• 서비스 효과(변화도) 측정하여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	행정지도
	①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이용자의 책임성 강화,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부과 현금수납의 경우 영수증 발급 계좌입금의 경우 통장 확인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9조 제7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제2호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2에 의거 처분 행정지도
바. 서비스 비용 결제	② 정부지원금	 결제원칙(회당결제) 준수 여부확인 부당결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카드 부정사용 유의사항 소급결제 등 예외적인 결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비스제공기록 지" 하단 "특이사항"란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이용 자에게 확인 받을 것 	
사. 확인서 작성	① 처벌에 대한 근거	• 위반사항을 입증 할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 - 점검기관(제공기관 명), 사업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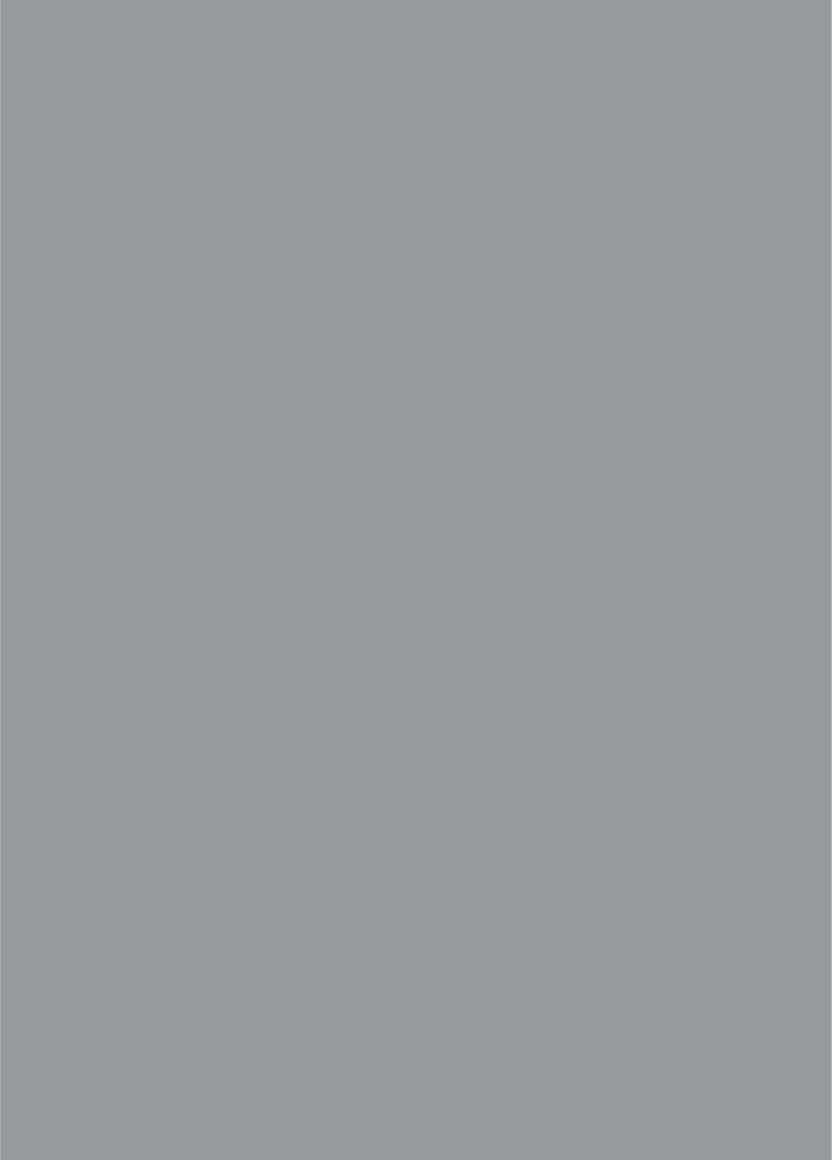
점검분야	점검항목	점검사항	지적사항 조치
	자료 확보	 점검기간(부당청구 비율 산정 시 활용) 현행규정, 법률근거, 위반사항을 명확하게 기재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 확보 수검자 및 점검자 확인서명(수검자의 경우 기관대표자 혹은 기관장에 준하는 자, 위임 받은 자) 확인서는 확인자, 점검자 모두 보관 	
	② 확인자에 대한 사전 설명	향후 조치 및 조치절차 부당이득 징수(법 제21조): 징수사유 발생 사실, 징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 벌칙(법 제36조), 과태료처분(법제40조), 행정처분(시행규칙 제16조), 기타 행정지도 등 법 제23조에 의한 제공자 등록 취소 시 청문(법 제24조)절차를 거침 조치사항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부당이득금 징수 등 구제절차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법 제25조)	
	③ 확인서 내용 (견본)	• 제목: 제공인력 자격기준 위반 (규정) 아동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공인력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28호(2016.12.1)에서 규정한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 심리, 상담, 치료학(언어, 음악, 미술) 등 아동·청소년 발달 지원서비스 관련 전공자의 경우에는 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 ※ 근거: 법 제00조 제00항, 지침 00쪽 등 기재 (위반) 제공인력 OOO은 동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12년 00월~'13년 00월까지 이용자 000등 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지원금 000원을 결제하여, 위 자격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동 기간 중 제공인력 OOO는 00대학교 00학과 0학년 재학 중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임 〈자격기준 미 충족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 현황〉	

무자격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

- 무자격자가 제공한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에 따른 사회서비스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공비용 지급 불필요
- 이용권 관리법상 **사회서비스는 법령상 인력·시설·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해당**
- 이용권 관리법상 사회서비스가 아닌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정부지원금 부분은 환수**
- * 본인부담금 및 제공인력 임금 지급 문제는 민사 문제로 해결

부록

관련서식



항목별 관련서식 목록표

이용자 관련 서식

1)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페이지
별지 서식	욕구판정표(선택사항)	부산시추가	163
제1호 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164
제4호 서식	국민행복카드 소개 및 발급 안내(서비스이용자용)		172
제5호 서식	제5호 서식 사회서비스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173
제5-1호 서식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74	
제5-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75	
제6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176	
제7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177	
별지 제5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 추천서	부산시 추가	240

2) 이용권 선정 관련 서식(구·군, 읍·면·동)

서식번호	서식명	페이지
제2호 서식	사회보장급여(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166
제3호 서식	이의신청서	171
제10호 서식	서비스 이용 안내문	180
제11호 서식	사회서비스 연장(종료) 통보서	182

제공기관 등록·변경·휴(폐업) 관련 서식

1) 제공기관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페이지
제12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지역사회서비스	개요서	183
제13호 서식	제공기관 운영 계획서		186
제49호 서식	안전관리 계획서		226
제50호 서식	안전관리 교육 계획서		227
[별자] 제호 서식	근로계약서(예시1) 부산시 추가 '22년 수정		234
[별지] 제2호 서식	근로계약서(예시2)	부산시 추가 '22년 수정	236
[별지] 제3호 서식	단시간 근로계약서(예시3)	단시간 근로계약서(예시3) 부산시 추가 '22년 신설	
제2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01
제24호 서식	보안각서		202
공통양식 1호	위임장		249

2) 제공기관 등록사항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페이지
제16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92
제17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93
제22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199

3) 제공기관 휴업·폐업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페이지
제18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 신고서		194
제19호 서식	제19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자체보관) 신청서		195
제20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이관 목록표		197
제21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198
별지 제3호 서식	서비스 이용자 조치 계획서(휴·폐업 시 제출)	부산시 추가	239

4) 제공기관 등록관련 서식(구군)

서식번호	서식명	페이지
제14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189
제15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91

서비스 제공 운영 시 관리해야 하는 서식

1) 세신 제공

(서비스 제공 전)				
서식번호	서식명		페이지	
제32호 서식	초기상담기록지(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산시 추가	205	
제33호 서식	초기상담기록지(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206	
별지 서식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대상자 욕구 조사지	부산시 추가	207	
제34호 서식	서비스 제공계획서		208	
제35호 서식	서비스 제공계획서(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209	
제36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예시) → 복지정책과-342(2021.7.9.) 수정됨		211	
제4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이용자용) ('21년 7.9 변경) ※품질평가대상기간: (2021년)'19.1.1~'20.12.31.(2023)'21.1.1~'22 ⇒ 개정서식 수정 사용(복지정책과-342(2021.7.9.)	2.12.31	225	
제38호 서식	서비스 제공 기록지(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215	
제52호 서식	제공기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232	
제39호 서식	제39호 서식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초기상담 사진		216	
	〈서비스 제공 중〉			
제30호 서식	본인부담금 영수증		203	
제31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른 중지 신청서		204	
제37호 서식	서비스 제공 기록지(예시)		213	
제38호 서식	서비스 제공 기록지(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215	
제40호 서식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점검 사진		217	
[별지] 제6호 서식	이용자 모니터링 설문지	부산시 추가	241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추진 실적(현황) 보고서 부산시 추가		부산시 추가	244	
	〈서비스 제공 후〉			
제42호 서식	서비스 종료(상담) 보고서		218	
제8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 안내문(예시1)		178	
제9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 안내문(예시2)		179		
제51호 서식	제51호 서식 안전관리 교육 결과보고서		230	

2) 제공인력 관련 서식

〈제공인력 관리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페이지	
제2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제공인력용)		201	
제24호 서식	서식 보안각서		202	
별지 제1호 서식	근로계약서(예시1)	부산시 추가	234	
별지 제2호 서식	근로계약서(예시2)	부산시 추가	236	
별지 제11호 서식	부정행위 근절 이행 각서	부산시 추가	247	
별지 제12호 서식	제공인력 정보제공 양식	부산시 추가	248	
별지 제10호 서식	제공인력 안내문(스마트폰 등록 시)	전자바우처 시스템 메뉴얼	246	

3) 회계 관련 서식

〈회계 관련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페이지
제43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정부지원금 수납대장	221
제44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본인부담금 수납 및 환급대장	222
제45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출내역	223
제46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 집행 현황	224

4) 청구 철회 관련 서식

〈청구 철회〉								
서식번호	서식명	페이지						
[별지 1] 서식	사실 확인서	250						
[별지 2] 서식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	252						

〈욕구판정표〉

※ 사업별 양식 (별도 첨부)

0000서비스신청자

신청일자	서비스명	대상자명				
	0000서비스					
	신청자격	적합여부(체크∨)				
소득	서비스별 상이	□적합 □ 부적합				
연령	서비스별 상이	□적합 □ 부적합				
가구특성	서비스별 상이	□적합 □ 부적합				
우선순위	항목	해당사항(최상위 1개 체크∨)				
1	서비스별 상이					
2	서비스별 상이					
3	서비스별 상이					
4	서비스별 상이					
5	서비스별 상이					
	기타 서비스 신청 시 제출 서류	적합여부(체크∨)				
[제1호 서:	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제출 □ 미제출				
[제5호 서식	내]사회서비스전용 국민행복카드발급(재발급) 신청서 (만 14세 미만 아동, 만 75세 이상 노인 해당)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제5-1호 서식]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만 19세 이상 해당)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제5-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제출 □ 미제출				
[제6호 서	付의]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제7호 서	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제출 □ 미제출				
	(구군,주민센터)담당자 확인 여부	□ 확인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0.1.1>

			사	회보장	}급여(사호	티서비스	스이용권) 신청(t	년경).	서			처리기간: 14일 (영유이보육료, 장애인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주건활동 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 스는 30일)	
시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 관			전화 번호			
신청. 인	 주	주소								휴대	<u>연</u> 화			
			ZNICE	em =		74714151	1	전자						
		세대주와 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동거여부	건강상타 (장애/질병		직장망	\$	전	화번호 (집/직장) 	
가족									_					
사항														
н		i	관계 (([]	법률혼 [성 명] 사실혼	[] / 금융기관	나실상 이혼) _며		계좌번호			 예금주	
	인부E 급계				Ö Ö			Ö		개의단오			세ㅁㅜ	
種	Ħ						사회보장	남급여 내용						
					지원대상자				신청	구분				
						[] 어린이	집 (3~5세) ([([] 장애 [] 다] 장애 [] 다둔 네)([] 사립유치:	화),	[] 장애	아 보육료		[] 어린이집 방과후 예)	
		유0	육료지원 학비지원 이행복키	- 원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연장,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연장,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자격을	신청한 경우라도,	격으로 변	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ſ	171	ルショ			신청요건(1개 선택) 서비스시간								
		[]가사간병 방문지원			[] 소년소니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장기입원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	
					지원대상자		장애 <u>으</u> 혀 애	.0_0		성각장애] 시긱		
				발달 재활	장애등급	[] 장0	 정도가 심한	1 10 "		자폐성장0 도가 심	., -	0	록 (영유아) 	
읍 명	[장애아동	서비스		[] 언어							
동		가끔	취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재홀)							심리운동 [] 기타(
주				언어 발달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 언0	 발달진단	[] 언어재활	ы г] 7 E	L ()	
민 센 터				지원 발달	(중복 체크가능) 지원대상자	() 50		아의 관계 악의 관계	<u> </u>			모	<i>)</i> [] 기타()	
[]발	당	자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장애 유형 및 등급	장애유형	[] 지조 [] 자피	역장애 예성장애 등록(영유아)	장이 정도	H [] 장애 [:]	정도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이 지원	1인	_ 인	장애 유형 및 등급	장애유형	[] NA		장이 정도] H] 장애 [:]	정도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방과후 활동 지원	지원유형	፠ 88人	!활동서비스 간/120시간 후활동서비 <i>스</i>	([] 44시간 이용시 장애인	<u></u> [활동지원] ₈₈ 시 월급여가	간 일부 ㅊ	[] 남감됩니	120시간) 다.	
	[]지	역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u> </u>	
		. 101	서구나	=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서비스밍	3					
	l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4	청소년본	인또는	부모, 주 ⁹	양육자 신청가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지원대상자								
		긴급활동지원	[] 해당 (※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신청유형 [] 신규신청 [] 변경신청 [] 갱신신청							
			[] 장애상태의 변화							
	[]장애인활동 지원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	변경신청 사유 [] 직장생활 [] 학교생활							
	시전	2011261	(※ 해당하는 항목에 [] 독거(1인)가구 (19세 이상) [] 취약가구 모두 체크) []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 거주지 이저							
			[] 한부모가정 (19세 미만) [] 조손가정 (19세 미만)							
특별지원급여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재([]결혼 []사망 []출산 []입원 []지역사회보호자)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н		지원 유형	[] 단태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							
보 건	[]산모신생아		기본 지원대상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소득기준 이하							
신 소	건강관리지원	신청요건	의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이 쌍생이 이상 출산가정 [] 셋째이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이 이상 출산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기타							
ни		지원대상자								
보건 소:	 	지원 유형 (중복 체크가능,	기본지원대상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주민 센터	고세正ㅠ시년	지원 유형 (중복 체크가능, 조제분유는 변경 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예외지원대상 (지자체자체 사업)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역인 (√ 체크)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거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기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준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자·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 청하거나 관련 전봉원(방향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 지합니다.										
동위 하 2. 활인 필급 청 년 3. 개인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집 어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집 장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밤 박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 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장산정보, 응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경 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 건정보 보유 및 파기 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위 한 정보, 소득·재산 기족관계등록전산정보(강보험·국민연금·고용 연공동이용 포함)을 통	· 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호료자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작게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작계존비속 정보), 보험한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 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 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위 하 2. 활인 필급 청 년 3. 개인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집 어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집 장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밤 박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 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장산정보, 응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경 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 건정보 보유 및 파기 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위 한 정보, 소득·재산 기족관계등록전산정보(강보험·국민연금·고용 연공동이용 포함)을 통	· 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호료자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작게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작계존비속 정보), 보험한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 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 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5. 위하 2. 활왕 인필급경쟁 3. 개압지 1. 나 으면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집에 기안정보를 활용하고자 집에 기안정보와 동의요청 밤 사장 및 기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잔산정보, 3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흥가게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 보유 및 파기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합니다.	위	- 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호료자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작계존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작계존비속 정보), 보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 병무 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 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							
도 위하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 (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함 당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함 보자한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자산정보 2 등 국세 지방세, 토라 건물 건강 가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착 건정보 보유 및 파기 을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합니다. 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 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한 보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 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한 정보 소득·재산 가족판계등록전산정보 당보함 국민연금·교육 공동이용 포함)을 통 보유하고(지원대상: 라마 발굴에 관한 하여금 급여를 받게 은 자 또는 급여를	- 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육료자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작계존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작계존비속 정보), 보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 보호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다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 함의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조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 함의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조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 함의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조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 함의 필요한 보호에 필요한 보호에 보호에 필요한 보호에 보호에 되었습니다.							
5. 유명 이 의 기 시 시 이 기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집에 기안정보를 활용하고자 집에 기안정보로 활용하고자 원칙 기속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로서 주민들적 전기를 건강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 정보 보유 및 파기으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합니다. 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물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한 보육 일부를 그 급여를 받기나 타인으로 한 보통 일부를 그 급여를 받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한 정보 소득 재산 가족관계등록산산정보 당보험 국민연급·고원 공동이용 포함을 통 보유하고(지원대상: 하여금 교육를 받게 은 자 또는 급여를 일한 조사를 거부, 발	- 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호롭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작계존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작계존비속 정보, 보험 산업제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 보호급여 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작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 받고에 필요한 법률, 무료 보조 기관이 기관 부정한 방법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역, 발금, 구류 또는 과태로 []							
도 함 이 말음하지 않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로 기 있다. 그 사람들이 되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되었다. 그 사람들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집에 기안정보를 활용하고자 집에 기안정보로 활용하고자 원칙 기속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로서 주민들적 전기를 건강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 정보 보유 및 파기으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합니다. 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물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한 보육 일부를 그 급여를 받기나 타인으로 한 보통 일부를 그 급여를 받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한 정보 소득 재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당보함 국민연금 고원 공동이용 포함)을 통 보유하고(지원대상: 하여금 급여를 받게 은 자 또는 급여를 일한 조사를 거부, 발 내용받으면 거주지 될 수 있으며, 관계	· 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호로자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작게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작계존비속 정보), 보험 산업제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 보호급여 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 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 유 의 사 항 의 사 항 리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처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역, 발금, 구류 또는 과태로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 네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등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하위 법률에 따라 청사 처벌 또는 과태로 등의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왕위하여 3. 각자 기계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전에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전에 개인정보로 활용하고자 전에 개인정보로 활용하고자 전에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잔산정보, 경국세 지방세, 토지·건물·건경 경보 지방세, 토지·건물·건경 경구세 지방세, 토지·건물·건경 경구세 지방세, 토지·건물·건경 경구세 지방세, 토지·건물·건경 경구세 지방세, 토지·건물·건경 경보 보유 및 파기 급합 급대를 받거나 타인으로 경 경우 대로 함께 하는 1년간 합니다. 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를 보더를 받거나 타인으로 경 함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를 보더를 받거나 타인으로 경 함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를 보더를 받거나 타인으로 경 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 보장급여의 제공여분 기상이 되었다면 신경 1. 신청인(대리 신경 * 대리신청의 경우 2. 통장계좌번호 시 3. 어린이집(0~2세)	위 한 정보 소득 재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당보함 국민연급 고원 당보함 국민연급 교원 당보함 국민연급 교원 보유하고(지원대상: 보유하고(지원대상: 보유하고(지원대상: 보유하고(지원대상: 보유하고(지원대상: 보유하고(지원대상: 보유하고(지원대상: 보유하고(지원대상: 보유하고(지원대상: 보유하고(지원대상: 보유하고(지원대상: 보유하고(지원대상: 보유하고(지원대상: 보기는 대원 기주지 사용하신 서류는 보기는 이 기원 기준이 기준이 있는 1부(해당자에 함께 기준이 기준이 있는 12 기준이 있는 1	· 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호로자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작게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작계존비속 정보), 보험 산업제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 보호급여 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 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 유 의 사 항 의 사 항 리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처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역, 발금, 구류 또는 과태로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 네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등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하위 법률에 따라 청사 처벌 또는 과태로 등의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¹⁾)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면]

	사호	보장급여	[] 결정(적합) [] [] 변경·정지·중지	결정(대상제외) ·상실	통	지서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 세대주	주 소				휴대전화	
	수 소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ㆍ서비스내용		
비	고					

1. 귀하가 신청한 사회서비스 조사·심의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비우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통⟩

지원	대상	나니니니다	정부지원액 (월)		본인부담금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사회서비스명			- (월)
본인부담금	금납부계좌	이용권 유효기간			지원내역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인 경우

활동지원등급		급		종합점수		점	
급여의 종류 및 내용	[] 활동보조	[] 방문목욕	[] 방문	[] 긴급활동	지원		
OI 폴네드UH	OI.		OI.	활동지원급여	월	원	
월 한도액	월		원	특별지원급여	월	원	
본인부담금	월		원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급여개시일	· 약사일						
유 효 기 간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견							

^{*}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안내문 참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수급자인 경우

0용 세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서비스이용시간	[] 시간
급여개시일	
유 효 기 간	~

2.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안내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 희망e든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향후 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든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미 국민행복카 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도 기존 카드로 금번에 대상자로 결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은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 다만, 카드사를 통한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시항은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 4번) 또는 보건복자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부담금 납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지정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
- 산모·신생이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기타 사회서비스 : 제공기관 지정 계좌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서만 산정되고, 특별지원급여에서는 면제됩니다. 또한, 긴급활동지원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시업의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활동지 원급여의 4% 미민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됩니다.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활동 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4. 서비스 개시 및 0용

사회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 시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를 합한 총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가 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영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 제분유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 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여성청소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물품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생리대)을 국민행복카드(신청서 상의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명의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괴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원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연간 2개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이용자 준수시항

-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인력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서비스 이용도중 신청자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서비스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연속하여 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시·군·구청장 직 권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신고내용, 행정기관 확인조사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용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특별자 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교정시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및「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 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중단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 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 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차상위계층 등 보유자격의 상실, 영아의 사망, 연락처 변경 등 인적사 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 내용에 따라 지원금액 또는 부가서비스 수혜 여부 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동 가정의 영이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청소년의 사망, 수급자 자격 변동 등 지원자격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읍면동주민센터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시업을 통해 구매한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을,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매 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함께 구매할 경우 각각 나누어 별도 결제하여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 품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제 외											
신 청 내 용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대 상 제 외 사 유		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 기타()										
안 내	결정! 2. 이후 져 시 보건(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 져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할 경우(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영아가 24개월 미만일 경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경우 여성청소년이 만11세 이상 만18세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 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정지·중지·상실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변경	사 유	[] 아동보호를 위한 보호자변경 [] 소득·재산·임대차계약·근로능력 변동 [] 가구원의 시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조제분유 추가지원 [] 기타()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정지	사 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기타()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중지	사 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유아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보장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괴하여 입원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 기타()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 상실	사 유	[] 사망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작약연금 수급권 발생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수급연령 초과(생후 71개월이 되는날) [] 국적상실 [] 국외이주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장애정도의 변경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미해당 [] 난민법제18조에 의한 난민인정자 중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기타()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2. 위 결정시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 기초생활보장: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자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자사 및 시·도교육 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자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도자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 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 2) **한부모기록,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이보육, 유이학비**: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3) **장애인연금**: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 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자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4) **기초연금**: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자시장·특별자치도자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5) **아동수당**: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자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6) **사회서비스이용권(비우처)**: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청(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 7) **차상위계층 확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 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자사에게, 특별자차시장·특별자치도자사·시·도자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 8)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 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4. 수급기간 중 인적시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시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공통서식[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4.1>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인내													
신	청	인	성	명				등 록 t 인 등 록 t					
			주	소			·			(전화번호	호 :)
대신	청	리 인	성	명			주 민 등 (외국인등					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호 :)
처		분	내	용	□ 선정		보장변경/	중지/정지/상	실	□ 환수		기타	
처 연	분이) 월	있음을	안 일				년	월		일		
	분 통 : 지 를		받은 은 연	경 우 월 일				년	월	<u> </u>	일		
	처 분 통 :		내용 또 린 사	는 항									
0 9	의신청	형 추	지 및	사유									
인활 법」 무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8조, 「아동수당법」 제19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지지원 민원사			
안		L	날로교 다만 의 모가 내(함 본 사용 이 현 전 기초장 만, ** 지 다른 날	부터 10일 육감의 처분, ① 기초 기로 기초 의료급여 수 즉지원 및 및 난, 정당한 당지원은 : (이의 결정 년 사당지원은 (이의 신청은 생활보자 1년 등 변화 기계	이내에 이의(런데 대한 이의 건금 결정에 다 급권자의 자각 장애인복지 된 사유로 인하 업수한 날로부 신청은 15일 등에 대한 이의 접수한 날로부 및 차상위계층 E지상 및 시· 정인 없는 경·	신청에 다 신청은 배한 이의료 다 이의신 이 이의신 터 60일 이내(단 비신청은 확인서 도교육감 신청의 경 우 「사례 분을 결	한 의견서와 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신청은 접수한 어 및 급여비원 신청의 경우에 청을 할 수 없 청이 비((30일 1 특별한 사유기 접수한 날로부 일(단,특별한 人 이내 결정통, 발급의 경우 시 의 경우에는 ² 우 시·도지사는 퇴보장급여의 0 정한 보장기관	장·군수·구청징 관계서류를 30일 통별자치도자사 날로부터 30일 당에 대한 이의, 는 30일 이내, 음을 증명한 때 성기 내 연장가는 성우에는 너 60일이네. 나무가 있는 경우 나무가 있는 경우 나무가 있는 경우 나무가 있는 경우 나무자사는 사 나무자사는 사 나무자사는 사 사리합니다. 나도자사는 사 사리합니다. 나도자사는 사 사이 이의신청을 등 사·군·구청징 용·제공 및 수 의 장에게 이의	하여 시·! 및 시·도 및 이내(단 신청은 60 ④ 장애(에는 그 / 능), ⑥ : ፥ 60일이! 용어는 60 군·구청징 는 받았을 보으로부터 급권자 빌	도지사(특별자교육감)에게 ; 특별한 사: 일 이내(30' 인연금 결정 사유가 소멸현 장애아동가족 내), ⑦ 발달 보육지원은 1 일이내)이내 당으로부터 이 때를 말한다 이의신청을 1물에 관한 1	다치시장·특성 수 부합니다 송부합니다 유가 있는 일 범위 나 등에 대한한 때부터 지원, 장이 참장애인 주 당적한 날리 사회 의신청서를 하게 하고 있을 (송부 받은 기계	특별자치도지시 다. 경우에는 60 대 연장기능), 다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애아가족양육지 로간활동지원, 로부터 30일 (서비스이용권 를 받았을 때(된) 대비서 처리합 는 날로부터 15	남 및 시· 일이내), 일이내), 15일 이 15일 이 등 장정 당과후돌 이내, 일 발급 라니다 이내 분을 받
구	비 .	서 류	² . 신청 3. 위임	형인의 인적		할 수 있	l는 서류	: 서류(기초연·		의신청을 [경우 일	:수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국민행복카드 소개 및 발급 안내 (서비스 이용자用)

「국민행복카드」란?

-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카드** 전자이용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가 **필요**합니다.
- 다만, <u>희망e든카드를 보유</u>하고 계신 분은 향후 전자이용권 <u>재발급 신청 시까지 희망e든</u> 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 직원에게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요청하세요.

대상자가 **만 14-19세 미만**인 경우,

<u>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u>하여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 ※ 카드사별로 신청 가능자(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과 본인 동행 등), 구비서류 필요여부 등이 다르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을 **문의**하세요.

대상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 ① <u>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u>하거나, <u>홈페이지 접속</u> 또는 <u>콜센터에</u> 직접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 ②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때 **카드사 콜센터 발급상담 전화**를 **함께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 확인

- **(전화)**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 4번)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인터넷)**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www.voucher.go.kr)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1.1.)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대상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발급 대상자	대리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대상자와	의 관계		
	미성년지	발급동의서	① 징구	② 미징구 *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	내리인 동	의 필요	
신청 구분	□ 신규	구 🗆 재발급	3	재발급 사유	□ 분실 □ 흑	훼손	□ 기타	
	수령인	□ 발급대상지	ㅏ □ 보호자	(가족 등)	대상자와의 관계 : ※ 수령자가 보호자인 경우 기	기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_	
카드 수령지	수령지	① 자택 ② ※ 자택, 직장,			지를 체크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자택				전화번호		-	
	직장				전화번호			
본인 부담금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환급 계좌	* 대상시	사업 : 노인 <u>돌봄</u> 종	합서비스(방문	··주간보호·단기	가사),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긴	·병방문지	——— 원	
						년	월	일
				신청인(대리	비신청인)	()	너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	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	당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대상 : 만 14세 미만 아동, 만 75세 이상 노인, 노인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O 0 0 .		· 전용 국민행복			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가 ! 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이용하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VII	드 에ሪ되는 大에 V 파크 립니다.	
개인정보 제공동의	- 제공받는 기관 : 신청인이 지정한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카드사) - 보유기간 : 카드발급 완료 등 보유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I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카드 (택1)	BC카드 [] IBK기업은행 [] NH농협 [] SC제일은행 [] 롯데카드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수협은행 [] 우리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우체국	[] 삼성카드
본인은 본 청	: 동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귀하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국민행복카드 사업자(BC카드, 삼성카드	=, 롯데카드) 대표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대상	상 : 만19세 이상	
○ 이미 국민 ○ 본 동의를 카드로 서 등) 방문, ○ 국민행복 카드 발급 ○ 계좌압류	[용권(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자(본인) 명의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하신 전자이용권(바우 서비스 이용 및 결제가 가능하므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행복카드 영업점(은 문, 카드사별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연락하여 직접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복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이용자가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신용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류자, 신용불량자 등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카드: 호에 따라 전용카드가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처) 사업은 국민행복 행, 우체국, 카드센터 J사결과에 따라 신용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6.11.3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수집·이용 항목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 일체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자산조사 및 자격정보 일체 : 소득·재산 등 자산정보 및 장애유형·정도 등 자격정보 국민행복카드 정보 일체 : 신청정보·카드번호·이용내역 등 수집·이용 목적 전자이용권 제도 관련 본인 확인 및 자격 결정에 관한 업무 바우처포인트 생성 및 이용대금 정산(본인부담금 납부·환급 포함)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공·결제(보육료 및 유아학비 호환결제 포함)에 관한 업무 - 국민행복카드 카드 제작 및 배송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 기타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 기타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 보유 기간 : 전자이용권 이용자격 종료 후 5년까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 근거 안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 감 정 보 : 장애 및 질병 등 건강정보 ○ 관 련 법 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역도입에서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항목·제공처) 안내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서명 조소 영란당 : 헤더 라드나
- 성명, 주소, 연락처 : 해당 카드사 ○ 보육료·유아학비 호환결제
- 국민행복카드번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 등 제도 운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비스 이용내역 : 유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전자이용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대리신청인 포함)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6.11.30.)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카드발급	성명(한글)						
신청인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번호						
HHUJO	성명(한글)						
법정대리인	생년월일			연락처		_	
상기 본인(법정 동의합니다.	덩대리인)은 카드	= 발급 신청인을	대리하여 국민행복카드의	비 발급 및 동	등 카드의 /	사용에	
					년	월	일
			법정대리인		().	1명 또는	인)
사회보장정보	보원장 구	식하					

안내 및 유의사항

- \bigcirc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카드 발급 신청인란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00년 00월 00일 신청하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000000사업)이용 시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동 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 1.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전자카드 포함)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에게 판매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안된다.
- 2.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 2. 회당결제 방식(예외,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자살위험군예방서비스, 저소득 건강관리서비스)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당일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바우처카드 미소지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3. 본인부담금의 미납 및 2개월간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격이 상실됩니다.
- 4. 이울러 제공인력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부당한 해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자격이 상실되고, 관련법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0000서비스) 신청인(또는 대리인) ()는 위의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으며 동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 안내문(예시 1)

- 1. 현재 귀하께서 이용하고 계신 사회복자서비스의 바우처 지원기간이 20 년 월 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 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단될 예정입니다.
- 2. 귀하께서 이용하신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최대 ()회에 한해 연장 가능합니다.
 - 다만 바우처 지원기간 종료 월부터 계속해서 이용하고 계신 서비스에 대한 바우처 지원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경우 20 년 월 일까지 첨부 서류를 지참하셔서 읍·면·동사무소에 서비스를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신청은 가능하나, 매월 ○○일 이전에 재신청하신 경우 다음달부터, 매월 ○○일 이후에 재신청·전송한 경우 다음달부터 바우처 지원기간이 연장됩니다.
 - 또한 지원 이용자 선정은 예산 여건이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지므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경우에도 지원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함께 예산 조정이나 정책변경이 있는 경우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기에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부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이용하고 계신 서비스는 제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 귀하께서 이용하신 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금 결제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 귀하께서 소지하고 계신 바우처 카드의 정부 지원 금액은 바우처 지원기간 종료 이후에는 사용하실 수 없으니, 결제가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시) 바우처 지원기간 종료 예정일이 20 년 월 일인 경우 20 년 월 일까지는 바우처 카드를 통 한 정부 지원액 결제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정부 지원금이 자동 소멸되어 결제가 불가합니다.
 - 다만 향후 다른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시 현재 가지고 계신 바우처 카드는 지속 사용이 가능하오니 바우처 카 드를 잘 보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 위 내용 중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 안내문(예시 2)

- 1. 현재 귀하께서 이용하고 계신 사회복자서비스의 바우처 지원기간이 20 년 월 일부터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단될 예정입니다.
 - 바우처 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연장신청이나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다만 귀하께서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일부 기관 제외)
- 2. 귀하께서 이용하신 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금 결제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 귀하께서 소지하고 계신 바우처 카드의 정부 지원 금액은 바우처 지원기간 종료 이후에는 사용하실 수 없으니, 결제가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에시) 바우처 지원기간 종료 예정일이 20 년 월 일인 경우 20 년 월 일까지는 바우처 카드를 통한 정부 지원액 결제가 기능하나 그 이후에는 정부 지원금이 자동 소멸되어 결제 가 불가합니다.
 - 다만 향후 다른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시 현재 가지고 계신 바우처 카드는 재활용이 가능하오 니 바우처 카드를 잘 보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 위 내용 중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안내사항

- 1. 서비스이용자는 상기의 서비스 종류(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역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통보서에 표기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서비스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뒷면)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해당 서비스제공기관과 상담한 후,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3. 서비스이용자는 제공받은 바우쳐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바우쳐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4. 바우처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하실 수 없습니다.
- 5. 지역사회서비스는 1인당 연간 2개까지만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으며, 2개월간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이용 이 중단됩니다.
- 6. 예산조정, 정책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변경 또는 조기에 중지될 수 있습니다.
- 7. 서비스별 지원기간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그 기한이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반드시 서비스별 지원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서비스 내용 및 바우처

세신내용	▶ 해당 사업 서비스 내용 명시
바우처 가격	서비스 총 가격: 월 000만원 바우처 지원액: 월 00,000원(정부지원) 본 인 부 담 금: 월 00,000원
본인부담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00만원을 제외한 추가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귀하가 납부할 금액은 월 00,000원(본인부담금)입니다. 납부는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매월 00일)까지 납부계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부득이 현금 또는 카드결제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 위 내용 중에서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문의사항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기관 검색, 바우처 잔량 등 확인 가능
 -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비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근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제공기관 품질평가 결과 등) 정책과 요청 사항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기관명	주 소(홈페이지)	전화번호

	사회서비스 □ 연장 통보서 □ 종료										
	성 명			생년월	녤						
세비스 이용자	주 소							(전화:	<u> </u>)	
100.1	신청사유	주요문제 및	욕구				필	스바요			
신청인	성 명			보호이용기	다와의 관	계			전화번호		
	□ 사회복기	지서비스 제공 신청 결	과								
		서비스 유형									
		본인부담금	사회서비	스 이용안내둔	근 참조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	스 이용안내둔	근 참조						
		바우처 제공기간	ا	<u> </u>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재 판 정 결	□ 연 장	서비스(보호) 안내	알려도 - 서비: 시·군 이외에 있음을 - 이울리	-립니다. 스 실시기간 ·구(읍·면· 예산 조정(알려드립니(중 서비 동) 또(이나 정책 다. 더 이상 (스 / = 자 변경()	신청자 베공기 있는 수	격과 관련 관에 신 = 경우 서 없거나 이	원기간이 위외 결한 변동사유 기고하여야 하 배스 내용이 용하지 않기를 합니다.	? 발생 시어 하며 상기 변경 또는 #	I는 즉시 변동사유 중자될 수
과		종료 사유									
		바우처 종료기간	냳	· 월 일	부터		년	월 일	실 까지		
	□종료	종료 안내	중단: 제공기 - 이울: 때문(될 예정이며 ' 관과의 계약 러 이미 지원 베 결제가 늦	f, 귀하 을 통해 7 1된 바우 등어지지	게서 전액 : 더 카. 않도를	계속 보인 ! 드 정 록 유	: 서비스 부담으로 (부 지원금 의하시기	해당 서비스0 를 이용하고) 용할 수 있는 19백은 종료 [바라며, 현지 1면 감시하겠습	고자 하는 합니다. 다음 월까지 배 가지고 계	경우에는 유효하기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위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재판정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며 통보된 결과에 대하여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위		성명	Ľ	_	: 락처 :	_)		
						-			ŕ	군수·구청장	(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8.3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2쪽의 작성방	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하	H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	수일		처리기간	30일	
①서비스 종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②신청인 /대표지)	법인·단체명	법인・단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③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				
	주소			1		
④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⑤설립구분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개인	[] 기타()	
⑥시설기준	시설면적	m^2	설비·비품			
⑦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총	명	제공인력 총	명		
⑧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⑨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⑩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N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제1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저	11항에 따라 위와 같	
				년	월 일	
		신	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신청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해당합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				

 $210 mm \times 297 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동의서

본인은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내용, 인력, 시설·장비 등의 현황 정보 등을 성실히 제출 하고,「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회원 으로 가입하여 그 정보 등을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전담기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본인이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 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전담기구에서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의 유형 및 사업명을 적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세부 사업명도 적습니다.
- ②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습니다.
- ③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④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 ⑤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 법인의 경우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 체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종교단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⑥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시설면적과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적습니다.
- ⑦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의 수를 적습니다.
- ®·⑨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경력을 적습니다.
- ⑩ 기관장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관 신청인 (시·군·구)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면 심사 및 실제 조사 검토 및 결재 등록증 수령 등록증 발급

	지역사호	서비스(세부 사업	명:) 개요서	
	당되는 곳에 "√" 표 지역사회서비스 투	E시를 합니다. :자사업의 경우에만 작성합니	니 다.		
작성기준	[] 15	회당 [] 1인당	[] 그 밖	의 기준 ()
서비스 제공내용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구분	단가		산출근거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서비스 제공주기 및 시간)회, 회당 ()분)회, 회당 ()분	서비스 제공기간		

(서비스명) 운영 계획서

1. 기관 및 사업 개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제공기관 장				
사 업 명			사업코드	
제공기관 유형	영리 /	비영리	바우처사업 시작연도	
서비스제공지역	○ 시·도:		Z자 하는 시·군·구를 도 구, <i>은평</i> 구, 노원구 .	무 명시

[※] 기관유형은 해당란에 √ 표기

2. 인력확보 및 4대보험 가입

○ 제공기관의 장(대표자) :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임원 명부 (법인인 경우):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관리책임자 : 00명

성명	생년월일	역할	경력 및 자격

○ 제공인력 : 00명

채용인원					추가 채용 계획				
고용형태 근무시간	소계	정규직	비정 규직	개인 사업자	고용형태 근무시간	소계	정규직	비정 규직	개인 사업자
소계					소계				
월 40시간 미만					월 40시간 미만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 제공인력 자격·경력 현황
- ※ 주의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과 제공인력 공동이용 불가

	-	근로 게야 필수		(참(자격증) 사업 자격기원	보유현황 E 해당자격	만 기재)	(자격	학력사형 기준 해당사형		7	명사항 명사항	
성명	생년월일	근로 계약 체결 여부	인력 여부 [*]	자격증명 칭	발급 기관명	발급 연월일	국가자격/공 인자격/등록 자격 [*]	학교	학과 및 학위 ^{**}	졸업 연월일	근무지	근무기간	압 썖
		0	0										
		×	×										

- * 국가자격증, 공인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증 중 택일하여 기재
- ** 학위는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를 구분하여 기재

3. 시설확보 현황

○ 서비스 유형 : □ 재가방문형 □ 집단활동형 □ 기관 방문형

구분	면적	자가	임차	소재지 주소
사무실				
서비스전용면적 (33㎡ 이상)				

	사용조건		시설관리 기본정보
		기관명	
	주()회/()분 □ 무상 □ 유상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추가확보 시설	쥐()회/()분 □ 무상 □ 유상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주()회/()분 □ 무상 □ 유상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작성방법]

- 구 분 : (사무실) 모든 서비스유형 작성, (전용면적) 기관 방문형인 경우에만 작성
- 전용면적 : 자가나 임차 시 작성 / 소재지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 증빙서류 제출
- 추가확보시설 : 학교·사회복지기관 등 활용 시 작성
- · 기관장 직인 포함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 시설관리 기본정보(기관명, 소재지, 담당자명, 연락처 기록)만 제출하되, 이용하고 있는 추가확보시설 전체목록을 제출

4. 장비 확보현황

구분	인터넷	컴퓨터	전화	fax 기기	단말기 [*] (보유/계획)	사무집기
확보 여부					/	

^{*}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가 없는 경우 보유계획 작성(또는 신청 여부로 확인)

5. 협력기관 현황

기관명	소재지	역 할	연락처

^{*} 협약서 첨부

6. 기타(지자체 요구 사항)

[제14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8.3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앞쪽)	
	기관명				사업자등록번		
사회서비스	서비스 종류		등록 신청일		등록 결정일		
제공자	소재지						
	폐업일				폐업 사유		
	성명(법인・단체의 경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시설	시설 면적						
설비	사무실			설비·비품			
T174	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자격 	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인력	제공인력			명			

비고

(뒤쪽)

		 변경사항		
연 월 일	구 분 (변경내용)	세부 변경내용	신청인	기록자 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8.31.>

등록번호 제 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 기관명 :		
2. 서비스 종류:	(세부사업명:)	
3. 법인·단체명:		
4. 대표자 성명:		
5. 기관장 성명:		
6. 소재지:		
7.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턴	<u> </u>	
	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	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m²]

[제16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 3. 10.〉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u> </u>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소재지	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니귄이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법인 · 단체명			전화번호	
	변경 신청할 등록사항		변경 전	변	
변경 신청 내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 점부서류 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작성방법

- * 변경 신청할 등록사항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사항입니다.
- ① 서비스 종류 ② 신청인(대표자):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④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⑤ 설립구분 ⑥ 시설기준: 시설면적, 설비·비품 ⑦ 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수, 제공인력 수 ⑧ 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⑨ 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⑩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제17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5.8.3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성명(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	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일		
신청내용	재발급 신청 사유	[] 분실	[] 훼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면심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재발급	→	등록증 수령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5.8.31.>

사회서비스 제공자 [] 폐업 신고서

※ 이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① 신고인 (대표자)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4)1174)	주소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	번호(고유	건턴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 110- 1	소재지						
③ 폐업일·휴업기간	폐업일		년	월	일		
(예정일·예정기간)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④ 폐업·휴업 사유							
⑤ 연락처	성명		주소	<u>`</u>			
(폐업·휴업 후)	전화번호		휴디	전화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 서비스 제공자의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작성방법

- ① 신고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 ③ 폐업하려는 날짜 또는 휴업하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 ④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 ⑤ 폐업 또는 휴업 후의 연락처(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2서식] <신설 2017. 8. 8.>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 관 []자체보관

	유의사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				- 1-1-1-1				(앞
접수번호		I수일시			처리기간		3일		
	성명(법인·단체의 대표	자)			생년월일				
① 신청인	법인 · 단체명			7	전화번호				
	주소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						
② 사회서비스	등록번호				전화번호				
제공자	소재지								
	폐업일			3	휴업기간				
	<u></u> 획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보관 책임자	성명			전화번.	호				
④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목록 및 수링						단위	:	매,개수
	 구분		이관-()명()	매, 망실	및 훼	손-()명	()叫
			년도	년	도	년도	Ę	크도	년
1. 이용자와 체 한 서류	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							
2. 사회서비스 저	I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3. 사회서비스 기 용에 관한 지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다료	부담한 비							
	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 정하여 정한 서류	장관이 필							
	4호까지의 서류 중 전지 경우 그 전자문서	문서로 관							
	 제공 자료의 인계·인식	<u> </u>			l .				
 구 분	인계자			인수자				비 :	
' 명									
으으 전화번호									
선확인호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회서비스 제공자료 [3조제5항	및	제7항에
						٤	<u> </u>	월	일
		신청인	l						도는 인)
시장 · 군	수 · 구청장	 귀하					()	10	<u></u> L L'/
				210	mm×297mm	[백상지(8	80g/m²) 또	는 중	질지(80g/

부록 관련서식 | 195

(뒤쪽)

	1.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1 부 $($ 부표 $1)$	
원단 미글	2.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1 부 $($ 부표 $2)$	수수료
첨부 서류	3. 자체보관계획서 1 부 $($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로만 한정합	없 음
	니다.)	

주) 시장·군수·구청장은 이관자료 중 일부 훼손 또는 일부 망실로 인하여 자료의 정상적인 인수가 불가능하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 2서식의 신청서 이외에 별도의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폐업기관의 이관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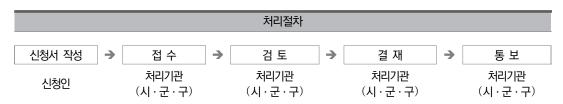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작성방법>

- 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2. \ \ \,$ $\ \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및 주소를 적습니다.
-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 4. ③ 자체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의 보관책임자(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적습니다.

<유의사항>

서비스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2서식 부표 1] <신설 2017. 8. 8.>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년도)

	구 분		①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②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③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④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⑤ ①부터 ④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비고
총계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개	
연번	사업명	성명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1. 총계란에만 명수와 매수를 적고, 이후는 매수만 적습니다.
- 2. ⑤의 총계란에는 총 전산매체 수량을 적고, 이후에는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자료구분 호(①,②,③,④)를 표기합니다.
- 예)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과 관련되는 부분인 경우에는 ①에 표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2서식 부표 2] <신설 2017. 8. 8.>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년도)

	구 분		①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②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③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④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⑤ ①부터 ④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비고
총계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개	
연번	사업명	성명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총계란만 명수와 매수를 적고, 이후는 매수만 적습니다.

^{2.} ⑤의 총계란에는 총 전산매체 수량을 적고, 이후에는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자료구분 번호(1,2,3,4)를 표기합니다. 예)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과 관련되는 부분인 경우에는 1에 표기

[제22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6. 12. 27.〉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주민등	동독번호		
승계하는 사람	법인·단체명	법인등	동록번호		
	주소	전화변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주민등	목번호		
승계받는 사람	법인·단체명	법인등	록번호		
	주소	전화반	<u>ਰ</u> ੂ		
	기관명	기관장			
사회서비스	서비스 종류	등록번:	<u> </u>		
제공자	(세부 사업명:)			
	소재지	전화번.	<u> </u>		
승계일	승계 사유 [] 영업 양도·양수 [] 상속 [] 그 밖의 사유()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2 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		시행규칙 제15조에 미	다라	
			년	월 일	
	?	<u>닌</u> 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	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가. 양도·양수의 경우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다만. 양도인의 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징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류 1부	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다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가 없음	
	처리	J절차			
신고서 작성		유 등 검토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고인			시나가진 시나구.그)	ハロハラ (ハ・フ・コ)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기관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 받은 일자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 받은 일자'란에 "없음" 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2) 양도·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 야 합니다.
-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 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i>(</i>	병 또는 인)
	주소		(^10	5 -
양수인	성명		(서ㅁ	병 또는 인)
	주소		(2)10	5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제공인력용)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25조의 2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 집·이용)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자격·면허, 교육이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 제공인력 관리 서식에 명기된 항목(기본정보, 재직정보, 자격정보, 급여정보, 금융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바우처의 지불·정산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활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 ○ 서비스 결제 수행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 ○ 기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전자바우처 사업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도 사회서비스 전자비우처 제도 운영 등 이용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개인정보를 보 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상기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비우처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 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인력이 될 수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서비스 제공 계약 및 본인 확인절차 - 사회서비스 제공업무의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을 위한 신상·자격·면허 보고 및 정보제공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학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을 위한 정보제공 -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현황 관리 및 참여자 중복수혜 방지, 관련 성과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일모아사스템)에 정보제공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제공 - 서비스 결제 수행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유사서비스 제공 정부기관에 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식별번호 및 서비스 내역 등의 정보 제공 - 사회보험 관리주체(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식별번호 등 정보제공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제공인 력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의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동의인: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보 안 각 서

본인은 【000000】의 제공인력으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밀을 엄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 1. 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기관 내부 및 외부의 제3자에게 누설·유포하지 않으며 절대 비밀을 유지한다.
- 2. 이용자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유용하지 않으며, 무단으로 수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3.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혹은 본 서약서상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함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인)

제공기관장: (인)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공기관 보관) 거래번호 : 서비스명 : 이용자명 : (서명) 금 액: 서비스 가격 원 정부 지원금 원 본인 부담금 원 위 **본인부담금(원)**을 20 년 월 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공기관 대표 (인)

본인부담금 영수증 (이용자 보관) 거래번호 : 서비스명 : 이용자명 : (서명) 금 액: 서비스 가격 원 정부 지원금 원 원 본인 부담금 위 **본인부담금(원)**을 20 년 월 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대표 (인)

※ 본 양식은 예시로서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음.

※ 이용자 서명은 보호자 서명으로 대체 할 수 있음.

사회서비스 이용	용자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른 중기	디 신청서
서비스명(서비스코드)		
제 공 기 관 명		
이 용 자 명		
이용자 생년월일		
서비스이용기간		
본인부담금 미납 기간		
중단요청 사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시업 안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본인부담금 미납에 의한 서비스 이용 자격	정지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초 기 상 담 기 록 지(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 리 번 호	성 명		상 담 일 시		.(:)
생년월일	상담 장	□ 가정방문 □ 기관내방	저희버를	(집)			
생 년 월 일	소	□ 기타 ()	신 와 민 오	(H.P)			
주 소			보호 자				
보호 자	관계()		연 락 처				
대 상 구 분			서비스가격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원 원	
접 수 만 족 도	① 매우 그렇다 ② 그 2. 담당공무원은 서비스 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 3. 담당공무원은 친절히 ① 매우 그렇다 ② 그	렇다 ③ 보통이다 스 신청 시 처리기 렇다 ③ 보통이다 I였습니까? 렇다 ③ 보통이다	가 ④ 아니다 (기간 및 선정/ 가 ④ 아니다 (가 ④ 아니다 (한 매우 아니다시점 등에 대한한 매우 아니다한 매우 아니다	충분한		
	상담 장		선만석임	<u>기</u> 민급	런얭		
상 담 내 용 및 조 치 사 항							
〈안내사항〉							
제공기관	<u>+</u> :	상담	자 :	(서명)			

[%] 본 양식은 예시로서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음.

초 기 상 담 기 록 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관리번호		상담 일시	(;)	상담 장소	□ 자택	□ 제공기관	□ 기타
성 명				생년월일			
8 8				취학여부	□ 미취학	□ 초등학교	□ 중·고등학교
주 소				연 락 처	(집)		
T 2					(H.P)		
보호자	이용자와의 관계()			보 호 자 연 락 처			
가구상태	□ 일반 □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기타()						
	장애등급 급			서 비 스 가 격	□ 1등급	□ 2등급	□ 3등급
장애유형	□ 자체 □ 놔병변 □ 착수장애 □ 근이 명양증 □ 중복장애 □ 기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원/월 원/월
상담내용	아동상태	☞ 아동상태, 생활패턴 등에 대한 상담 또는 관찰내용 등을 기록					
	욕구사항	☞ 아동 및 보호자의 요구· 희망사항, 문의사항 및 상담자의 전문적 조언 내용 등을 기록					
	기 타	☞ 기타 안내시항 및 특이사항 등을 기록					
	필 요 한 보 조 기		상태, 생활패		_	기기를 우선순위	_
	· .	1	ll 렌탈 하기로 :	② <i>결저하 비조기</i>	3 71≡ 717H		4)
	렌탈 예정 보 조 기	1	I CE VIL	2 2	3	(4)
상담결과 및	치 수측 정 결 과	☞ 측정 결과를 적합한 방법으로 기재					
형새초조	납품·인도 예 정 일			납품·인도 장 소			
	담 당 제공인력	☞ 대상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할 제공인력을 지정 (성명) (연락처)					
	기 타						
제공기관 :				상담	<u></u> 좌 :		(서명)

[☞] 본 양식은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으나, 상기 기술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것.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대상자 욕구 조사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대상자 욕구 조사지									
기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정보	주소		연락처						
선정조사 문항									
사 회 영 역	가족구성 (S-1)	동거하는 가족으로부터 부양(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동거_일반(0) □ 동거_취약(6) □ 독거(8)						
	가족관계 (S-2)	가족 또는 친지와 연락하고 있다.	□ 1~2회/주(0) □ 1~2회/월(1) □ 1~2회/분기(2) □ 1~2회/년(3) □ 없음(4)						
	이웃관계 (S-3)	이웃(친구포함)과 왕래하고 있다.	□ 1~2회/주(0) □ 1~2회/월(1) □ 1~2회/분기(2) □ 1~2회/년(3) □ 없음(4)						
	사회활동 (S-4)	경로당이나 복지관, 종교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다.	□ 3~4회 이상/주(0) □ 1~2회/주(1) □ 1~2회/월(2) □ 없음(4)						
	경제활동 (S-5)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 3~4회 이상/주(0) □ 1~2회/주(1) □ 1~2회/월(2) □ 없음(4)						
	식사준비 (S-6)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 자립(0) □ 부분도움(2) □ 완전도움(4)						
	주거환경 (S-7)	건강에 해롭거나 지내기 어려운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	□ 아니오(0) □ 예_경미(2) □ 예_심각(4)						
	식생활 여건 (S-8)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충분히 먹지 못한 적이 있다.	□ 아니오(0) □ 예_경미(2) □ 예_심각(4)						
	경제적여건 (S-9)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공과금 납부, 냉·난방, 병원 이용을 못한 적이 있다.	□ 아니오(0) □ 예_경미(2) □ 예_심각(4)						
신 체 8 역	청결위생 (P-1)	스스로 목욕하기, 머리감기를 하고 있다.	□ 자립(0) □ 부분도움(2) □ 완전도움(4)						
	식사기능 (P-2)	식사하기가 가능하다	□ 자립(0) □ 부분도움(2) □ 완전도움(4)						
	배변기능 (P-3)	소변 및 대변조절이 가능하다.	□ 자립(0) □ 부분도움(2) □ 완전도움(4)						
	하지기능 (P-4)	계단 오르기를 스스로 할 수 있다.	□ 자립(0) □ 부분도움(2) □ 완전도움(4)						
	집안일 (P-5)	청소, 세탁 등 집안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	□ 자립(0) □ 부분도움(2) □ 완전도움(4)						
	수단적 일 (P-6)	근거리외출, 물건구입, 금전관리 등이 가능하다.	□ 자립(0) □ 부분도움(2) □ 완전도움(4)						
	질병상태 (P-7)	최근 한 달간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 암(2) □ 중풍(뇌혈관질환)(2) □ 투석(2) □ 당뇨병(1) □ 혈압(1) □ 심장질환(1) □ 골절,관절염(1) □ 전립선염(1) □ 이석증(1) □ 안질환(1) □ 산소요법(1) □ 위장병,소화기능 장애(1) □ 기타()(1)						
	우울감 (M-1)	슬프고 기분이 처져 있으며 때로 울기도 한다.	□ 아니오(0) □ 예_경미(2) □ 예_심각(4)						
정 신 &	화기관리 (M-2)	가스불이나 담뱃불, 연탄불과 같은 화기를 관 리할 수 없다.	□ 아니오(0) □ 예_경미(2) □ 예_심각(4)						
	단기기억, 의사소통 상태 (M-3)	방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와 일을 잊거나, 의사소 통과 전달에 장애가 있다.	□ 아니오(0) □ 예_경미(2) □ 예_심각(4)						
	계산능력 (M-4)	간단한 계산을 하지 못한다.	□ 아니오(0) □ 예_경미(2) □ 예_심각(4)						
ਲ ਲ	자살생각 (M-5)	지난 1년 간, 자살 생각을 하거나 시도를 해봤다.	□ 아니오(0) □ 예_경미(2) □ 예_심각(4)						
	약물사용 (M-6)	수면제, 항정신적 약물, 알코올 등을 복용하고 있다.	□ 아니오(0) □ 예_가끔(2) □ 예_자주 또는 매일(4)						
	스트레스 상태 (M-7)	지난 1년간, 다음의 사건과 관련된 경험 또는 걱 정을 한 일이 있다.	□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2) □ 친척 및 친구 사망(1) □ 법과 관련되는 일(1) □ 가족과 친구에게 소외(1) □ 본인의 건강 악화(1) □ 병원비나 약값 부족(1) □기타()(1)						
서비스 내용									
	l당시간 내 로 이용하는 서비스								
		•							

서비스 제공계획서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집) 합			
서 비 스 명		제공 방법	(휴) ☎ 재가방문 : 1:1 지도 기관방문 : 10명 단위 집합교육			
서비스목적						
서비스내용						
서비스제공	□ 서비스 제공 : 월 회(주 회)/회당 분 □ 제 공 일 정 : 매주 요일(시 분에서 ~ 시 분까지)					
	□ 서비스기격 : 원 - 정부지원금 : 원 (바우처 지원) - 본인부담금 : 원					
서 비 스 가 격	□ 납부방법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개시 전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사전납부(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결제, 현금) ▶납부계좌: 000-0000-000-000, 00은행 (예금주: 0000제공기관) - 정부지원금(바우처 지원) ▶ 실시간 결제 서비스: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만 결제(미출석 시 바우처카드 결제불가: 단, 보강 실시하고 결제가능)					
계 약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				
〈서비스 제공계획〉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	(서명)			

% 본 양식은 예시로서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음.

서비스 제공계획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관리번호		계약일자			담당 제공인력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취학여부		□ 미취학 □ 초등학교 □ 중·고		
 주 소			연 락 처	(집)			
				(H.P)			
보호자	이용자와의 관계	4()	보 호 자 연 락 처				
장애유형	장애등급 ()급/□재제 □ 놰병	뱱 □ 착수장	에 🗆	근이영양증 🗆 중복	장애 □기타	
계약기간	년 ☞ 1년 단위	월 일 부터 로 <i>작성(연장 시, 새로 작성)</i>	년 월		일 까지		
	 서비스가격 월	년 원		납부빙	법 : 🗆 제공기관계	좌 <u>□ 현금납부</u>	
시 비 스 가 격	- 정부지원금	· 원	본인부담금 납 부	납부일자 :			
ा व	- 본인부담금	원	납 부	납부겨	 좌 :		
	① (품명)			<u> </u>	E는 모델명, 제조사 8	등을 기재	
렌탈 품목	② (품명) ③ (품명)		(규격) (규격)				
	서비스	☞ 서비스가 시작된	정기점검	(1차) (2차)	☞ 예정일을 기재(연간 :	최소 2회 이상 사전 지정)	
	개시일자	날짜를 기재	일 자	(3차)			
서 비 스	수시점검, 맞춤지원 계획	•					
제공계획	불만처리, 품질관리 계획	•					
	기타	•					
제공기관 :		제공인력 : ((서명) (호	인자)괸	리책임자	(서명)	

[☞] 본 양식은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으나, 상기 기술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것.

서비스 제공계획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 름	(남/여)	생년월일		(세)			
주 소		연락처	(집) (휴) (보호자)					
서비스명 (프로그램 명)		제공방법						
서비스 목적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 월 회(주 회)/회당 분 □ 제 공 일 정 : 매주 요일(시 분에서 ~ 시 분 까지)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총 가격 : 원 - 정부지원금 : 원(바우처 지원) 본인부담금 : 원							
	□ 납부방법							
계약기간	년 1	월 일~	년 월 일					
〈서비스 제공계	획〉							
제공기관	명 :	제공인	력 :		(서명)			
※ 첨부 자료 : 시	·전검사평가 결과지 첨부.							

[※] 본 양식은 예시로서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음.

사회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예시)

\bigcirc	ょ	lH]	入	വ	용자
\cup	\sim	111		_	トゲヘト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연락처:

O 대리인(보호자)

성 명: (인) ("이용자"와의 관계:

주 소:

연락처: (E-mail:)

O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주 소:

O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O 서비스 종류, 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등 구체적 사항은 "사회서비스제공계획서" 와 같다.

상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다 음 -

제1조(서비스 제공)

- ①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상기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서(일정표 포함)"와 같이 제공한다.
- ② "제공기관"은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서비스 제공자(제공인력)를 배치한다.
- ③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대상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구청(이하 "시·군·구청"이라 한다)에서 통보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결과 통보서"를 참고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기입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 ①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이 계약은 "이용자"의 해지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 ③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 1.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 2. "제공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 ④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조(사회서비스 비용)

① 사회서비스 비용은 사회서비스 가격기준(가칭)에 의한다.

- ② 사회서비스 비용은 기본(표준)서비스이며 본인부담액과 월 이용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제공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지급한다.
- ③ 서비스 제공기간 중 계약의 해지에 의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일일 단가에 의해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정산한다.

제4조(사회서비스 내용의 변경)

-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제공기관"(종사원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이용자"의 기본(표준)서비스 외 부가서비스에 대한 반복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제공기관"(방문도우미를 포함)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폭언 등 각종 위법·부당한 행위를 "제공기관"에게 강제할 경우, 지자체는 종사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중지, 자격상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계약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 ④ "이용자"는 "제공인력"과의 관계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자)인 경우 그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제5조(통지사항)

- ① "제공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제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이용자"가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제공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이용자용)으로 한다.
- ④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7조(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실시 중에 "제공기관"(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용자"이 "제공기관"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분쟁해결방법)

본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이용자"과 "제공기관"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20

서비스제공 기록지(월)

제공기관명: 20 . . . ~ 20 . . .

이용자 성명			○ 생년월일			
제공횟수 (월/일) (시작/종료)			베스 제공 장소 서비스 내용			이용자 (<u>성명)</u>
1회차 (/) (:) (:)	장 제공 내용	예) 00사회서비스센터 강의실 1. - 2. -	000호			예) 홍길동
2호차 (/) (:) (:)	장소 제공 내용	예) 00구 00대로 000 1. - 2.				
3호차 (/) (:) (:)	장소 제공 내용	예) 00빌딩 000호 1. - 2.				
4회차 (/) (:) (:)	장소 제공 내용	예) 000수영장 1. - 2.				
		비고 (종합의견)		제공인력 성명 1. 예) 김길동 2. 예) 남길동	<u>제공회차</u> 1,2 3,4	<u>서명</u> 김길동 남길동

※ 본 양식은 예시로서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음.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제공 기록지(월) 예시

제공기관명: 20 . . . ~ 20 . . .

○ 이용자 성명			○ 생년월일			
제공횟수 (월/일) (시작/종료)			베스 제공 장소 세비스 내용			이용자 <u>(성명)</u>
1회차	장소	예) 00사회서비스센터 강의실	000호			
(/) (:) (:)	제공 내용	정서 기능 1. 2.				예) 홍길동
2회차	장소	예) 00구 00대로 000				
(/) (:) (:)	제공 내용	정서 가능 1. 2.				
3회차	장소	예) 00빌딩 000호				
(/)	제공 내용	정서 기능 1. 2.				
4회차	장소	예) 00구 00대로 000				
	제공 내용	정서 기능 1. 2.				
 5회차	장소	예) 00사회서비스센터 강의실	000호			
(/)		정서 기능				
(:)	제공 내용	1. 2.				
6회차	장소	예) 00구 00대로 000				
(/)	제공	정서 기능				
(:)	썖	1. 2.				
7회차	장소	예) 00빌딩 000호				
(/)	제공	정서 기능				
(:)	내용	1. 2.				
8회차	장소	예) 00구 00대로 000				
(/)	제공	정서 기능 1.				
(:)	내용	2.				
		비고 (종합의견)		제공인력 성명	<u>제공회차</u>	<u>서명</u>
				1. 예) 김길동 2. 예) 남길동	1,2 3,4	김 <u>길</u> 동 남길동
				- -	J,4	020

% 본 양식은 예시로서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음.

서비스 제공 기록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관리번호			계약기간		. ~ .		담당 제공인력		
성명				생년	¹ 월일				
보호자	의외자용(0	l 관계()	보호자	다연락처				
장애유형	장애등급 (()	급 / 🗆 지체 🗆] 뇌병변	□ 척수정	당애 🗆 근이영	병양증 🗆 중복장애 [フ	타
렌탈품목	① (품명)			2	(품명)		3 ((품명)
서 비 스 개시일자	<i>☞ 서비<u>스</u>.</i>	가 시작:	된 날짜를 기재	정 예	기 점 검 정 일	(1차)	(2차)		(3차)
구 분	일 시	! 시 서비스 제공내역						확인 (서명)	
저기저가	(1x̄) '18.7.1. (14:00 ~17:00)		점검 및 조치한 L 등빙 사진 첨부)	내역을 구.	체적 <u>으로</u> 기	기재 (정기점검은	² 반드시 [별지]의 점검· <u>·</u>	<i>₹</i> ₹/	이용자 또는 보호자 서명
정기점검	(2末) '18.12.1. (10:00 ~14:00)	■ ☞ 점검 및 조치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정기점검은 반드시 [별지]의 점검·조치 3.12.1. 증빙 사진 첨부) 10:00 및							
	'18.8.1. (10:00 ~14:00)		AS 등 수시 점검	및 조치	한 내역을 구	<u> </u>	재필요한 경우 시진 침	#)	이용자 또는 보호자 서명
수시점검, 맞춤지원	'18.9.1. (10:00 ~14:00)	•							
		•							
	'18.9.5.	☑ 전호□ 기티			·건의 등 E	민원, AS요청	등에 대한 접수 및 조	₹₹/	제공연 서명
불만 및	'18.10.7.	10.7. ☑ 전화 □ 기타 ■							
민원처리	'18.11.1.	☑ 전호□ 기티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초기상담 사진

이 용 자	6	남일자 생태일자	상담자	
사 진 ①	☞ 초기 상담 시점의 이동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통상태, 사용 중인 보조기) 1 이용자 얼굴 등이 나타나		^난 고할 사진 첨부
사진 ②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점검 사진

이 용 자	점검일자		점검·3	지치		담당제공인력	격
1차 정기점검 점검·조치 사 진	조치 결과를 중 않게 촬영해도		사건(개인	<i>႞정보보호</i>	한 차원에서	서 이용자 얼굴 등	<i>≣0 </i>
	점검일자	-		점검・	조치자		담당제공인력
2차 정기점검 점검·조치 사 진							

[☞] 본 양식은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으나, 상기 기술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것.

서비스 종료(상담) 보고서

서비스명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명	<i>2100</i>	성별	Q	
서비스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종결 사유		서비 <u>스기</u>	간 만료			
이용 서비스 내용	음악감상, 도형판 등 기본 집중력 훈련	프로그램 제공일정	제공계획수립-서비스제공-서비스결과보고 및 모니터링-종결보고서			
제공인력	<i>박oo</i>	이용 등급	□1등	 □ 2)등급	
	초기상황 *계획 및 목표		*목표달성	종 <i>결상황</i> 정도 및	진전사항	
성과 (효과성)	- 놀이를 통해 감정표현 방법 경험 - 부정적 감정표현 감소됨 - 성취감을 통한 자존감 및 사회성 향상 - 자존감 척도 1점 상승 - KPRC 정서점수 81점, 과잉행동 75점, 사회관계 - KPRC 정서점수 70점, 과잉행동 78점으로 높음 사회관계 67점으로 진전되었음					
담당자 의견	- 가정에서 아이와의 대화가 필요하며, - 통신기기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제한이 요구됨.					
기타						
결과	□ 서비스 연장 V 서비스 종결 □ 서비스 연계 (연계 서비스 : (연계기관 :)				
서비스 종료일		202	20 년 월 일 담당자: 00	00 (인)		

서비스 종료(상담) 보고서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00.00.00.			
서비스 내용	- 기초체력검사 및 인바디 체크를 통한 건강상담 - 스트레칭, 레크레이션을 통한 심신 이완 - 밴드, 공등을 이용한 근력운동 및 유산소운동					
서비스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종결 사유		서비스기간 만료				
이용자의 변화정도	□ 체중 : 69kg에서 68kg으로 1kg 감소 □ 근육량 : 37.4kg에서 38.5kg으로 1.5kg 증가 □ 체지방률 : 40.1%에서 35.3%로 -4.8%감소 □ 체지방량 : 27.7kg에서 27.1kg으로 -0.6kg 감소 □ 신체나이 : 78세에서 79세로 1세 증가					
담당자 의견	-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나아지 - 하루에 운동 30분 이상 실시 - 짠 음식 섭취를 줄이고 음식 - 멸치와 두부 등 칼슘과 단백결	할 것 섭취 후 바로 눕지 않도록 힘				
서비스 종료일	2020 년 월 일 담당자 : (인)					
	oooo센터장					

서비스 종료(상담) 보고서

이 름	(남/여	i) 생년	월일		(세)
프로그램 명		제공	방법				
서비스 기간							
사전검사일		중간 :	평가일				
사후검사일		심리검	사도구				
주호소 문제							
주호소 문제에 따른 개입 목표							
상담 및 치료적 개입 내용 요약							
최종 (사후검사) 결과							
목표에 따른 변화정도							
종결 사유							
제언 (종결 및 재이용에 대한 소견)							
서비스종료일		제공인력		작성자		(서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부지원금 수납대장

수납일 (yyyy-mm-dd)	사업코드	사업명	금액(원)	비고

작성요령

1. 수납일 : 매월 3회 우리은행이 제공기관 통장으로 입금한 날짜

2. 사업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내 세부서비스 명 기재

※ 서식 43~46 제공기관 회계 관리용 파일 다운로드 경로 :

부산지원단 홈페이지(www.ssbn.or.kr)>>커뮤니티>>공지사항>>제공기관 회계 관리용 엑셀 파일 다운로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본인부담금 수납 및 환급대장

처리일 (yyyy-mm-dd)	사업	사업명	이용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6자리)	등급	금액 (원)	납부방법
합 계								

작성요령

1. 처리일 :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날짜 또는 환급한 날짜

2. 사업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세부서비스명 기재

3. 이용구분 : 바우처이용자(이용권이 유효한 자),

일반이용자(이용권이 만료되거나 없는 자)

4. 성명 :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 ※주의 : 보호자가 아님

5. 금액 : 납부는 +로, 환급은 -로 기재

6. 납부방법 :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방법을 기재(1. 계좌, 2. 현금, 3. 기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출내역

지출일 (yyyy-mm-dd)	사업코드	지출항목	세부내용	금액(원)	비고
합 계					

작성요령

- 1. 지출일 : 비용을 지출한 날째(통장 인출날째와 일치)
- 2. 지출항목 :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교육홍보비, 사회보험료, 이익금 중 선택
 - 교육홍보비 : 종사자 교육비, 사업홍보비
 - 사회보험료 : 종사자 4대보험(기관부담금), 시설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 시설투자비 : 월임차료, 시설개보수비 등
 - 인건비 : 월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성 경비, 기관장 인건비도 포함 ※기관장인건비 : '정액'을 설정하고 그 외 금액은 이익금으로 분류
 - 재료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행된 제반 경비 (타항목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경비)
 - 이익금 : 모든 항목 지출 후 남은 경비
 - (원금 회수 가능한 전세금 또는 시설 매수금은 이익금으로 분류)
- 3.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시설투자비 등)
 - 사업코드 란에 "공통"으로 기재 또는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나누어 기재

[제46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비 집행현황

	拉							
	이의금							
	사회 보험료							
	바다왕							
지출부	시설 투자비							
八三	재료비							
	인건비							
	타고							
	대응 투자금							
	일반 이용자							
수음류	바우처 사용자							
	정부 지원급							
	합계							
I	서비스명 사비스명							
ר ה ב	사답고드 세푸 (4자리) 서비스명							

【 개인정	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이	용자용	응 예시)		
본 기관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			•			우식별번호의 처리)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예시						O른 구서
<u> </u>		<u> </u>	<u> 건네가</u>		07-	<u>エ / 6</u>
○ 설택항목 : 대상자 자격판정 자.	•	보 소드저보)	0ار (l MHI	∖ 이려(<i>)</i>	HHIA 자겨 이려
서비스 이용 이력)	•	±, ±¬o±,	/, '∥∟	. VIDI-	_ ∨1≒(∕	시마_ 시크 이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사회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위해	하여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오	ŀ 관련	한 사항	에 관한	정보 제공
○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	사 및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등)에 활	용		
○ 기타 사회서비스 계획 수립과	관련한 정보에 활용	- -				
※ 사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계	약체결 및 이행, 서	네스 제공과	관련	⁻ 허류	개인정도	브 보호법」
제15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의2(민	감정보 닭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	H인정보를 별도 동9	l 없이 수집·C	이용할	수 있습	슼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선법률 및 사업 지점	팀에서 정한 기	7/21 4	404/1/ 7	데공기관	에서 설정
○ 상기 개인정보는 서비스 자격	종료 후 <i>()년</i> 동안	보유 및 이용	용됩니다	나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시 {	북이인					
○ 상기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비우	<u>-</u>	해 핔요한 최건	Udē 4	정보에	해당하다	를 그 내용에 고등(G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		. —				1 - 110 11
다만, <i>(기관명)</i> 을 통해 서비	•					예외 전용)
의단, (기단	2 ~ 0 E2	whe 29-	-6-1-	1.(ビコ	07L	VII-1 70/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	<u>-0 </u>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	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	하지 않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기	개인정보처리자가 준	수하여야 할 개	인정보	보호 규	정을 준	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틴 이용 목적 외	네는.	사용하	다 않을 것	었을 약속드립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5	드시 법정대리인의 등	동의가 필요힘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법정대리인 :	(서명)	연락처 :				

안전관리 계획서

O F Z	राजाना	계회서	

■ 관리자 임무

위치별	임무별	책임자	비고

■ 비상 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 및 연락처

발생유형별		조치사항	책임자(전화번호)	비고
신고	0	○시 ○○경찰서(생활안전계) ○○소방서(119구조팀)	○○○(전화번호)	
안내		안내소	○○○ (전화번호)	
대피유도		별 진행요원들은 사람들이 신속하고 런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	○○○(전화번호)	
화재진압	소방대 투	입 자제 진화 후 창원 소방서 인계	○○○(전화번호)	
응급치료	공통	119구급차 ○○병원	○○○ (전화번호)	
차량 및 통제		○○경찰서 경비 교통과 ○○소방119구조팀	○○○(전화번호)	

작성 예시

○ 안전관리 계획서

이 개요

1. 제 목:0000년 ○○기관 안전관리 계획

2. 기 간: 0000년 1월 1일 ~ 12월 31일

3. 장 소:○○기관 및 체험활동 장소

4. 기 관

- 기관자:○○기관 대표자 ○○○

- 주 소: 창원시 ○○구 ○○로 ○번길 ○,(☎055-123-1234)

5. 보험가입 여부: 건물화재보험, 체험활동 안전보험, 차량보험

6. 대 상: 200명(1년간)

- 건물 내 방문 및 야회체험활동 참여 대상

7. 주요 내용

- 바우처 제공 프로그램 참여자

- 기타:기관 내부 및 외부 참여자

8. 장소 및 시설물 여건 : 붙임 참조

○ 안전관리 계획

- 1. 장소 및 시설물 관리자 임무와 관리 조직
 - ▶ 관리조직
 - 총괄 책임자

- 총괄 운영: ○○기관 대표자 ○○○

- 부총괄 운영 : ○○○ - 운영담당 : ○○○

• 위치별 및 임무별

임무별	책임 관리요원	전화번호	비고
총괄 운영	000	010-1234-5678	
운영담당	000	010-2345-6789	

○ 관리자 임무

○ 안전관리 계획서

위치별	임무별	책임자	비고
	총괄 운영	000	
	프로그램 운영	000	
나서 아저	시설 관리	000	
시설 안전	의료지원 관리	000	
	위생환경 관리	000	
	안전지원	000	

○ 비상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 및 연락처

발생유형별		조치사항	책임자(전화번호)	비고
신고	0	○시 ○○경찰서(생활안전계 ○○소방서(119구조팀)	○○ (전화번호)	
안내		안내소	○○○(전화번호)	
대피유도		별 진행요원들은 사람들이 신속하고 런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	○○○(전화번호)	
화재진압	소방대 투	입 자제 진화 후 창원 소방서 인계	○○○ (전화번호)	
응급치료	공통	119구급차 ○○병원	○○○ (전화번호)	
차량 및 통제		○○경찰서 경비 교통과 ○○소방119구조팀	○○○(전화번호)	

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일람표

대상	검사명칭	점검기관	실시주기	관계법규
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한국가스	연 1회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동 법 시행법규 제25조
시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안전공사	인 1외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0조
보일러	계속사용 안전검사	에너지 관리공단	연 1회	열사용기자재관리 규칙 제33조
전기	일반용 정기검사	한국전기	일반용 -1회/2년	전기사업법 제37·38조
시설	자가용 정기검사	안전공사	자가용 -1회/3년	동 법 시행규칙 제51조
소방	자체검사	한국화재	Od 1 = l	화재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시설	화재예방 안전점검	보험협회	연 1회	관한 법률 제16조 동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작성 예시

●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교육 계획서

- 1. 목적
 - 직원들의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강화하여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2. 일시 및 장소
 - 0000년 00월 00일(수), 10:00-11:00 / 9층 소회의실
- 3. 참석대상:전 직원
- 4. 주요내용
 - 전기감전 및 가스누출 사고 예방법
 -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유형별 응급처치법

5.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담 당
10:00~10:05	('5)	교육안내	
10:05~10:55	('50)	전기감전 및 가스누출 사고 예방법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유형별 응급처치법	
10:55~11:00	('5)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뮬레이션)	

6. 소요예산(안):

안전관리 교육 결과보고서

0	시설 및 이용자 인	한전관리 교육 결과보고서		
1.	목적 •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장 소: • 참석자:총	명		
3.	주요내용 •			
4.	세부일정			
		교육내용	세부내용	
5.	향후 계획 •			
6.	소요예산 :			
	[붙임1] 참석자 명단([붙임2] 교육개최 사건			

작성 예시

●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교육 결과보고서

1. 목적

• 직원들의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강화하여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일시 및 장소

• 일 시:0000년 00월 00일(수), 10:00-11:00 / 9층 소회의실

• 장 소: 9층 소회의실

• 참석자 : 총 00명(참석자 명단 '붙임1' 참조)

• 교육 이수: 1시간

3. 주요내용

• 전기감전 및 가스누출 사고 예방법

•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유형별 응급처치법

4. 세부일정

교육내용	세부내용
전기감전 및 가스누출 사고 예방법	 낙상 사고 화상 사고 전기 감전 가스 누출 수영장 이용 시 안전수칙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유형별 응급처치법	화상사고 시 응급처리법전기 감전 시 응급처리법각종 사고 유형별 응급처리법

5. 향후 계획

○ 제2차 안전관리 교육(예정): 00. 00(수)

6. 소요예산 :

[붙임1] 참석자 명단(총 00명)

[붙임2] 교육개최 사진

제공기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상태 : 양호○, 보통△, 불량×)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월	조치사항
안전 관리	안전관리의 책임 및 위기관리 체계가 적합한가?		
한한 현대	일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가?		
실외 환경	주변에 감전 위험은 없는가?		
크게 건경	위험한 적치물, 축대 붕괴, 맨홀 등에 대한 위험은 없는가?		
	모든 설비는 움직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벽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가?		
실내 환경	창문, 방충망의 상태는 안전한가?		
	시설 내 비품 및 보육용품에 풀린 나사나 못은 없는가?		
현관·통로	출입문, 현관문 등의 안전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게다. 비사크	계단, 통로부분에 미끄럼 방지처리가 되어있는가?		
계단·비상구	계단의 안전 상태는 양호한가?		
화장실·세면대	화장실 내 전기 콘센트 등 전기용품은 안전한가?		
외성글 세인데	세면대의 고정 상태는 안전한가?		
	환기가 잘되고 있는가?		
조리실·식당	조리용 칼이나 기타 위험한 주방기구는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급식담당직원의 위생 상태는 양호한가?		
	배수가 잘되고 배수구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전선, 콘센트, 플러그 등 손상된 부분은 없는가?		
	한 개의 콘센트에 용량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전기·가스·	전기기구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있는가?		
위험물 안전관리	각종 전기기구의 접속 상태가 노후, 파손된 곳은 없는가?		
	분배전반 및 각종 전기기구의 노후 및 파손된 것은 없는가?		
	가스경보기의 설치상태가 양호한가?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주 용 도		
건물구조	대표자		소방안전관리자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소화기 또는 자동 확산 소화 장치의 외관 점검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게이지 지시침 확인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작동기능점검 •시험밸브 개방 시 펌프기동, 음향경보 확인 •헤드의 누수·변형·손상·장애 등 확인		
 ③ 경보설비 작동기능점검 • 비상벨설비의 누름스위치, 표시등, 수신기 확인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확인 • 가스누설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④ 피난설비 작동기능점검 및 외관점검 •유도등·유도표지 등 부착상태 및 점등상태 확인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치 여부 •화재신호 시 피난유도선 점등상태 확인 •피난기구(구조대, 승강식피난기 등) 설치 상태 확인		
⑤ 비상구 관리상태 확인		
⑥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관리상태 확인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상 물건 적치 등 관리 상태		
⑦ 창문(고시원) 관리상태 확인		
⑧ 영상음향차단장치 작동기능점검• 경보설비와 연동 및 수동 작동 여부 점검 (화재신호 시 영상음향차단 되는지 확인)		
⑨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확인		
⑩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확인		
⑪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여부 확인		
② 실내장식물 교체 여부 확인커튼, 카펫 등 방염선 처리제품 사용 여부합판·목재 방염성능 확보 여부 등		
⑬ 방염 소파·의자 사용여부 확인		
⑭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분기별 작성 및 1년간 보관 여부		

점검일자: . . . 점검자: (서명)

근로계약서 (표시)(예시1)

	관(이하 '시업주' 이라 햄)과 (이하 '근로자' 이라 햄)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 기간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무 장소	및 '시업주'가 지정하는 장소	
3. 업무의내용	담당 업무는 () 및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로 한다.	
4. 소정근로 시간 및 휴게시간	① _시 _ 분부터 _시 _분까지 (휴게시간: _시 _ 분 ~ _ 시 _분) ②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1일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으로 하되,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해서 부여할 수 있다.	
5. 근무일/ 휴일·휴가	·	
6. 임금	 ① "을"의 임금은 • 기본(시간, 일, 월)급원 - 수당 포함여부 (○, X) - 포함 시 해당 수당내역 (예: 교통비, 식비 등) 원,원으로 하고 • 기타급여 - 상여금: 있음()원,	

7. 고충처리	① "근로자"은 서비스 이용자 본인 또는 기족으로부터 부당한 행위(제3조의 담당업무와 관련 없는 잡일부탁, 성적 괴롭힘 등)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 은 "근로자"의 고충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업주"은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면서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단,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보험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① "갑"은 "을"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기입을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 ② "을"이 4대 사회보험 대상자가 이닌 경우 "갑"은 상해 보험 등 별도 보상대책을 마련한다.			
9. 퇴직금	•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 "시업주"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10. 근로계약서 교부	•시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시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1.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시업주) 시업장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근로자) 성 명 : (인)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임금, 휴게시간, 휴일 /휴무일 및 휴가 등에 관한 항목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예시2)

	성 명	사 업 명
제공기관 (기관)	제공기관명	
	소 재 지	
제공인력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	주 소	

제 1조 (임금)

- 1.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원으로 하며 임금은 업무량에 따라 차등자급 한다.
- 2. 기관이 별도 정한 바에 따라 가계수당, 급량비, 연장근무, 시간외, 야간근무수당 등의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3. 4대 보험은 관계 법령에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한다.
- 4. 급여 지급일은 매월 기관의 내규에 따라 _____ 일에 지급하외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근로자"가 요구하는 은행계좌로 입금 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전일에 지급한다.

제2조(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제 3 조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 1.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_____ 및 기관에서 정하는 업무로 한다.
- 2. 담당업무는 기관과 근로자의 상호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 3. 근무장소는 로 한다.

제 4 조 (근무시간 /휴게시간 및 휴일·휴가)

- 1. 근무시간은 기관과 근로자의 상호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원착: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시 분~ 시 분)
- 2. 근무지로의 출/퇴근시간, 작업준비시간,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3. 주휴일은 매주 ___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4주 평균) 근로한 경우에 유급으로 부여한다. 그 밖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가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5인 미만 사업장, 주15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 등 제외)

제 5조 (대상자 권리)

1.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권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거 〇〇〇〇 지역 사회서비스센터와 계약한 이용자에 있으며 근로자는 타인 또는 타 기관으로 양도 할 수 없다.

제 6 조 (퇴직 및 계약 갱신)

- 1. 본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2. 을이 계약기간 중에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30일 전까지 갑에게 통보한다.
- 3. 갑이 계약기간 중에 올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올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는 같은 올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4. 차기 계약은 ○○○○ 지역사회사비스센터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다.
- **제7조(해고)** 같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고 할 수 있다. 단,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고, 감봉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업무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
 - 2. 사용자의 시업상의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 3.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및 서비스를 실행하지 않았을 때
 - 4. 서비스제공 요일 및 시간을 보고 없이 무단으로 변경 및 취소하였을 때
 - 5. 기타 상기 각 항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제8조(손해배상)** 을이 고의나 중대한 괴실로 갑에게 손해를 *까*친 경우, 징계의 정도와 관계없이 그 손해에 대하여 갑에 게 보상하여야 한다.
- 제 9 조 (계약의 해지) 근무 중 회사의 손해를 까지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 시에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해고) 한다.

제10조 (기타관련사항)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한다.

계약당사자인 '갑'과 '을'은 위 계약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제공기관 (서명 또는 날인) 제공인력 (서명 또는 날인)

단시간 근로계약서 (예시3)

(이하" 갑"이	라함)과(와)	(이하"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2. 근무장소 및 담당 업무	2. 근무장소 및 담당 업무				
- 월~수 : , 휴게	8. 근무일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월~수: , 휴게시간 - 목~금: , 휴게시간				
4. 휴일,휴가 :					
5. 임금 - 시간 - 상여금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 지급(), 예금통장에 입금()					
6.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	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에 의함			
	년 울	릴 일			
시업체명 : 주 소:	(전화:)	주 소: 연락처:			
대 표 자 :	(서명)	성 명:	(서명)		

서비스 이용자 조치 계획서

기관명	연락처	
시업명		
폐업예정일	፠ የ	<u>-</u> 고일로부터 60일 후

		조치할 사항	대상 인원	계획		
	구 분			안내 인원	방 법	
		- 폐업계획 사전 안내 (사유,폐업예정일 등)			- 서면안내 명 - 유선안내 명	
이 용	폐업신고일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 동일 또는 유사사업 안내로 서비스 지속			-	
자 안 내	계약이 유효한 자	이용 유도(지원)여부			※안내한 유사사업명 제공기관 확인방법 등 안내한 사항을 서술	
	지역 내 불특정 다수 이용자	- 기관 홈페이지 등에 사전 안내			※홈페이지명 기재 등	
기타 특이사항						

사회서비스 이용 추천서

1.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호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
		/

2. 추천사유 및 판단근거

① 추천사유	□ 발달지연 □ 문제행동 및 정서불안
	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② 판단계기	주요인(관찰내용, 검사결과
	등 기술)
	-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분야 등 상세의견 기재
③ <u>추천</u> 자	
의 견	
, _	

3. 작성자 (2항의 내용을 작성한 자)

소속기관명			연락처	
기관소재지				
직 또는 자격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대상기	· 다와의 관계*	:	

* 담임교사, 대상자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	원장 등 구체적으로 명시
--------------------------	---------------

2021. . . 발 급 처

※(예외1) 불가피하게 발급기관(학교장)의 직인이 포함되기 어려운 경우 작성자의 재직증명서 대체 가능 ※(예외2) '19.12.24. 부산 16개 구군 초등학교 무작위 조사결과, 조사대상 모든 학교에서 직인 발급을 위해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함을 확인함. 이는, 학교담임교사를 가구특성 및 우선순위에 반영한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20.1.9. 구군 담당자 간담회 시 학교담임교사·학교사회복지사·학교상담교사가 추천할 경우「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에 한하여 추천인의 도장으로 직인을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함.

- 단,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 받을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 38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내용의 양에 따라 편집 가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니터링(설문)

※ 사회서비스를 6개월 전·후로 이용한 이용자에게 이용기간 종료 전까지 *1회* 실시

설문일자	년 월	일	이용자명		조사자명	
세부서비스 유형 · 서비스명 (1개만 응답)	①동화야 놀 ②해양역사단 ③아동건강관 ④아동·청소 ⑤아동정서분 ⑥가족마음이 ⑦뇌에 기가 ⑧노인건강관 ⑨시각장애인 ⑩장애인 보	부화체현 보리서비 보달지원 <mark>I음서비</mark> 팍팍 보리서비	스 치유서비스 서비스 스 스	①행복한 등 ③1인가구 통합서비 ⑭일상생활 ⑤식사영잉 ⑥이바구 등	· 지원서비스 ·지원서비스	서비스 <u> </u> 체정신건강

■ 일반사항 (보건복지부 설문 1~6, 부산시 추가설문 7)

- 1. **이용자 성별** ①남자 ②여자
- 2. 이용자 연령대
 - ①미취학 10대 미만 ②취학 10대 미만 ③10대 ④20대 ⑤30대 ⑥40대 ⑦50대 ⑧60대 ⑨70대 ⑩ 80대 ⑪ 90대 이상
- 3. (응답자와) **이용자와의 관계** ①본인 ②보호자
- **4. 보호자 성별** ①남자 ②여자
- 5. 보호자 연령대 ①20대 미만 ②20대 ③30대 ④40대 ⑤50대 ⑥60대 ⑦70대
- 6. (이용자)께서 우리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6개월 미만 ②1년 미만 ③1년 이상 2년 미만 ④2년 이상 3년 미만 ⑤3년 이상 4년 미만 ⑥4년 이상
- 7.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제공기관 유형은 무엇입니까? (제공기관에서 응답)
- ①복지기관 ②대학 ③교육원 ④사회서비스센터 ⑤상담기관 ⑥안마기관 ⑦(예비)사회적기업 ⑧협동조합 ⑨기타()

■ 서비스 선택 (보건복지부 설문 2,6 부산시 추가설문 1,3~5)	
1.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1개만 선택) ①인터넷, SNS 홍보 ②제공기관의 홍보물 ③주변이웃·지인·타기관의 소개	
④서비스 이용경험자의 추천 ⑤지자체(시군구) 안내 ⑥기타()	
2. 우리 기관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1개만 선택) ①인터넷, SNS 홍보 ②제공기관의 홍보물 ③주변이웃·지인·타기관의 소개 ④서비스 이용경험자의 추천 ⑤지자체(시군구) 안내 ⑥기타()	
3. 우리 기관 선택 전에 몇 개 기관을 알아보고 선택하셨습니까? ①현재기관 바로 선택 ②2개소 ③3개소 ④4개소 ⑤5개소 이상	
3-1. 여러 명의 제공인력 중에 원하는 제공인력을 선택하셨습니까? ①제공기관에서 지정 ②2명 중 ③3명 중 ④4명 중 ⑤5명 이상 중	
4. 서비스 계약 전에 제공인력 전문성(학력·자격·경력 등) 정보를 제공 받으셨습니까? ①그렇다 ②아니다	
5. 집에서 우리 기관까지 이동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재가방문서비스 ②10분 ③20분 ④30분 ⑤40분 ⑥50분 ⑦60분 ⑧70분 0	싱
6. 우리 기관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 서비스 안내 (보건복지부 설문 7.8)

④제공기관과의 거리 ⑤서비스 비용 ⑥기타(

- 7.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우리 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거의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 8. 우리 기관에서 서비스 시작 전에 상담과 사전검사를 받으셨습니까?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 서비스 품질 (보건복지부 설문 9~16)
- 9. 제공인력은 이용자가 필요 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였습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거의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 11. 제공인력은 친절하였습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거의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2. 제공인력은 약속한 날짜와 시간을 잘 지켰습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거의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3. 사전 계약내용과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거의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4. (기관 방문형 서비스 응답)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환경에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거의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5. 서비스에 활용되는 교재. 교구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거의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6. 우리 기관은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거의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⑥불편한 점 없었다 ■ 서비스 성과 (보건복지부 설문 17,18,20 부산시 추가설문 19) 17. 서비스 이용 후 삶의 질이 향상 되었습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거의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 18.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을 다른 이용자에게 추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거의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 19. 서비스의 이용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거의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 20. 우리 기관과 제공인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거의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 이용자 의견 (보건복지부 설문 21,22)

21.	가장	만족했던	서비스,	불만족했던	서비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
	한 시	사항이 있으	2시다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	니다.					

•	. –	 	 •		서비스 기 바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

사업추진 실적(현황) 보고서

1. 사업개요

사 업 명		최초 시업연도	
제공기관		대표자	
주요사업 내용요약	0		

2. 추진내용

월	추진 내용	비고
2월		
3월		
4월		
5월		

[※] 내부적인 시업진행 이력, 시업 변경(내용, 예산 등) 이력, 외부기관 점검 및 지원 내역 및 대응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사업추진 실적

• 이용자 및 수익관리(월별 전산 실적으로 대체)

구분	목	Η	실 적				
	인원	예산 (국비+지방비)	인원	실적	바우처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일반이용자							
계							

• 일자리실적(월별 전산 실적으로 대체)

	계	정규직	계약직	평균 근로시간	평균보수	4대보험 가입여부	평균 교육시간
계							
전임제							
시간제							
일용직							

* 전임제 : 월 80시간 이상 * 시간제 : 월 40시간 이상 80시간 * 일용 : 월 40시간 미만

• 수익집행 현황

(단위 : 원)

	구 분		총계	보조금	본인부담금	일반이용자	대응투자금		
수		익							
지		출							
인	건	비		* 월급, 상0	ዙ 등 인건비 성격	격 지출 작성			
재	료	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행된 제반 경비 작성					
시 1	설투자	l H		* 서비스 제	공을 위한 임차료	등에 투자 경비			
교	육홍보	비							
사 :	회 보 현	료							
0	익	금							

4. 사업효과 평가 보고

• 사업효과성 평가

구 분	목 표	실 적	목표 달성률	비고
행동변화 등				
개선율 등				

• 문제점 및 개선사항(정성적 작성)

작성일자	yyyy.mm.dd	작성자 (시업담당자)	
확인일자	yyyy.mm.dd	확인자 (시업책임자)	

- 1. 바우처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칩(NFC)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바우처 결제 단말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용가능 가종**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시고, **가입통신사는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Wi-Fi망에서는 바우처 결제가 불가능
 - * 통신사는 '13년 6월 기준으로 SKT, KT, LGU+가 참여하고 있음
- 2.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에게 스마트폰 및 특정요금제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은 제공인력이 구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공기관이 스마트폰 사용(구입) 이나 특정요금제 가입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은 제공인력은 전용단말기 등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 3. 스마트폰의 비우처사업 결제로 인해, 기본 제공데이터 외에 초과 사용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 월 3천원 까지 제공기관이 부담합니다.
 - *초과 데이터 사용량이 없을 경우 제공기관에서 부담하지 않음

 〈 안내문 확인란 :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필수작성 〉

 안내문 확인일자 : 20 년 월 일

 ○ 제공기관 - 성명 : (서명)
 ○ 제공기관 - 기관명 : - 성명(관리자) : (서명)





부정행위 근절 이행 각서

기관명	참여사업명	이 름	생년월일	서 명

상기 각인은 부산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으로 참여함에 있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 및 지침을 준용하여 성실히 서비스를 제공할 것 을 다짐하며, 부정수급과 관련한 모든 부정행위 발생 및 법률·지침을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000장 귀하

○○사회서비스센터 제공인력 프로파일

|--|

<학 력>

기 간	학력사항 &전공
2003.3.~2007.2.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학사)
2009.3.~2011.2.	대학원 상담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기 간	근무기관	업무
2011.1.~2016.12.	**상담센터	미술치료사
2017.1.~2018.12.	**학교 위클래스	상담사

<자격사항>

취득일	자격면허명	시행처
2011. 03. 11.	사회복지사 1급	보건복지부
2012. 01. 11.	미술치료사 1급	미술치료협회
2017.05. 12.	놀이치료사 2급	놀이치료협회

위 임 장

위임인(위임 하는 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 (앞 6자리만 기재)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위임 받는 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 (앞 6자리만 기재)

주 소: 전화번호:

위임인(신청인)과의 관계 :

상기 위임인 000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공자 등록)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대리인 000에게 위임합니다.

※「주민등록법」제37조제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년월일을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 . 월 일

위임인: 0 0 0 (인)

<u>사실 확인서</u>				
□ 확인 내용				
0				
□ 첨부자료 목록				
0				
	20	년	월	일
제공기관명 : 사 업 명 :				
기 관 장 : 작 성 자(직책) :		서명 또는 거명 또는		
기 관 장 귀히	l			
/ t σ π°	T			

〈 사실 확인서 작성 내용 및 요령 〉

□ 작성 내용

- 서비스 제공(이용) 및 바우처 결제 사실, 해당 사실 증명을 위한 직접·간접 정황 내용 등 작성
- 첨부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증명하는 내용, 증명 범위 등을 고려해서 함께 작성

□ 작성 요령

- (작성 원칙) 사실 증명에 적합하고 타당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을 포함하여 구 체적으로 작성
 - ※ 첨부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목록을 사실확인서 서식 본문에 포함하고, 확인 서와 함께 제출
- **(주의 사항)** 이용자 및 제공 인력 등의 진술만을 근거로 주관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증명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근거로 작성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						처리기간		
경구비용 제곱포 한경지							30일	
Ę	군서번호			신청일	자			
제	공기관명			대표자	명			
사	·업자번호					이상결제 유형		
재검토	둔 신청 건수			검토 결	과	지급거절 사유		
	검토 신청 비용 총액					검토결과 통보일자		
순번	승인번호	이용자	재검토 금'			재검토 신청]사유	첨부서류
사회사	서비스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	하여 재검	토	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구군 담당자 연락처

	부서	담당자전화
중구	복지정책과	051-600-4341
서구	복지정책과	051-240-4314
동구	복지지원과	051-440-4315
영도구	복지사업과	051-419-6201
부산진구	희망복지과	051-605-4354
동래구	복지정책과	051-550-4315
남구	복지정책과	051-607-4314
북구	복지행정과	051-309-4316
해운대구	복지정책과	051-749-4315
사하구	일자리복지과	051-220-5685
금정구	사회복지과	051-519-4784
강서구	주민복지과	051-970-4312
연제구	복지정책과	051-665-4665
수영구	복지정책과	051-610-4315
사상구	복지정책과	051-310-4316
기장군	복지정책과	051-709-4315

본 내용은 지침 발간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변동가능)

2022년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발 햄 일 2022년 1월

발 행 처 부산광역시,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시청역 롯데골드로즈 606호

喜聞OITI www.ssbn.or.kr

전 화 051-714-2008~2012,2014

인 쇄 처 디자인앤(051-852-0786)